www.ken.go.kr

희망경기교육

장학자료 2007-3호

「꿈·신바람·감동」을 주는 학생생활지도

2007 경기학생 생활지도 기본계획

경 기 도 교 육 청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CONTENTS

Ⅰ. 경기학생생활지도 목표 / 1

「꿈·신바람·감동」을 주는 학생생활지도

Ⅱ. 중점과제

- 1.「사랑나눔」으로 감화를 주는 공동체 문화 정착 / 4
- 2.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 10
- 3.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운영 / 23

Ⅲ. 학생생활지도 각종 계획

- 1. 기본생활습관 지도 계획 / 32
- 2. 학생 인권보호 및 신장 계획 / 36
- 3. 효 체험교육 계획 / 38
- 4. 학교 성교육 계획 / 40
- 5. 학교 안전교육 계획 / 42
- 6. 흡연 예방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계획 / 46
- 7. 친구사랑의 날 운영 계획 / 48
- 8. 학업중단 예방 및 복교생 지도 계획 / 52
- 9. 대안교실 운영 계획 / 54
- 10. 학부모상주지도실 운영 계획 / 57
- 11. 학생 생명존중교육 계획 / 60
- 12. 진로상담 활성화 계획 / 63
- 13. 사이버중독 클리닉 운영 계획 / 65
- 14. 나눔 봉사활동 내실화 추진 계획 / 67
- 15. 학생자율동아리 활동 활성화 계획 / 70
- 16. 현장체험학습 계획 / 72
- 17.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계획 / 80
- 18. 학생표창 계획 / 82
- 19.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동 계획 / 83
- 20. 전문상담순회교사 운영 계획 / 85
- 21. 학생예능경연대회 개최 계획 / 87
- 22. 경기도교원미술작품전시회 계획 / 89
- 23. 연합교외생활 지도 계획 / 91
- 24. 학생생활관 운영 계획 / 93

Ⅳ. 학생생활지도 관련 행사

- 1. 생활지도 연중 행사 / 96
- 2. 생활지도 각종 행사 개요 / 102
- 3. 생활지도 월별 중점 지도 사항 / 105

CONTENTS

V. 경기학생생활지도 Only / Best

- 1. 소중한 만남 「선생님과 함께 하는 캠프」 / 118
- 2.「부모와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 / 119
- 3. 피해학생 보호 「B-CARE」 / 120
- 4. 선도대상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 121

Ⅵ. 학생생활지도 관련 법률ㆍ규정ㆍ지침

- 1. 교육기본법 / 124
- 2. 초·중등교육법 / 125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126
- 4. 형법 / 127
- 5. 소년원법 / 128
-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130
- 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130
- 8.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 131
- 9.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131
- 10. 여성발전기본법 / 132
- 11. 체벌 관련 법규 및 지침 / 133
- 12. 경기도학생선도위원회규칙 / 136
- 13. 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 / 139
- 14. 경기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정 / 142
- 15. 경기도각급학교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 / 145
- 16.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 148
- 17. 학생특별교육이수규정 / 149
- 18. 학생교복의 선정(변경) 구입 안내 / 150
- 19.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152
- 20.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 160
- 21.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 / 168

Ⅷ. 부록

- 1. 학생사안 처리 / 172
- 2. 생활지도 정기 보고 / 174
- 3. 봉사활동 관련 질의사항 / 179
- 4.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시 참고사항 / 182
- 5. 생활지도 관련 용어 해설 / 184
- 6. 생활지도 우수 사례 / 187
- 7. ONE STOP 지원센터 안내 / 208
- 8. 생활지도 관련 홈페이지 안내 / 210

I. 경기학생생활지도 목표

「꿈·신비람·감동」을 주는 학생생활지도

Ⅱ. 중점과제



「사랑나눔」으로 감화를 주는 공동체 문화 정착

「사랑나눔」으로 학생·교사·학부모 모두에게 꿈·신바람·감동을 주는 학생생활지도 정착을 통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바람직한 민주시민 의식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한다.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의 내실화로 학생의 인권존중 및 안정적인 학교 풍토를 조성하여 정과 사랑이 넘치는 활력 있는 학교 문화를 정착한다.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운영

학생의 일탈행동 및 부적응의 원인을 분석하여 개인별로 적합한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인의 행복 추구와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한다.

02 중점과제

1. 「사랑나눔」으로 감화를 주는 공동체 문화 정착

「사랑나눔」으로 학생·교사·학부모 모두에게 꿈·신바람·감동을 주는 학생 생활지도 정착을 통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바람직한 민주시민 의식과 공 동체 문화를 조성한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1) 청소년 비행, 학교폭력, 각종 안전사고 등 학생 생활지도 문제 잔존
- 2) 개인주의 팽배와 물질만능주의로 인간애적 관계 형성 부족
- 3) 친절·질서·청결·예절의 생활화에 대한 지속적 지도 필요
- 4)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활동으로 교사와 학생 간 신뢰감 상실
- 5) 부모와 자녀 간 무관심과 대화 부족으로 건전한 인성 발달 저해
- 6) 학생들의 도덕적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공동체 의식과 배려하는 마음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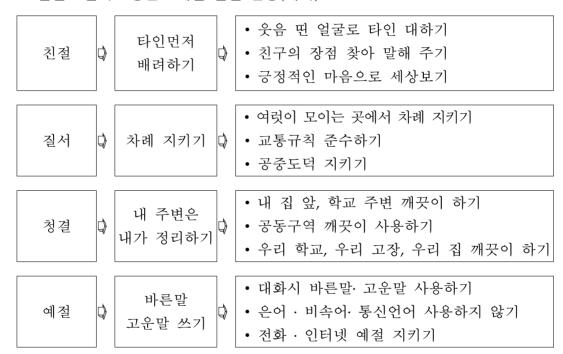
나. 기본방침

- 1) 각급 학교별 과제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2) 교사와 학생 간 상호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생활지도 실천
- 3) 칭찬하는 풍토 정착 및 자아존중감 형성
- 4)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 5) 학생들의 특기 · 적성을 고려한 교육활동으로 자신감과 성취감 고취
- 6) 자녀의 눈높이에 맞는 가족 간 대화 문화 정착
- 7) 기본교육 충실 및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 형성

다. 추진내용

1) 기본생활습관 정착을 위한 친철 · 질서 · 청결 · 예절의 마음 쌓기

- (1) 타인 먼저 배려하는 학생생활지도 실천
- (2) '친구사랑의 날' 운영
- (3) 차례 지키기 학생생활지도 실천
- (4) 내 주변은 내가 정리하는 학생생활지도 실천
- (5) 바른말 고운말을 잘 쓰는 학생생활지도 실천
- (6)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연합고사 이후 학생생활지도 실천
- (7) 『학부모 보람교사』를 통한 학생생활지도 실천
- (8) 교사와 학부모가 연계한 교내 · 외생활지도 실시
- (9) 학생회를 통한 학생 인식 개선의 선도적 역할 및 실천
- ※ 친절·질서·청결·예절 실천 운영(예시)



2) 학생은 상호간에 우정 쌓기

- (1) 배려할 줄 아는 학생을 기르는 학생생활지도 실천
- (2) 학생 상호간 관계를 배려하는 윤리에 대한 교육 실시
- (3) 배려와 포용의 인물상 정립 및 교육 실시
- (4) 학급회 및 학생회를 통한 역지사지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
- (5) 적성과 취미에 맞는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 (6) 「친구사랑의 날」운영
 - ※「친구사랑의 날」 지정일
 - 「친구사랑의 날」 지정 연 4회
 - 4월 2일 (*친구*사이)
 - 7월 9일 (친구)
 - 9월 4일 (*친*구사 이)
 - 11월 11일(나란히 나란히)
 - ※「친구사랑의 날」 운영(예시)
 - 단위 학교·교육청별로 다양한 행사 개최
 - 친구사랑 우체통
 - -학급이나 학교에 '친구사랑 우체통'을 설치하여 편지로 우 정 전하기
 - 친구야 미안해!
 - -공개사과의 편지를 영상으로 제작·방영하여 갈등관계 해결
 - 천사표 내 친구
 - -친구자랑 홍보자료 제작 및 발표로 우정 다지기(내 친구를 자랑하는 캐릭터 그리기, 광고 만들기, 만화그리기, 문예문 쓰기, 동영상 만들기 등)
 - 릴레이 친구사랑
 -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1개월 동안 릴레이로 도움을 주 는 활동
 - 친구사랑 마인드 갖기
 - -'친구사랑의 날'에 학급별로 친구사랑을 주제로 토론 및 발표회 실시
 - 친구 위한 1일 투자
 - -'친구사랑의 날'에 친구를 위해 1일 선행 실천

3) 교사는 학생과 신뢰 쌓기

- (1) 우리학급의 날 운영
 - ※「우리학급의 날」 지정일

「학급의 날」정하기

• 자치활동에서 결정(학기별 1회)

- ※「우리학급의 날」 운영(예시)
 - 1일 담임-학생체험 -1일 선생님-학생 역할로 서로 이해하기
 - 한솥밥 체험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만든 음식 나누어 먹기
 - 사제동행 역할극 놀이-역할극 놀이를 통해 서로의 어려움 이해하고 도와주기
 - 아끼는 물건 돌려쓰기-알뜰시장 행사를 통해 급우가 아끼는 물건 돌려쓰기
 - 한마음 체육대회-심신 단련과 화합을 위한 체육활동으로 한마음 갖기
 - '사제사랑의 날'선물 주고받기 -작은 선물과 편지를 마련하여 사랑을 담아 교환하기
 - 우정·사랑의 말 주고받는 날 -덕담이나 칭찬의 말로 서로에 대한 친밀감 표현
- (2) 사제 간에 나누는 공감적 대화와 칭찬
 - 전교사 1일 1학생 칭찬하기
 - 칭찬 으뜸 학생 발굴 표창
 -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허용적 분위기 조성
 - 교실과 교정을 사제간 대화의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
- (3) 개인별 상담카드(포트폴리오) 제작 활용
 - 일별 출결현황 및 결석사유 파악
 - 무단결석자 상담실시 후 학부모와 연계지도
 - 행동 발달에 따른 특성을 수시 기록하여 상담 자료로 활용
 - 행동의 개선을 목적으로 변화된 사실 기재
- (4) 교사·학부모·학생 간 사이버 상담체제 구축 (E-mail, 홈페이지, 싸이월드 등)
- (5) '토요 휴무제'를 이용한 사제동행 체험활동 권장
- (6) 학생의 고충 해결을 위한 열린 상담교실 운영
- 학생과 항상 함께 하는 교사 이미지 각인

-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감적 분위기 조성
- 교실과 교정을 이용한 "잠깐 상담" 활동
- (7) 도울학생 관찰 및 상담
 - 설문 조사 및 <건의·상담함>을 통해 도울학생 수시 파악
 - 가정과 연계지도를 위한 비상 연락망 조직
 -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제동행 활동 권장 및 사제결연 상담지도
 - 도울학생의 생활태도 개선 정보를 전체 교사가 공유하여 행동변화 의지 고취 및 격려
 - 전학년도에 기록된 자료에 의존하기 보다는 새로 드러난 문제에 중점을 두고 도울학생 파악
- (8) 가정과 연계한 생활지도 실시
 - 도울학생의 학부모와 지속적 상담활동 전개
 - 학교의 주요 교육 활동에 대한 충실한 안내(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 활용)
 - 위기가정학생 실태 파악을 위한 가정 방문 실시 및 방문록 작성
 - 학부모 민원과 불만 및 오해 해소를 위한 전화 상담
 - 전화, 편지, E-mail 등을 통한 도울학생 수시 상담 및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4) 학부모는 자녀와 사랑 쌓기

- (1) 가정에서의 올바른 자녀교육 실시
 - 학생다운 단정한 용의 복장 갖추기 지도
 - 친절, 질서, 청결, 예절의 기본생활습관 지도
 - 가정의 날(매주 수요일) 및 가정의 달(5월) 홍보
 - (2) 학생 부모 대화의 날 운영※ 「학생 부모 대화의 날」 지정일
 - 매달 넷째 주 토요일 (월1회)

※「학생 - 부모 대화의 날」 운영(예시)

- 두레상 운동
 - -가족들이 아침 함께 먹기
- 부모님 죄송해요!
 - -감사편지, 사과편지 쓰기
-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엄마 할래요
 - -자녀가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하시는 역할 체험
- 얘기해요, 엄마 아빠!
 - -가정에서 주제를 정하여 대화하는 화목한 시간 갖기
-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 -부모님과 등산, 운동, 영화감상, 음식만들기 등 함께하는 활동 실시
- (3) 교사·학부모간의 연계된 생활지도 실시
- (4) 학부모의 교사 역할에 대한 어려움 이해의 폭 증대
- (5) 실천하는 효행교육의 활성화
 - ※「효 체험의 날」지정일
 - 5월 7일, 9월 22일
 - ※「효 체험의 날」운영(예시)
 - 예절교육 강화
 - -학교 내, 급우 간, 학교방문 손님에 대한 예절 등
 - 경로효친 체험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정을 방문하여 봉사 체험활동
 - 부모님을 위한 1일 1시간 효도하기
 - -매월 1일 1시간을 부모님께 효도하는 시간 갖기
 - -발 씻겨 드리기, 밥상 차리기 등 체험
 - 효 체험교육 사례발표대회 개최
 - -지역 교육청별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학교 및 교원 표창
 - 학교 효 실천교육 연간 계획 수립 및 전담 교사 지정

2.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의 내실화로 학생의 인권존중 및 안정적인 학교 풍토를 조성하여 정과 사랑이 넘치는 활력 있는 학교 문화를 정착한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1) 학교폭력은 일반적으로 가정과 사회의 복합적 문제가 원인
- 2) 유해 매체물(영화, 비디오테이프, 만화 등) 및 인터넷의 영향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폭력을 이용한 문제해결 방식 만연
- 3) 학생의 지나친 장난 및 폭력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
- 4) 학교폭력 예방은 사회, 학교, 가정 등이 총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 5) 성적이 중시되는 가정 및 학교 교육으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사회분위기 만연

나. 기본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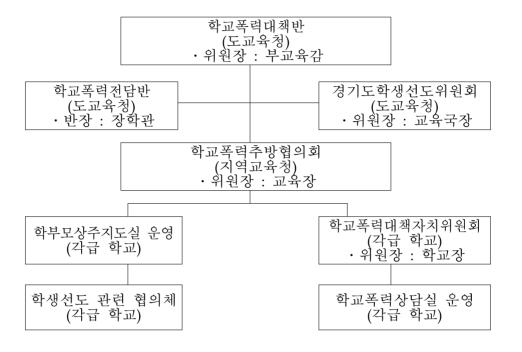
- 1)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한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 중심의 적극적인 지도 대책 강구
- 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정상적 시행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전담 기구 설치 · 운영
- 4)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 운영
- 5) 「학생상담자원봉사자」활동 활성화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 6) 각급 학교의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

다.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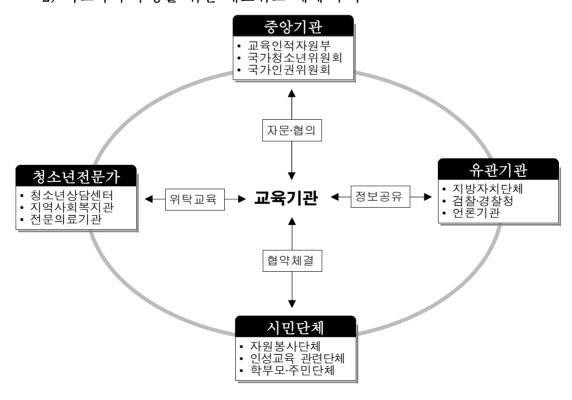
- 1) 학교폭력 대책 전담기구 설치
- (1) 도교육청
- 학교폭력대책반(위원장 : 부교육감)

- 경기도학생선도위원회(위원장: 교육국장)
- 학교폭력전담반(반장: 생활지도담당 장학관)
- 학교폭력 예방 · 근절을 위한 교육 계획 수립
- 청소년단체 및 유관기관, 민간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장려
-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 조정 및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피해상담
- 피해학생 고충 상담(031-2490-201)
- (2) 각 지역교육청
 - 학교폭력추방협의회(위원장: 교육장)
 - 부위원장은 지역대표 1명 선정
 - 위원은 20명 내외의 다양한 인사로 구성
 - ※ 지역별 조직 : 2007. 3. 23. 이전 조직 완료
- (3) 각급 학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학교장)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에 대한 심의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
 - ※ 조직 및 정비: 2007. 3. 23. 이전 완료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체계도】



2)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 구축



3) 학교폭력 신고의 다양화

- (1) 각 학교별「학교폭력 현장 목격 의무신고제」홍보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
 -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신고방법의 다양화 및 내실 있는 운영
 - 학교별, 교육청별 폭력 신고함과 고충 신고·상담 전화 이용 지도
 - 학교별 홈페이지를 통한 학교폭력 신고·상담 활성화
 - 학교폭력 신고를 위한 지도교사의 E-mail 공개
 - 쪽지 상담, 전화 상담 등을 통한 지도
- (3) 학교폭력 예방 근절에 대한 다양한 신고망 홍보 리플렛 제작 및 배포
- 리플렛 작성 시 포함할 내용
- HOT-LINE(1588-7179) 및 타 부처 관련 신고 전화 번호
- 교육청 및 학교의 사이버 신고함
- (4) 사이버 신고·상담망 구축 운영
 - 화상대화, 문서공유, 채팅, 모바일 상담 등
 - 도교육청 사이버 신고상담 전담 장학사 지정 운영
 - 각 지역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1~2명)
- (5) 각 학교 및 교육청에 신고 접수된 내용은 당일처리 원칙
- (6) 신고자 신변 보호 및 신고 내용 비밀 엄수
- (7) 교육청에 HOT-LINE 설치
- (8) 학교폭력 신고 체제 구축 및 상담센터 설치 · 운영
 - 학생 고충 신고·상담 전화 홍보 : 전화 1588 7179
 - 신고 접수·처리 철저 및 상황기록부 보존 -

4)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 (1)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매 분기별 학생용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시우보우) 활용

회	주제	핵심내용	비고
1	이타행동	내가 먼저 도와주기	
2	자기통제	자기통제의 필요성	
3	인권과 평화의식	인권에 대한 개념	
4	폭력문화	폭력매체의 부정적 영향	
5	학교폭력 관련 법	학교폭력의 법적 처리과정	
6	집단따돌림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대처 요령	
7	언어적 폭력	잘못된 언어습관의 부정적 영향	
8	신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의 부정적 결과	
9	금품갈취	금품갈취의 대처 요령	
10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의 유형과 대처 요령	

-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한 대내·외 예방교육 활성화
- 지역인사 및 학부모 명예교사를 활용한 학급별 예방교육활동 추진
- 유관기관 및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한 예방교육활동 전개
- 학생자치회를 통한 자체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학부모 연수, 회의 등을 통한 학부모 교육활동 강화 (3월~5월)
-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 자치위원회 구성: 5인 이상 10인 이하
 -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 모 대표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
 - 청소년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 자치위원회 소집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자치위원회 기능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참여 대상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 학교폭력책임교사 (간사 역할)
 - 당사자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 해당학생의 보호자
- 폭력사안 발생 시 확보할 증빙자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 학생선도학부모 회의자료
 - 사안 발생시부터 해결시까지 사안일지
 - 학교폭력예방 관련 연수자료
- (3) 「학부모상주지도실」 운영 내실화
- 지역주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 1일 봉사제 운영
- 우수 사례 발굴 보급 및 일반화
- 도내 모든 학교에 설치 및 상시 개방 운영
- 각 학교별 보람교사 (교내 상주 학부모) 30명 이상 확보 권장
- 취약 시간 교내·외 순회 확대 및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상담 활동 전개
- 도울 학생(비행, 가출, 폭력, 따돌림) 담당제 운영
- (4) 학교폭력상담실 설치
 - 각 학교별 폭력문제 전담 책임교사 1인 반드시 선임
 -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상담실 설치(기존의 진로상담실 활용 가능)
 - 출입문에 '학교폭력상담실' 표찰(標札) 부착
 - 상담실 이용에 대한 안내, 홍보활동 실시(비밀보장 강조)

- 자치위원회 요구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담결과 제출
- (5) 학생 인성 교육 강화
- 교과 및 특별활동을 통한 인권·생명존중·타인배려 등의 정신교육 강화
- 실질적인 수런, 봉사 활동 등을 통한 실천위주의 인성 교육
- 폭력 및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의식 고취 프로그램 운영
- (6) 각급 학교에 청소년 전문가 배치 및 지원
-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자격	
1일 4시간	학급별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	지역사회 대졸이상 인력 중 면접을 통해 선발	

○ 상담자원봉사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자격
주3일 (점심, 청소, 하교시간 등)	교내순찰 및 학교부적응 학생 상담	상담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상담자원봉사단체회원, 평생교육사, 기타 상담전문가 등

○ 배움터지킴이

활동시간	활동내용	자격
주6일 (점심, 청소, 하교시간 등)	학교 내 취약지구 순찰	퇴직경찰 및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 전문상담 순회교사

활동시간	활동내용	자격
연중	가-피해 학생 상담 활동	단위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전문상담(순회)교사

- (7) 폭력 예방을 위한 '길거리 상담' 활성화
- 가출학생 및 배회 학생에 대한 관심 제고
-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와 연계하여 실시
- '길거리 상담의 날' 운영

• 기간 : 4월부터 10월말까지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 시간 :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 장소 : 각 지역교육청별 지정장소

• 인원 : 5~10명 (교원,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등)

- 길거리 상담을 위한 각급 학교별 홍보활동 실시
- (8) 학교폭력 설문조사의 내실화
 -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학생 설문조사의 효과 제고
 -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지양하고 활용 가능한 조사 및 분석
 - 설문조사 분기별 실시 및 실질적인 후속 조치 강구
 - 설문조사 시 파악된 사항 반드시 확인 및 조치
 - 양식에 의거한 결과 보고 기한 엄수
- (9) 폭력의 저연령화에 따른 대비책 강구
- 검·경 관계기관 및 초·중·고 간 정보 교환을 통한 폭력 연계 차단책 마련
- 성인 폭력 조직과 연계 차단 및 해체 조치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및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심성수련 및 집단상담 활동전개
- (10) 도울학생 밀착 지도 등 선도대상 학생 파악 및 사전 예방지도 실시
 - 다양한 방법에 의한 선도대상 학생 파악 (상담, 학급카페, 버디버디 등)
 - 결연 교사와 연결 고리 유지(E-mail 주고받기)
 - 가해 학생 선도 프로그램, 피해학생 보호 및 적응 프로그램 운영
- (11) 교내 폭력 예방을 위한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 담임교사의 학급생활지도 책임지도제
 - 담임교사 중심의 생활지도 및 진로·상담 활동 강화
 - ○「학급의 날」운영 등 학급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개발 적용
 - 도울학생들과의 사제동행 등산, 야영 수련 활동 등 실시
 - 상담 전문가를 초빙하여 개별 및 집단상담 실시
- (12) 학생회를 통한 자율정화 활동 강화
 - 학생회 주최 캠페인 활동 전개
 - 학교폭력 근절, 유해업소 출입 않기 등 학생회 중심의 자정 활동 전개

- (13) 각종 학교행사를 통한 지도
 - ○「학교폭력추방의 날」실시
 - 글짓기(논설문이나 문예문)
 - 표어 만들기
 - 포스터 그리기
 - 캠페인 실시
 - 웅변대회
 - 그 외 다양한 활동 등
- (14) 전교사의 전문적 대응능력 제고 등 학교의 책무성 강화
 - 전 교원 집중 연수(3월 중)
 -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전교사의 직무연수 강화
- 교육청·학교별 연수를 통하여 교사의 사명의식 고취와 전문적 대응능력 제고
-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학교장 특별훈화 실시(연 2회 이상)
- (15) 폭력 · 음란성 유해매체 단속 강화 및 학생들의 비판능력 제고
- TV, 인터넷, 인쇄물 등을 통해 다양하게 표출·확산되는 폭력 음란물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 및 노출 방지 노력
- 유해매체 및 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일제 단속
- 유해매체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강화
- 학생자치회를 통한 자정운동 전개
- (16) 학교 밖 폭력예방을 위한 시민단체와 협약체결
- 시민단체와 협약체결 (3월)
- 협약체결 된 단체의 학교 밖 폭력예방 활동 (4월~12월)
- 활동 평가(12월)
- (17) 교육청・학교・경찰서・지자체・학부모가 동참하는 교외생활지도 체제 구축
 - 유해업소 및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 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활동 전개
 - 취약지역 순찰 및 유해업소 주변 배회학생 지도
- (18) 청소년상담원, 지역사회복지관, 자원봉사단체, 청소년 관련 시민단체, 관내 NGO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제 구축
 - 학교-지역사회단체 협약 체결

- 소규모 학교의 경우 지역사회 복지관과 협약 체결
- (19) 학교 담당 경찰관과의 협조 체제 강화
- 상호 정보교환 및 정기적 협의회(분기별 1회 이상)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20)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자료 공유망 확대
 - 학교별 추진 우수 사례 엄선 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
 - 각 학교별로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링크 및 활용

5) 집단 괴롭힘 예방 및 불건전 학생모임 지도 강화

- (1) 집단 괴롭힘에 대한 교사의 "책임지도제" 강화
- (2) 학교 및 교육공동체의 관심 제고
- (3) 학교 및 피해학생의 실정에 맞는 지도방안 마련
- (4)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강화 및 선도 프로그램 운영
- (5) 학생의 자율적인 학교생활문화 정착에 노력
- (6) 집단 괴롭힘 가해 가능학생 행동특성 파악 및 조기 발견
- (7) 집단 괴롭힘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대처
- 집단 괴롭힘에 대한 교사의 대처방안 홍보
- 집단 괴롭힘을 받고 있는 학생의 식별법 연수
- (8) 집단 괴롭힘이 전개되는 단계를 파악하여 신속히 대처 ※ 집단 괴롭힘이 전개되는 단계

 언어적 괴롭힘
 ⇒
 무시하기, 건들기
 ⇒
 피해자의 물건 숨기기

 ⇒
 은밀히 폭력행사(고문 등)하기
 ⇒
 종처럼 부리기(용돈 뺏기 등)

- (9) 불건전 학생모임 파악을 위한 정기적 비정기적 설문조사 실시
- (10)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교 내 폭력 성향의 학생그룹을 파악, 관계기관(경찰등)과 정보를 공유하여 조직화 또는 외부 성인 폭력조직 등과 연계되기 전에 사전 해체 조치

※ 불건전 학생모임이란

• 크고 작은 학교폭력 행위 전반의 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둘이상의 집단으로 대개 5~6명 이상이 어울려 다니며 학생들 사이에서 집단의 힘을 과시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무리의 학생들을 통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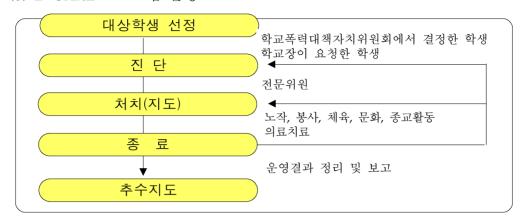
6)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 (1) 피해학생 보호 철저
 -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신체적 치료 및 정신적 안정을 위한 휴식시간 부여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출석 처리
 - 근거규정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4조(피해학생 보호)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전학권고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2)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3S운동'적극 실천
 - Speed :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발견 즉시 보호 및 응급치료·병원후송 등 신속하게 대처
 - Service :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 소속 학급 등에 관계없이 친절한 보호
 - Satisfaction : 피해학생 본인은 물론 학부모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 ※ 용어의 정리

•3S운동 : 학교 폭력 관련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 ① Speed (신속) : 원스톱 업무처리로 피해를 최소화
- ② Service (도움) : 친절하고 예절바른 자세로 봉사
- ③ Satisfaction (만족): 고객 감동 서비스를 통한 만족도 제고

(3) B-CARE 프로그램 운영



※ 용어의 정의

•B-CARE(Bullying CARE): 학교 폭력 관련 가·피해 학생 맞춤형 행동 치유(수정) 프로그램

- B : Bullying (학교폭력 관련 학생)

- CARE : 상담과 조력을 통해 대상 학생을 순화시킴

C: Counsel(상담, 조언)

A: Aid(조력). Attendance(봉사. 서비스)

R: Refinement(순화), Recover(치료, 회복)

E: Education(교육)

7)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조치
 - 선도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의 징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를 받는 경우에 선도교육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화
 - 근거규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5조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학교폭력으로 특별 사안 발생 처리 과정에서 가·피해자의 인권보호 철저
 - 선도교육프로그램 개설 전문기관 : 경기도교육청 지정 특별 교육기관 안 내 참조
- 학생이 선도 조치 중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학생 봉사활동 실적에서 제외
- 무분별한 전학조치로 학교 간 마찰 최소화
- 가해학생은 선도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물질적 보상은 학부모가 책임지 도록 지도
- (2) '소중한 만남 선생님과 함께 하는 캠프' 운영
 - 기간 :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방학 중 운영(7월~8월)
 - 장소 :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
 - 대상: 전반기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학교장의 추천
 - 교육내용 : 심리상담 치료, 공동체 훈련, 봉사 훈련 위주로 하며, 담임교사 와 신뢰성 회복 및 행동장애 영역 치료
 - 특징 : 희망학생은 반드시 담임교사와 동행하도록 하고, 담임교사와 학생 은 수련기간 중 공동으로 취사와 숙박을 하는 등 모든 프로그램에 동참
- (3) '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프로그램 운영
 - 기간 : 학기 중 4박 5일 과정으로 상설 운영
 - 장소:경기도교직원가평수덕원
 - 대상 : 학교폭력으로 인해 '특별교육이수' 징계를 받은 학생
 - 교육내용 : 심리상담 치료, 공동체 훈련, 자성예언, 하이킹, 봉사 훈련 등
 - 특징: 희망학생은 반드시 부모와 동행하도록 하고, 부모와 학생은 수련기 간 중 공동으로 취사와 숙박을 하는 등 모든 프로그램에 동참 (부모의 동참이 불가능 할 경우 담임교사와 같이 입소)

3.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운영

학생 개개인의 일탈행동 및 부적응의 원인을 분석하여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인의 행복 추구와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한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1)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인 지도방법 적용으로 다양성 · 효율성 저하
- 2) 각급 학교별 과제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미흡
- 3) 개개인의 특성 및 문제점 분석 미흡
- 4) 개인별 문제유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대두

나. 기본방침

- 1) 도교육청 단위의 치유프로그램 운영
- 2) 학생특별수련기관의 활용
- 3) 민간단체 위탁 프로그램 활용
- 4) 대안교육프로그램 활용
- 5) 학교별 실정에 맞는 대안교실 운영

다. 추진내용

1) 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명 : 희망캠프

○ 운영기관명: 경기도호국교육원(☎ 032-937-5752)

○ 교육시기 : 7월 중(2박 3일)

○ 대 상 : 학교생활 부적응 및 인성 체험학습 희망 고등학생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치료 및 선도 프로그램 운영

(1) 도 단위 치료캠프 운영

○ 캠프 명칭: '소중한 만남 선생님과 함께 하는 캠프'

○ 캠프 기간 : 하계방학 중 (2박 3일간)

- 캠프 장소 :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 671-5234)
- 대 상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해당학생의 담임교사
 -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 학교장이 추천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학부모, 교사, 담임교사가 동의한 학생
- 대상자 선정 절차

안내공문 발송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

 \blacksquare

학교별 대상학생에 대한 학부모, 교장의 동의 여부 확인

▼

신청서 접수

▼

대상학생 선정을 위한 심사 (운영팀에서 심사)

 \blacksquare

대상학생 선정 및 통보

- 주요 프로그램
 - 심리치료 : 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폭력행동 원인의 진단과 치료
 - 심성수련 : 전문상담원을 통한 집단 및 개인상담
 - 체험활동 : 사회성 강화를 위한 노작체험, 봉사체험, 문화체험 활동
 - 특별한 만남 : 학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사 초청 대화의 시간 제공
- 캠프 운영
 - 프로그램 진행 : 캠프 운영팀 조직하여 운영
 - 숙식방법: 학생과 담임교사 2인 1조로 숙식 (부식은 캠프에서 제공)
- (2) 학교별 대안교실
 - 운영방식
 - 대안교실은 학교별로 시의 적절하게 실시
 - 대안교실은 3~5일 과정, 1일 5시간 내외 실시
 - 학교별 규정에 의거 교육대상자 선정
 - 학교별 사전 계획 수립 운영
 -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및 자원인사 적극 활용
 - 외부강사와 학교내 교사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여 학생의 외적 흥미 유발

- 운영 프로그램 (예시)
 - 체력단련 프로그램(체조, 몸풀기 게임, 구기운동 등)
 - 체험활동(등산교실 등)
 - 자아정체성 형성 프로그램(생활규칙 정하기 등)
 - 특기교육(나의 색깔 찾기, 한지공예, 요가, 함께 그리기 등)
 - 인성교육(미래의 사회 변화, 음악학습 등)
 - 자아성찰 프로그램(생활일기 쓰기, 부모님께 편지쓰기 등)
 - 소감문 쓰기 및 학생작품 발표회
 - 촛불의식(부모님께 드리는 글)

3)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운영

○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

학 교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비고
두레자연중학교	화성시 우정면	358-8776	기숙형(사)
이우중학교	성남시 동원동	710-6956	비기숙형(사)
중앙기독중학교	수원시 원천동	0707-018-1300	비기숙형(사)
헌산중학교	용인시 원삼면	334-4115	기숙형(사)
경기대명고등학교	수원시 당수동	416-3754	비기숙형(공)
두레자연고등학교	화성시 우정면	358-8183	기숙형(사)
이우고등학교	성남시 동원동	710-6957	비기숙형(사)

- 새터민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운영
 - 한겨레중·고등학교(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 671-2113)
- 비인가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과 연계 체제 구축

※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

 학교명	소재지	전화번호	학교급별
고양자유학교	고양	977-1448	초등
<u></u> 과천무지개학교	과천	02)507-7778	초등
과천물이랑작은학교	과천	02)507-6465	초등
과천자유학교	과천	02)503-4035	초중고통합
광명YMCA볍씨학교	광명	02)2616-8002	초중통합
구름산초등학교	광명	02)899-7809	초등
기린배움터	파주	942-0402	초등
꿈틀자유학교	의정부	848-3346	초등
대안교육센터시소학교	의정부	826-7935	중고통합
더불어가는배움터길학교 	의왕	421-3779	중등
들꽃피는학교	안산	402-4405	중고통합
 디딤돌학교	성남	755-4080	중고통합
벼리학교	안양	423-4574	초등
· 산돌학교	남양주	511-3295	중등
산어린이학교	시흥	314-1186	초등
 수원칠보산자유학교	수원	292-5929	초등
아힘나평화학교	안성	674-9130	초중고통합
 열음학교	부천	032)654-5754	초등
의왕온뜻학교	의왕	462-1453	초등
푸른숲학교	하남	793-6591	초등
하나인학교	파주	922-1079	초등
하남꽃피는학교	하남	791-5683	초등
행복한학교	파주	953-7295	초등

○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연번	프로그램 명	개발기관 연락처
1	공동체생활을 통한 인성교육	358-8776
2	학교 부적응학생의 자아정체감 회복과 진로결정을 위 한 대안교육프로그램	02-2617-5383
3	반갑다 마음아!	334-4115
4	특성화교육활동의 실제	416-3754
5	적응활동 프로그램	358-8776
6	청소년의 감성을 함양을 위한 도예	710-6911
7	청소년 셀프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스스로 크는 나무'	248-1318
8	똑! 똑! 똑! SEX	032)324-0723
9	학교생활 부적응학생을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	451-2685
10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유·꿈·성장을 위한 「반올림 학교」	916-4071
11	바른 생활력 신장을 위한 체험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	281-3588
12	망, 꿈, 핌	276-0770
13	학교폭력예방 및 가해학생을 위한 대안교육프로그램	358-8773
14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상담프로그램	416-3754
15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학습 특별교육프로그램	582-7453
16	배려와 돌봄의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710-6911
17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프로그램	358-8776
18	체험을 통한 행복찾기 교육프로그램	281-3588
19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특별교육 학생용 워크북	451-2685
20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교 재적응을위한 프로그램 메뉴얼	966-4007
21	I ♥ peace	032)324-0723
22	학교폭력가·피해학생 대안교육프로그램	276-0770
23	학교폭력가해학생 선도프로그램 매뉴얼 -폭력 No smile 1004 -	916-4071
24	인권! 행복입니다 평화입니다.	334-4115

4)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명 : 진로탐색특별수련과정

○ 운영 장소

- 남학생 : 늘 푸른 집(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 / ☎ 352-9513

- 여학생 : 보람의 집(경화여자고등학교) / ☎ 761-4125

○ 교육 시기 : 학기별 2회(2박 3일 과정)

○ 운영 대상 : 진로설정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남·여) ○ 교육 내용 : 흥미·적성 검사, 진로탐색, 봉사체험 등

5) 비행 및 부적응 학생의 민간단체 위탁교육 실시

○ 도교육청 특별교육이수(위탁) 기관 지정 운영

기 관 명	주 소	전 화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505-3, 1층	248-1318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부천시 원미구 중4동 1028	032)324-0723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770	451-2685
문촌7사회복지관	고양시 일산구 주엽2동 14	916-4071
인성지도교육원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9, 동남빌 딩 201호	281-3588
원당사회복지관	고양시 덕양구 성사2동 736-2	966-4009
(사)푸른꿈청소년상담원	용인시 풍덕천 2동570-1	276-0770
군포시청소년쉼터하나로	군포시 산본동 75-61	399-7997
매화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 산본1동 1055	393-3677
군포시가야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 산본동 1155 주공8단지내	395-4894
청서년을위한 수원내일여 성센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53-10 대성빌딩 1층	251-1517
광명시청소년종합지원실	광명시 철산 2동 153	02)2619-1318
흰돌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43 흰돌마을 4단지	905-3400
청소년문화공통제십대지기	의정부시 가능 1동 374-4	826-7935

6) 학교별 맞춤형 특별프로그램 개발 운영

- (1) 학교의 실정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 학교별 프로그램 예시

프로그램 유형	비고
학급 담임교사와 함께하는 주말캠프 운영	휴무 토요일 활용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상담자원봉사자 활용
진로캠프 운영	진로 상담 및 진로 탐색 활동
금연캠프 운영	흡연학생 치유
성교육프로그램 운영	올바른 양성평등 및 성 이해
전입생 및 복교생 적응프로그램 운영	전입생·복교생의 학교적응력 향상
도울학생 선도프로그램 운영	선도대상학생 교육프로그램
자녀와 함께하는 캠프	방학을 이용한 학생·학부모 함께 참여
장애체험 캠프	장애체험을 통한 장애우 이해

- (2) 학생의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
- (3) 전교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참여
- (4)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 반성을 통한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
- (5) 우수프로그램 사례발표 및 일반화

Ⅲ. 학생생활지도 각종 계획

- 1. 기본생활습관 지도 계획 / 32
- 2. 학생 인권보호 및 신장 계획 / 36
- 3. 효 체험교육 계획 / 38
- 4. 학교 성교육 내실화 계획 / 40
- 5. 학교 안전교육 계획 / 42
- 6. 흡연 예방 및 약물 오 남용 예방교육 계획 / 46
- 7. '친구사랑의 날' 운영 계획 / 48
- 8. 학업중단 예방 및 복교생 지도 계획 / 52
- 9. 대안교실 운영 계획 / 54
- 10. 학부모상주지도실 운영 계획 / 57
- 11. 학생 생명존중교육 계획 / 60
- 12. 진로상담 활성화 계획 / 63
- 13. 사이버중독 클리닉 운영 계획 / 65
- 14. 나눔 봉사활동 내실화 추진 계획 / 67
- 15. 학생자율동아리 활동 활성화 계획 / 70
- 16. 현장체험학습 계획 / 72
- 17.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계획 / 80
- 18. 학생 표창 계획 / 82
- 19.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동 계획 / 83
- 20. 전문상담순회교사 운영 계획 / 85
- 21. 학생예능경연대회 개최 계획 / 87
- 22. 경기도교원미술작품전시회 계획 / 89
- 23. 연합교외생활 지도 계획 / 91
- 24. 학생생활관 운영 계획 / 93

03 학생생활지도 각종 계획

1. 기본생활습관 지도 계획

● 관련근거

• 2007경기교육기본계획 111(민주시민 의식 강화)

가. 목적

기본생활습관 정착을 위한「친절·질서·청결·예절」의 생활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바람직한 민주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나. 기본 방침

- 친절·질서·청결·예절 교육의 지속적 추진
- ㅇ 각급 학교별 과제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우수사례 발굴 표창 및 사례집 발간·보급
- ㅇ 도, 지역, 학교 단위의 평가단을 조직하여 생활지도 실적 점검
- o 지역, 학교별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추진 및 행·재정적 지원 강화
- ㅇ 가정, 학교, 사회와 연계한 범사회적 분위기 조성

다. 세부 추진 사항

1) 친절의 생활화

- ㅇ 타인 먼저 배려하는 학생생활지도 계획 수립 실천
- ㅇ 다른 사람 칭찬해 주기
 - '칭찬의 날' 운영 계획 수립 실천
 - 매달 '칭찬 왕' 선생님 및 학생 선정
 - 학생의 이름 불러주기
 - 칭찬 E-mail 및 문자 메시지 보내기

- ㅇ 친구의 장점 찾아 말해 주기
 - 학생의 장점 찾아 칭찬하기
 - 칭찬 릴레이 운동 전개
 - 교실 게시판 활용 친구 장점 적어주기
 - 학급회의 시간 활용 친구의 장점 발표하기
 - 학교 및 학급 홈페이지를 활용한 칭찬 코너 운영
- ㅇ 웃음 띤 얼굴로 먼저 인사하기
 - 등·하교 시 서로 인사하기
 - 학교로 찾아오는 손님께 인사 잘하기
 - 교내에서 선생님께 인사하기
 - 학생의 인사 바로 받아주기
 - 학생을 편애하지 않기
- ㅇ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
 -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갖기
 - 웃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갖기
 - 불우이웃 도와주기
 - 양보하는 마음 갖기
 - 이웃과 인사 나누고 친하게 지내기
- ㅇ 실천 위주의 친절 활동의 내실화
 - 배려할 줄 아는 모델로서의 교사상 정립
 - 학급회 및 학생회 활동을 통한 친절 능력 신장
 - 학급별 친절봉사단 조직 운영
 - 자율친절도우미 조직 운영

2) 질서의 생활화

- ㅇ 차례 지키기 학생생활지도 계획 수립 실천
- ㅇ 여럿이 모이는 곳에서 차례 지키기 지도
 - 급식 질서 지키기
 - 계단 이동시 차례 지키기
 - 수준 높은 관람 질서 지키기
- ㅇ 교통안전, 질서 지키기 지도
 - 교통 신호 지키기
 - 등·하교 교통봉사단 운영
 - 횡단보도 바르게 건너기
 - 승·하차 시 차례 지키기

- 학생 자율실천단 조직 및 활성화
 - 「친절·질서·청결·예절」실천을 위한 캠페인 실시
 - 교내 취약지역 자율 순회조 편성 운영
 - 게시 자료를 활용한 기본생활습관 정착지도
 - 수련활동을 통한 학생 자율선도능력 키우기
 - 학급회 및 학생회 등을 통한 교내 질서문화 정착 방안 토의
- ㅇ 실천 위주의 질서 활동의 내실화
 - 질서를 잘 지키는 모델로서의 교사상 정립
 - 학급회 및 학생회 활동을 통한 질서 능력 신장
 - 학급별·학년별 질서봉사단 조직 운영
 - 자율 질서도우미 조직 운영

3) 청결의 생활화

- ㅇ 내 주변은 내가 정리하는 학생생활지도 계획 수립 실천
- 화장실 깨끗이 사용하기 지도
 - 휴지 제대로 버리기 및 뒷정리 잘하기
 -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 배려하기
- ㅇ 자기 주변부터 깨끗이 하기 지도
 -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고장 깨끗이 하기
 - 자기 물건 정리하기 및 사물함 깨끗이 하기
 -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하기
- ㅇ 환경 정화 및 나눔 봉사활동의 생활화
 - 지역 및 국토 대청결 운동 적극 참여하기
 - 지역별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한 환경 봉사활동 전개
 - 올바른 봉사활동을 위한 사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 봉사활동의 실천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태도 기르기
- ㅇ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결한 생활 실천 지도
 - 다양한 학교 환경행사 계획 수립 실천
 - 지역 교육청 · 학교별 자체 계획 수립 추진
 - 환경 캠페인, 환경 백일장, 환경 포스터 그리기 행사 추진
- ㅇ 실천 위주의 청결 활동의 내실화
 - 1교 1하천 자연보호운동 전개
 - 주변을 깨끗이 할 줄 아는 모델로서의 교사상 정립
 - 학급회 및 학생회 활동을 통한 청결 능력 신장

- 학급별 환경봉사단 조직 운영
- 자율환경도우미 조직 운영

4) 예절의 생활화

- ㅇ 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하는 학생생활지도 계획 수립 실천
- ㅇ 상호간에 존대말 사용하기 지도
 - 웃어른께 높임말 사용하기
 - 수업시간에 경어 쓰기
 -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언어 사용의 생활화
- ㅇ 휴대전화 및 인터넷 예절 지키기 지도
 - 휴대전화 예절 교육 실시
 -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 인터넷에서 남을 비방하지 않기
 - 학생 인성 및 정보통신 윤리 교육 강화
- ㅇ 은어 및 비속어 사용하지 않기 지도
 - 친한 사이라도 언어 예절 지키기
 - 바르고 고운 우리 말 사용하기
- ㅇ 실천하는 효행 교육의 활성화
 - 효행의 날 운영
 - 경로효친 생활화
 - 학교별 전교생 대상 효 실천 교육 실시
 - 학부모와 함께하는 효 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시
- ㅇ 예절교육 수련기관 운영 프로그램 참가 지도
 - 체험·수련활동 및 소풍·수학여행 시 예절교육 프로그램 참가
 - 예절관 및 효행기념관 관람하기
- ㅇ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연합고사 이후 예절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생·교사·학부모 참여 권장
- ㅇ 실천 위주의 예절 활동의 내실화
 - 예절이 습관화 된 모델로서의 교사상 정립
 - 글로벌 시대에 맞는 여행예절 지키기
 - 학급회 및 학생회 활동을 통한 예절 능력 신장
 - 학급별 예절봉사단 조직 운영
 - 자율 예절도우미 조직 운영

2. 학생 인권보호 및 신장 계획

● 관려근거

-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0조(학생자치활동 보장)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 UN은 인권교육 10개년 발전계획(1995-2004)중 학교에서 인권교육의 시행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 ∘ UN은「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에서 초·중등학교 정규교육 체제내의 인권교육 포함 권고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04.01.29) 및 동법 시행령(2004.07.30)
- 2007경기교육기본계획 112(학생의 기본 인권 존중)

가. 목적

인권 친화적 학교풍토 조성을 통하여 인권의식이 뿌리내린 학교공동체를 구현하고, 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에 인권 가치를 확산·전파한다.

나. 기본 방침

- ㅇ 학생들의 인권의식 제고
- o 연구·시범학교 운영
- ㅇ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 보고대회 실시
- ㅇ 인권 관련 단체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ㅇ 명랑한 학교문화 조성 및 바른생활 태도 함양
- o 민주·인권 교육에 대한 교육 및 연수 기회 확대
- ㅇ 학생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간존중의 생활지도 강화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자율적인 학교생활규정 제정·운영
- 토의·토론 기법을 지도하고 학생회, 학급회 등 토론 행사 정례화

다. 세부 추진 사항

1) 인권 교육의 내실화

- ㅇ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인권 교육 강화
 - 관련교과 연계 지도, 계기교육, 재량활동 시간 활용 등 연간지도 계획 수립
 - 교직원 연수, 학부모 연수 계획 수립 실시

2) 연구ㆍ시범학교 운영

- 실천중심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을 연구과제로 지정
- ㅇ 재량활동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인권교육 적극 추진
- ㅇ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또는 인권교육 담당 교원 양성
- 인권교육 우수 프로그램 지도 자료를 구축하여 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에 탑재·보급
- 시범학교 운영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친인권적 학교운영의 기반 조성

3) 기타 인권교육 활성화 운영 방안

- ㅇ 학교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존중 의식을 실천할 수 있는 장 마련
- ㅇ 다양한 인권교육 관련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사제·학우 간 예절과 애정이 있는 학교 운영
- ㅇ 학생회의 민주적 조직 및 운영으로 자치 역량 강화
- 규정 제정과 학생회 운영 등에 학생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합리적 의사결정과 자주 적으로 실천하는 건전한 시민 정신 함양
- ㅇ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언어 사용 및 생활지도 실시
- ㅇ 학생 징계 시 반드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 제공
- ㅇ 학교생활규정 중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 지속적 개정
- 인권존중 풍토 조성을 통한 교원과 학생·학부모간의 상호 신뢰구축
- 두발·복장에 대한 비교육적 지도방법 지양
- ㅇ 가정환경 조사 시 불우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유의
- ㅇ 인격존중의 학생지도방법 정착
- 청소년보호에 대한 교원·학생·학부모 연수 실시
- ㅇ 하급생에 대한 상급생의 폭력행위 금지 지도
- 학생민원에 대한 답변제 운영(건의함, 여론함, 신문고, 홈페이지 상담실, E-Mail 등)
- ㅇ 사제간 정기적인 대화 및 토론시간 운영으로 학생과의 대화문화 정착

3. 효 체험교육 계획

● 관련근거

◦ 2007경기교육기본계획 111(민주시민 의식 강화)

가. 목 적

인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효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가정과 연계한 실천 하는 효 문화 확산 및 경로효친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한 다.

나. 기본 방침

- ㅇ 효 실천을 위한 효 문화 확산
- o 효 체험교육 장학자료 발간·보급
- ㅇ 지역의 효 체험 학습장 적극 발굴 홍보
- o 효 체험 시범학교 지정·운영을 통한 효 실천 강화
- ㅇ 단위 학교별 학부모와 함께 하는 효 체험 활동 프로그램 실시

다. 세부 추진 사항

1) 실천하는 효행 교육의 활성화

- '효 체험의 날' 지정·운영
 - 5월 7일, 9월 22일
 - '효 체험의 날' 운영(예시)
 - 예절관련 체험활동(생활관 입소, 지역사회 시설물 활용)
 - 효 관련 그림그리기, 글짓기, 노래 부르기 대회 개최
 - 효행 사례 발표
 - 효행 로드맵 만들기
 - 부모님과 역할 바꾸기 체험행사
 - 부모님께 편지쓰기

- ㅇ 학교 효 실천교육 연간 계획 수립 및 교육 전담교사 지정
- ㅇ 학급회, 학생회 활동을 통한 효행 능력 신장
- ㅇ 학교별 전교생 대상 효행학생 발굴 표창

2) 예절교육 수련기관 운영 프로그램 참가

- 체험·수련활동 시 예절교육 프로그램 실시
- ㅇ 예절관 및 효행기념관 관람 학습 참가
- ㅇ 예절교육원의 「효 체험 과정」 적극 참여

3) 효 체험교육의 강화

- ㅇ 효 체험 교육과정 운영(효 교육 지도체제 구축)
- 예절교육 강화(급우 간, 학교 내, 학교방문 손님에 대한 예절 등)
- ㅇ 지역교육청별 효 체험교육 사례 발표대회 개최
 - 우수 학교 및 유공 교원 표창
- ㅇ 효 체험교육 우수실천사례 보급

4) 「학생-학부모 대화의 날」운영

- ㅇ 「학생-학부모 대화의 날」 지정일 : 매달 넷째주 토요일(월1회)
- ㅇ 주요활동 (예시)
 - 두레상 운동 : 가족들이 아침 함께 먹기
 - 부모님 죄송해요! : 감사편지, 사과편지 쓰기
 -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엄마 할래요 : 자녀가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님 이 하시는 역할 체험
 - 얘기해요, 엄마 아빠! : 가정에서 주제를 정하여 대화하는 화목한 시간 갖기
 -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 부모님과 등산, 운동, 영화감상, 음식만들기 등 함께하는 활동 실시

4. 학교 성교육 내실화 계획

● 관련근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 제3항
- 교육기본법 제4조
- 여성발전기본법 제20조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 2007경기교육기본계획 111(민주시민 의식 강화)

가. 목적

잘못된 성지식 등 유해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성교육을 내실 화하여 건전한 성가치관을 지닌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교육현장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지원 활동을 강화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한다.

나. 기본 방침

- 성(양성평등)교육,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의식 제고
- ㅇ 학교별 다양한 행사활동 추진
- 성(양성평등)교육,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 ㅇ 성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및 태도 형성교육 중점 지도
- ㅇ 학생들의 필요와 발달수준에 적합한 성교육 자료 활용지도
- 성(양성평등)교육,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및 정기점검
- 성희롱 고충상담 전담 창구 마련 및 정기점검
- 학교 성(양성평등)교육 연간계획 수립(학교 교육계획서와 연계) 및 실천
- ㅇ 학교 성(양성평등)교육 기본지도 시간 준수(연간 10시간 내외 확보)
- ㅇ 성(양성평등)교육 담당교사 1인 이상 지정 및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 ㅇ 양성평등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활동 강화
- ㅇ 교과와 연계한 양성평등교육 강화
-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보급

다. 세부 추진 사항

1) 성교육의 내실화

ㅇ 각급 학교의 체계적인 성교육 강화

- ㅇ 학생들의 필요와 발달수준에 적합한 성교육 자료 활용지도
 - 성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 실시
 - 성(양성평등)교육,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및 정기점검
 - 성(양성평등)교육을 심리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 지도
 - 초 · 중등 지도지침 및 자료를 참고하여 지도
- o 성희롱·성폭력 교육 및 예방 강화
 - 성희롱 관련 고충 창구 운영
 - 연 2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전반기, 후반기)
 - ※ 월례조회 기관장 훈시나 문서 및 자료 회람, 인터넷 메일에 의한 자료 배부만으로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 시 성희롱 예방 강좌 개설ㆍ운영
 - 성희롱 예방 지도 자료 개발·보급
 - 성희롱 예방 관련 교장·교감 및 담당교사 연수 실시
 -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철저
 - 가해자 및 관리 감독자에 대한 징계 강화
 - 각급 학교에 성교육 및 성희롱 예방 관련 자체 예산 확보 권장
 - 성희롱 고충 담당자 지정 및 교육훈련 지원(반드시 2인 이상으로 지정하되, 남· 여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지정)
 - 성희롱, 성폭력 예방에 학생 및 학부모가 동참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발송
 - 성(양성평등)교육 및 성희롱 예방 관련 연구ㆍ시범학교 운영
- 성(양성평등) 장학자료 개발·배부

2)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

- ㅇ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개혁 강화
 - 양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 지양
 -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성역할에 대한 부정적 시각 지도
 - 양성평등의식에 학생 및 학부모가 동참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발송
- ㅇ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교육현장에서의 성차별 요소 제거
 - 학교생활에서 교사들의 양성에 대한 차별적 언행 주의
 - 양성평등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사의 솔선수범을 위한 연수 강화
 - 성교육 담당자뿐만 아니라 전 교사가 모든 교과목에서 양성평등교육 실시
 - 양성평등교육 우수사례를 발굴 보급함으로써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 강조(연 2 회, 상·하반기)
 - 성별에 따른 활동기회 제한, 활동내용을 구분하지 않는 교육과정 운영
- ㅇ 학교의 정책 및 교육과정이 남녀학생에게 평등하게 집행되는지 점검
- 학교 홈페이지에 양성평등에 관한 사이트 탑재(자료실, 상담실 등)

5. 학교 안전교육 계획

● 관련근거

- 학교보건법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 ∘ 대통령 지시사항 :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2003년 5월 5일)
- 교육인적자원부 2005 학교안전교육 활성화 방안(학교정책과)
- · 제7차 경기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해설
- 2007경기교육기본계획 114(학생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가. 목적

체계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생명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정착한다.

나. 기본 방침

-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 ㅇ 학교 여건과 실태에 알맞은 안전교육계획 수립
- ㅇ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침서, 자료 제공 등 지원 강화
- ㅇ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연수 강화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교주변 위험요소 제거를 통한 안전사고예방 노력

다. 세부 추진 사항

1) 학교 안전교육의 체계적 실시

- ㅇ 교육과정에 의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 초・중등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내용 반영지도
 - 교육과정 편성·운영
 - 안전(교통안전 포함)교육
 - 재해 대비 교육
 - 관련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을 통한 안전교육 21시간 이상 확보
 - 학교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에 연간계획 반드시 포함

- 교과교육과 안전 활동(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계교육 강화
-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을 피하거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 활용
- 단순 일회성 홍보나 주의 환기 정도의 훈화교육 지양(안전 불감증 야기)
- 위험 상황의 구체적인 사례 제시와 훈련 등을 통해 대처방법이 생활화되도록 교육
- 방학 전, 계절별 중점 안전(재해)교육 실시
- 주5일제 주말 자율체험학습을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
- ㅇ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 학예행사 추진
 - 안전관련 유관기관 견학 및 체험장 활용
 - 매월 15일 '민방위의 날' 적극 동참
 - 안전 유관기관의 전문교육 협조체제 구축·활용
 - 기타 체험학습 시 사전 안전교육 실시
 - 수련활동. 체험학습 시 사전 답사 및 점검 실시
 - * 행정자치부, 수련시설 점검 표준화 체크리스트 활용(2004년)
- ㅇ 안전문화 운동(캠페인 등) 참여 학생의 봉사활동 권장
 - 생활안전을 위한 학생 봉사활동 영역 발굴 안내
 - 119소년단 조직 운영 관할 소방서와 연계
 - 안전문화 운동(캠페인 등) 참여 학생 봉사활동 인정
- 이 안전 윤리교육 강화
 - 기초질서 및 규범 지키기, 반부패 교육, 생명존중 교육 등
- o 학생안전 봉사대 구성·운영
 - 학교 내외의 안전 점검활동, 지역 안전 봉사활동, 안전캠프 등의 활동
 - 현장방문, 체험학습을 통한 생활안전교육 프로그램 적용
 - 학생명예경찰대 조직 및 활동 권장
-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2) 안전교육 교사연수 강화

- o 교육청 안전교육 담당장학사 및 학교별 안전교육 담당교사 지정·운영
 - 교육청 및 학교 업무분장표에 담당자 명시
 - 연간 계획에 의한 학교 안전교육의 전반 관리
 - 안전교육 전문 연수 참여 및 단위학교 전달교육
 - 학교 안전관리를 체계화하여 학교 안전사고 및 비상시 효과적으로 대처

- o 교원의 각종 자격연수, 직무 연수 시 안전교육 과목 포함·운영
- ㅇ 안전교육 담당교사의 안전교육 연수 의무적 실시
 - 자율연수 시 연수비 보조 등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3) 교통안전 교육의 내실화

- ㅇ 교육과정 운영
 - 관련 교과 내용 지도 : 도덕, 국어, 사회, 체육, 미술, 과학 등
 - 특별활동과 연계한 지도: 백일장, 웅변대회, 표어 짓기, 포스터, 그리기 등
 - 자전거 통학생에 대한 주기적인 교통안전 교육 실시
 - 철도 건널목 안전하게 건너기 지도
 - 초등학교 고학년 교통안전 교육 내용의 심화교육 실시
- ㅇ 현장지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교육 강화
 - 학교급별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 파악
 - 사고 사례별 원인과 예방 대책을 담은 실습 교육교재 개발 활용
 - 실습을 통한 안전하게 길 건너기 생활화 지도
 - 등ㆍ하교시 현장 지도 강화
- 교통안전 보조교사·강사 양성 및 계도 활동 강화
 - 담당교사의 교통업무를 보조할 어머니를 교통안전 보조교사로 양성
 - 어머니 교통안전 예방 교육활동 수행
 - 교통안전 학부모 간담회 개최(학기별 1회)
 - 각종 학부모 관련 회의 시 교통안전 교육내용 계도
 - 학교와 가정간의 연계교육 장치 마련
- o 교통안전 유관기관의 전문교육 협조체제 구축·활용
 - 어머니 교통안전명예교사 양성 협조 및 연수강사로 적극 활용
 - 등・하교시 교문 앞 교통안전 지도
 - 분야별 전문교육 협조체제 구축 활용
 -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 홍보
- ㅇ 체험 학습 시 학생 안전사고 예방 철저
 - 각종 체험활동 및 수련 활동 시 사전 교통안전 교육 실시
 - 야외 단체활동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후 사제동행 권장
 - 학생수송 차량 5대 이상 인솔 시 경찰에 보호(convoy) 요청
 - 어린이 통학버스 황색도색 권장 등 사고예방 대책 마련

- ㅇ 어린이 안전교육훈련 우수학교 지원
 - 사업주체 : 소방방제청
 - 사업기간 : 2005~2009(5개년)
 - 지원규모 : 100개교(초등학교)
 - · '06~08년(매년 20교), '09년(30교)

4) 학교 안전점검의 날 운영

- o 각 학교별 안전관리 담당 조직·운영
- ㅇ 학교 안전점검의 날 운영
 - 매월 4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 안전한 학교 환경 구성
 - 가정의 안전점검 정착 및 학부모 교육 강화
- ㅇ 생활안전 자원봉사자 활동 촉진
 -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 생활안전을 위한 학생 봉사활동 영역 발굴•안내
 - 안전문화 운동(캠페인 등) 참여 학생의 봉사활동 권장
 - 학생안전봉사대 구성·운영
 - 학교내외의 안전점검 활동, 지역 안전 봉사활동, 안전캠프 등의 활동
 - 현장방문, 체험학습을 통한 생활안전교육 프로그램 적용
 - 학생명예경찰대 조직 및 활동 권장
 - 학부모 안전도우미제 적극 활용
 - 지역주민 안전봉사대 조직, 녹색어머니회 활용, 명예교통안전 교사제 운영
 - 유관기관 지원 활동
 - 생활안전신고센터 운영

6. 흡연 예방 및 약물 오 : 남용 예방교육 계획

● 관려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1항(금연 및 절주운동 등)
- 청소년보호법 제8조

가. 목적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내외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으로 평생 금연의지를 고취하고,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지대한 피해를 끼치는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여 건전한 생활태도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다.

나. 기본 방침

- ㅇ 흡연의 폐해에 대한 올바른 지식 보급으로 국민건강 증진 도모
- ㅇ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 육성과 쾌적한 학습 분위기 조성
-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 강화
- 약물 오·남용 예상학생 사전파악 및 지도 철저

다. 세부 추진 사항

1) 흡연예방교육

- ㅇ 학교급별 단계에 맞는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운동 전개
- ㅇ 학교별 다양한 행사활동 추진
- o 학교장·담임교사 훈화시간을 활용한 금연교육 실시
- o 학교별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금연교육 시간 확보·운영
- 흡연 학생지도 관련 학교규정 정비 및 학생회를 통한 자율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운 동 전개
- ㅇ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금연운동의 활성화
- ㅇ 금연 성공사례 등 각종 공모전 개최 및 표창

- ㅇ 흡연예방교육 시범학교 운영 지원
- ㅇ 학생 및 교직원 흡연실태 조사 활용
- ㅇ 금연운동 우수학교 및 유공자 발굴 표창

2)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o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 ㅇ 교원 연수를 통한 지도 능력 배양 및 인식 제고
- 관련 교과시간, 교장 및 학급담임의 약물 폐해에 관한 훈화교육 철저
- 교원 연수기관에서는 교원 연수 시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지도자 과정 운영
- 청소년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필요 시 관련 전문기관 적극 활용
- o 약물 오·남용 예방 방송 영상자료 구입 활용
- ㅇ 금연학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예방프로그램 적용

3) 홈페이지 활용

- 마약퇴치본부: www.drug.go.kr
- 한국금연교육협의회 : www.quitsmoking.co.kr
- 금연길라잡이 : www.nosmokeguide.or.kr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www.kash.or.kr
- 국가청소년위원회 : www.youth.go.kr
-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 국제절제협회 : www.ita.or.kr

7. '친구사랑의 날' 운영 계획

● 관련근거

• 2007경기교육기본계획 113(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생활 실천)

가. 목적

학생들 상호간에 배려와 칭찬, 관심을 바탕으로 '사랑 나눔' 실천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진솔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꿈과 신바람 및 감동을 주는학교풍토를 조성한다.

나. 방침

- ㅇ 학기별 각각 2회씩 '친구'라는 의미가 있는 날짜를 지정하여 '친구사랑의 날' 운영
- ㅇ 각급 학교별 학교실정에 맞는 '친구사랑의 날 계획' 수립 및 실천
- 학생자치회를 통한 자율적인 행사로 유도
- ㅇ 전교직원 및 전교생이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

다. 세부 추진 사항

1) '친구사랑의 날' 지정

가) 1학기

○ 4월 2일(월) : 친구*사이*

○ 7월 9일(월) : *친구*

나) 2학기

○ 9월 4일(화) : 친*구사*이

○ 11월 11일(일) : *나란히 나란히*

다) 운영 방법

- ㅇ 학교에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실시
- 공휴일은 학생들이 개인별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도록 하며, 담임교사가 실천 여부 확인

2) 주요 프로그램 (예시)

가) 친구사랑 우체통

- 학급이나 학교에 '친구사랑 우체통'을 설치하고, 학생자치회 또는 학급의 당번을 통해 수거하여 배달
- '친구사랑의 날'에 친구에게 우정을 다지는 내용이나, 화해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써서 '친구사랑 우체통'을 통해 전달
- 타인을 비방하는 글 등 '친구사랑의 우체통'의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글은 삼가도록 사전 교육 실시

나) 친구야 미안해!

- o 학교 방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친구에게 공개 사과 영상물 제작·방영
 - 사전에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녹화
 - 녹화할 학생에 대한 대본 내용 점검(담임교사)
 - 방송할 내용 편집 및 내용 확인(방송담당 교사)
- ㅇ '친구사랑의 날'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사전 제작 된 내용 방영
- ㅇ 가급적 생방송은 지양(비교육적인 돌발 상황 발생 가능)

다) 천사표 내 친구

- 친구의 장점을 찾아 홍보하는 활동으로 '친구사랑의 날'에 친구자랑 홍보자료를 제작 하고 '친구사랑 주간'을 지정하여 이를 발표
- ㅇ 친구자랑 홍보자료 제작 및 발표 종류
 - 내 친구 캐릭터 그리기 / 전시회
 - 친구자랑 광고 만들기 / 전시회
 - 만화로 친구 자랑하기 / 전시회
 - 시, 수필 쓰기 / 교내 방송을 통한 낭독
 - 1분 동영상 만들기 /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 ㅇ 우수작품 선정하여 시상(다양한 제목의 학교장 상 마련)
 - '우리학교 칭찬 왕'
 - '친절한 친구 상'
 - '정말 좋은 친구를 둔 학생 상'
 - '재미있는 친구 상'
- ㅇ 우수작품은 교지 또는 학교축제 시 홍보자료로 활용

라) 릴레이 친구사랑

- 학급별로 장애가 있는 친구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를 지정하여 1개월 단위로 학급 학생 모두가 릴레이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활동 실시
 - '친구사랑의 날'에 도움을 줄 학생 선정(복수 가능)
 - 학급 구성원이 각자 도움을 줄 구체적인 방법 결정
 - 학급용 릴레이보드에 도움을 줄 학생의 이름 기록 (학급용 릴레이 보드는 1개월 달력을 빈칸으로 제작)
 - 릴레이보드는 담임교사가 보관하고 결과를 확인
- ㅇ 도움을 받는 학생이 자존심을 상하거나 수치심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여 진행
- ㅇ 경제적 또는 물리적인 도움보다 인간애(人間愛)적 도움 위주로 실시
- ㅇ 학급에 장애우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마) 친구사랑 마인드 갖기

- ㅇ '친구사랑의 날'에 학급별로 친구사랑과 관련한 주제로 토론회 또는 발표회 실시
- ㅇ 발표 및 토론 주제는 학급의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담임교사가 제시
- 발표·토론 주제의 예
 - 친구가 된 사연 발표하기
 - 이럴 때 친구가 필요하다
 - 폭력이나 따돌림으로부터 친구를 보호하기
 - 나는 이런 친구가 좋다
 -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조건
- 개인별 신상발언 보다는 건전한 친구관계 정립을 위한 마인드 제고에 초점을 맞추도록 진행
- ㅇ 발표나 토론 중 특정학생에 대한 비방의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 친구를 위한 1일 투자

- ㅇ '친구사랑의 날'에 친구를 위해 1일 선행하기 실천
- ㅇ 개인별로 선행을 베풀 친구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내용을 결정
- ㅇ '친구를 위한 1일 투자' 기록표를 만들어 담임교사에게 제출
- ㅇ '친구를 위한 1일 투자' 기록표에 포함할 내용
 - 선행을 베풀 대상자 성명
 -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 동기
 - 실천할 내용

- 실천 후 소감
- ㅇ 실천 후 소감발표 시간 마련

사) 친구사랑 부모사랑

- '친구사랑의 날'에 학부모를 학교로 초청하여 친구의 부모 및 자신의 부모가 동참하는 활동 실시
- ㅇ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교내에서 '친구사랑 부모사랑' 활동 실시
 - 친구의 부모님과 함께 사진첩 만들기
 - 부모님들과 게임 또는 운동(학교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종목 지정)
 - 고민을 나누는 시간
 - 평소에 자녀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나눔의 시간
 - 부모님과 같이 취사(4인~6인 1조)
- ㅇ 부모님이 동참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대안 마련

아) 기타

- 명사를 초청하여 '친구와 진솔한 우정을 지키는 방법'이나, '청소년 시기의 올바른 친구 관계' 등에 대한 강연회 개최
- ㅇ 측은지심(惻隱之心)을 갖기 위한 '1일 장애 체험' 활동 실시
- 친구와 우정을 다지는 '친구와 함께 문화체험', '학급별 다과회' 등 실시
- 아무도 모르게 타인을 도와주는 가운데 보람을 체험할 수 있는 '학급별 수호천사' 활동 실시
- 친구에게 칭찬 E-mail보내기 등

3) 행사 진행 시 유의사항

- '친구사랑의 날'행사가 자칫 1회성 이벤트 행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급 학교에서는 계획 수립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 필요
- 행사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중심 의 행사가 되도록 추진
- 행사 추진 시 장애가 있는 학생이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인권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실시
- ㅇ 전교직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ㅇ '친구사랑의 날' 행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추진

8. 학업중단 예방 및 복교생 지도 계획

● 관련근거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학급 수, 학생 수) 제66조(입학허가), 제67조(입학시기), 제92조(준용)
- 2007경기교육기본계획 113(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생활)

가. 목적

적성과 소질에 맞는 다양한 진로 및 인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복교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인다.

나. 기본 방침

- ㅇ 학업중단학생 예방지도
- ㅇ 가출 및 가출징후 학생에 대한 선도활동 강화
- ㅇ 장기결석 및 부적응 학생에 대한 선도대책 마련
- 학업중단학생 진로지도 강화 및 복교추진 노력과 복교생 적응교육 실시

다. 세부 추진 사항

1) 학업중단학생 예방지도

- ㅇ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및 진로지도
- ㅇ 학업중단학생 예방을 위한 지도대책 수립
- ㅇ 가고 싶은「즐거운 학교」만들기
- ㅇ 결손가정 학생의 교사 및 상담자원봉사자와의 결연 지도
- ㅇ 학업중단 예방에 초점을 둔 특별교육과정 운영
 - 과정명칭 : 부모와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
 - 교육장소 : 경기도교직원가평수덕원
 - 교육시기 : 3월~11월(4박 5일)
 - 교육대상 : 학교장 추천 또는 희망 학생

2) 가출 및 가출징후 학생에 대한 선도활동 강화

ㅇ 가출예방 활동 강화

- 결석생의 결석사유를 즉시 파악하여 학부모와 연계지도
- 적성과 취미에 맞는 특별활동 및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 출석이 불규칙한 학생 1교사 1학생 결연 지도
- 학교생활 부적응 요인 파악 및 제거
- 갈등해소를 위한 학부모·지역사회와의 접촉 확대
- ㅇ 가출징후 조기파악 및 동반 가출 예방지도 철저
- ㅇ 가출 후 귀가학생에 대한 상담 및 지도 강화
- 가출 청소년 찾아주기 등 '청소년 지킴이 집' 활용
- ㅇ 가출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지도방안
- ㅇ 가출사례별 가출 폐해 교육 강화

3) 장기결석 및 부적응 학생에 대한 선도대책 마련

- ㅇ 결석생 없는 학교 만들기
 - 결석사유를 즉시 파악하여 가정과 연계지도
- ㅇ 장기 결석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도 강화
- ㅇ 장기 결석생 원인 파악 및 대처 방안 수립 추진
- ㅇ 등교거부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상담활동 강화
- ㅇ 지역 청소년상담센터와 위기청소년 문제 연계지도

4) 학업중단학생 복교 추진 및 적응교육 실시

- 복교 추진의 적극적인 노력 및 홍보 실시
- ㅇ 복교생 철저 지도
 - 복교생의 기본생활습관, 생활예절, 언어, 용의지도 강화
 - 학교적응을 위한 다양한 봉사·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학업중단 후 복교생 적응 교육 실시로 재 탈락 방지
 -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상담활동 강화
 - 학업중단학생의 복교 후 전학강요 등 타교에 '떠넘기기' 사례금지
- ㅇ 학업중단학생 진로지도 강화

9. 대안교실 운영 계획

●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3항

제5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2007경기교육기본계획 254(소외계층 교육 기회 보장)

가. 목적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심신단련을 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길러주고,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나. 기본 방침

- ㅇ 대안교실은 학교별로 시의 적절하게 실시
- 대안교실은 3~5일 과정, 1일 5시간 내외 실시
- ㅇ 학교별 규정에 의거 교육대상자 선정
- ㅇ 학교별 사전 계획 수립 운영
- ㅇ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및 자원인사 적극 활용
- ㅇ 외부강사와 학교내 교사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여 학생의 외적 흥미 유발

다. 세부 추진 사항

1) 운영프로그램

- 체력단련 프로그램(체조, 몸풀기 게임, 구기운동 등)
- ㅇ 체험활동(등산교실 등)
- ㅇ 자아정체성 형성 프로그램(생활규칙 정하기 등)
- 특기교육(나의 색깔 찾기, 한지공예, 요가, 함께 그리기 등)
- 인성교육(미래의 사회 변화, 음악학습 등)
- 자아성찰 프로그램(생활일기 쓰기, 부모님께 편지쓰기 등)
- ㅇ 소감문 쓰기 및 학생작품 발표회
- 촛불의식(부모님께 드리는 글)

2) 프로그램의 실제 (예시)가) 프로그램(A형)

 일차	시간	주제	프로그램	비고
1일차	16:30~17:20	체력단련	체력단련(체조, 몸풀기 게임)	우천시 실내활동으로 대체운영
	18:00~8:50	체험활동	등산교실	
	19:00~19:50	게 답 글 ㅇ		
	20:00~20:50	자아정체감형성	나의 생활규칙 정하기앞으로의 나의 모습 설계	
	21:00~21:50	자아성찰	하루의 반성과 생활일기쓰기	
2일차	16:30~17:20	체력단련	체력단련(체조, 몸풀기 게임)	4교시 초청강의
	18:00~18:50	특기교육	한지공예, 요가	
	19:00~19:50			
	20:00~20:50	인성교육	특강('미래사회의 변화')	
	21:00~21:50	자아성찰	하루의 반성과 마음다지기	
3일차	16:30~17:20	체력단련	체력단런(체조, 몸풀기 게임)	
	18:00~18:50	특기교육	나의 색깔 찾기 ('염색을 통한 자기표현')	
	19:00~19:50			
	20:00~20:50	적응활동	음악학습(합창-'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21:00~21:50	자아성찰	부모님께 편지쓰기	
4일차	16:30~17:20	체력단련	체력단련(체조, 몸풀기 게임)	
	18:00~18:50	ミ カマ 0	함께 그리기(합동작품)	4,5교시
	19:00~19:50	특기교육		학부모와의 간담회시
	20:00~20:50	인성교육 :	촛불의식	다과회 준비
	21:00~21:50		간담회(학부모, 교사, 학생)	

나) 프로그램(B형)

 일차	시간	주제	프로그램	비고
	16:30~17:20	저녁식사	저녁식사 후 출결 확인	
1일차	18:00~18:50	봉사활동	학교 내・외 환경정화 활동	
	19:00~19:50	교과학습	영어, 한문 기초학습	
	20:00~20:50	파파익급	수학교과 기초학습	
	21:00~21:50	자아성찰	하루의 반성과 생활일기 쓰기	
	16:30~17:20	저녁식사	저녁식사 후 출결확인	
	18:00~18:50	봉사활동	학교 내・외 환경정화 활동	
2일차	19:00~19:50	교과학습	영어, 한문 기초학습	
	20:00~20:50	파 <u></u> 파막익급	수학교과 기초학습	
	21:00~21:50	자아성찰	하루의 반성과 생활일기 쓰기	
	16:30~17:20	저녁식사	저녁식사 후 출결 확인	
	18:00~18:50	봉사활동	학교 내・외 환경정화 활동	
3일차	19:00~19:50	교과학습	영어, 한문 기초학습	
	20:00~20:50	파 <u></u> 파막익급	수학교과 기초학습	
	21:00~21:50	자아성찰	하루의 반성과 생활일기 쓰기	
	16:30~17:20	저녁식사	저녁식사 후 출결확인	
	18:00~18:50	봉사활동	학교 내・외 환경정화 활동	
4일차	19:00~19:50	고고하스	영어, 한문 기초학습	
	20:00~20:50	교과학습	수학교과 기초학습	
	21:0~21:50	자아성찰	하루의 반성과 생활일기 쓰기	

10. 학부모상주지도실 운영 계획

● 관련근거

• 2007경기교육기본계획 113(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생활)

가. 목적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간 참여와 협력의 발전적 파트너십을 공유하고 창의적인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보람교사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주는 학교를 실현한다.

나. 기본 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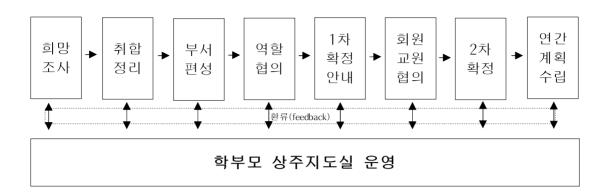
- o 학부모 보람교사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조직·운영
- 학부모 보람교사는 생활지도, 학습지도, 특기·적성교육 등의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 하거나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활동 지원
- 학부모상주지도실에는 소파,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 등의 기본적인 편의 시설을 갖추어 학부모에게 교육서비스 제공
- ㅇ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은 현장방문의 장학지도 실시
- ㅇ 학부모상주지도실의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하고 유공학교, 학부모 표창

다. 세부 추진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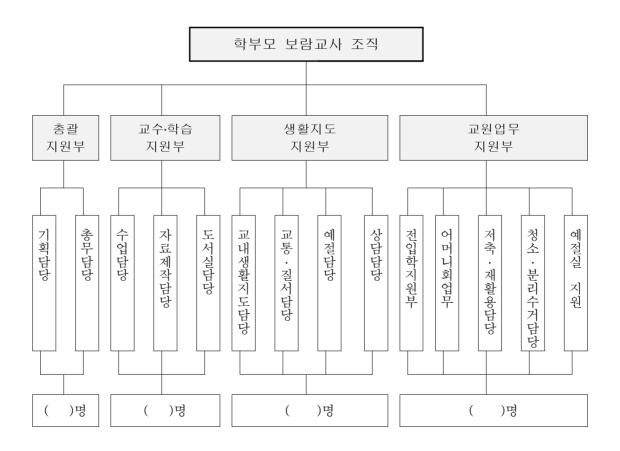
1) 활동내용

-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등과 연계하여 등·하교시 교통지도
- 보람교사증(명예교사제도) 발급
- ㅇ 학기 초 신입생의 학교 적응과 학부모들의 학교이해를 도와줌
- 수 시간, 점심시간에 학교 정문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수업시간에는 학교주변 유해 환경 지역을 순회하면서 봉사
- ㅇ 학부모 보람교사 조직
 - 시기 : 2007. 3. 30(금) 이전
 - 학부모 보람교사 활동을 희망하는 자원봉사자
 - 조직 절차

2) 학부모 보람교사 조직 (예시)



3) 학부모 보람교사 구성 (예시)



4) 학부모 보람교사 명예교사증 발급

- ㅇ 학교에서 학부모 보람교사 신분증을 발급
- ㅇ 신분증 예시

사 진

학부모 보람교사

홍 길 동

대한고등학교

NO. 07-001

소속 : 대한고등학교

직위 : 학부모 보람교사

성명 : 홍 길 동

귀하를 2007학년도 학부모 보람교사

로 위촉합니다.

2007. 03. 02

대한고등학교장

1 (031)789-1234

11. 학생 생명존중교육 계획

가. 목적

체계적인 학생 생명존중 교육활동을 통한 생명존중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생명 경시풍조 예방 활동을 통한 자살 예방 및 부적응, 우울증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을 통한 학교 적응력을 향상한다.

나. 기본방침

- ㅇ 지역 및 학교급별 실정에 맞는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ㅇ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명존중 교육의 차원에서 실시
- ㅇ 인성 교육을 강화하여 학업 부담에 따른 충동적인 행동의 예방
- ㅇ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자살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
- 자살징후 발견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정신·심리치료를 배려

라. 세부 추진 사항

1) 부모교육 및 홍보 강화

- ㅇ 부모와 학생 간 대화시간 갖기 홍보
- ㅇ 부모와 학생 간 대화 방법 홍보

<어떻게 대화할까요? >

-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 www.edunet4u.net
- ㅇ 주기적인 자살예방 홍보 활동(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활용)
- ㅇ 「학부모상주지도실」및 각종 학부모회의를 통한 학부모 교육 실시
- ㅇ 자살충동자 긴급구조 요청전화 및 우울증 상담소 안내

<자살충동자 긴급 구조요청 전화>

- 생명의전화(1588-9191, www.lifeline.or.kr)
- 사랑의전화(1566-2525 :www.counsel24.com)
- 수원시자살예방센터(214-7942, www.csp.or.kr)

<우울증 상담소>

- 한국청소년 상담원(02-730-2000 : www.kyci.or.kr)
-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248-1318: www.hi1318.or.kr)
- 학교별 어려운 처지(신체적, 경제적)를 딛고 일어나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 적극 발굴 홍보
- 영화, TV, 도서 등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례 안내
- 학교별 극복사례를 발굴하여 홈페이지에 탑재

2) 인성교육프로그램 적용 및 예방 교육

- ㅇ 정서조절능력 개발 인성교육 프로그램 적극 활용
- o 정신·심리치료를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생활지도 실천

<자살징후 발견 학생의 정신·심리치료 적극 지원>

- 1차 : 학교단위의 정신·심리치료(학교의사, 보건교사 등)
- 2차 : 정신과 의사진단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안내
- ㅇ 학생 생명경시풍조 퇴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 실시
 - 학급단위 토론회, 역할극 등
 - 친구 간 문자메시지 보내기
 - 명사 초청 강연회
 - 학생자치회 주관 캠페인 활동 전개
- ○「친구사랑의 날」적극 실천

3) 교사연수 및 교육과정 연계 운영

- ㅇ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명존중 교육 강화
 - 관련교과, 관련 단원 학습 시 생명존중 교육 강화
 - 교과교육 시 생명윤리 교육 병행
 - 학교장 및 담임교사의 훈화 시 생명존중관련 훈화 실시
- 특별활동 및 개발활동을 통한 다양한 생명존중 관련 교육활동 실시
 - 공익광고 만들기
 - 표어·포스터 만들기
 - 교내·외 체험학습 실시

- ㅇ 교사대상 자살 예방 상담전문가 연수 기회 확대
 - 유관기관 연수프로그램 활용 교사 연수
 - 지역사회 단체 주관 연수 기회 제공
 - 각종 사이버 연수 활용
- ㅇ 자살충동자 조기발견 노력 및 각종 교육자료 보급
 - 담임교사의 학생관찰 충실 및 학급 내 학생 간 교우관계 적절한 활용
 - 자살의 위험에 처해 있는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자살 충동 학생에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제공
 - 타 기관에서 개발된 자료나 교육청 또는 단위학교별 자체 개발 자료를 교사와 전문상담교사,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이 활용하도록 유도
 - 또래 상담을 활용한 자살충동자 조기 발견 노력

4)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 ㅇ 학교별 지역사회 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 지역별 사회복지관
 - 지역별 상담센터
 - 정신건강보건센터 및 보건복지부 산하단체 등
- o 한국자살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 홍보(www.suicideprevention.or.kr)

'자살예방 상담의 전문적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전문가에 의해 내담자의 정 신건강 상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짐'

○ 수원시자살예방센터의 School Gatekeeper Training 홍보(www.csp.or.kr)

'School Gatekeeper Training은 자살예방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지식전달을 통해 청소년 자살을 바라보는 시각 및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살 위험인 자를 인식하고 즉각적인 자살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본적인 caring skills, 위험도 평가 사정, 기본 의사소통 및 적극적인 경청의 기술 등을 숙지하도록 함'

12. 진로상담 활성화 계획

● 관련근거

· 2007경기교육기본계획 191(진로교육 내실·다양화)

가. 목적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상담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자기 관리 및 진로 개척 능력을 신장한다.

나. 기본 방침

- ㅇ 학생 진로 교육의 내실화
- ㅇ 학생 진로 상담의 활성화
- ㅇ 진로 지도 방법의 다양화
- ㅇ 진로 탐색 과정의 활성화

다. 세부 추진 사항

1) 학생 진로의 내실화를 위한 여건 조성

- ㅇ 진로상담실 설치 운영
- ㅇ 진로상담실 환경 조성
- ㅇ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진로상담 활성화

2) 진로상담의 활성화

- o 초·중·고등학교「진로와 직업」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적극 활용
- ㅇ 진로교육을 통하여 자기관리 및 진로개척 능력 신장
- ㅇ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진로교육 실시
 - 입시위주의 진로교육 지양
 - 학생들의 흥미, 소질, 적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 각종 진로에 대한 표준화검사는 진로지도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ㅇ 진로지도 강화 및 관련정보 제공

- 진로탐색활동 및 직업, 직장체험 위주의 교육
-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진로지도
- 진로지도 방법의 다양화
- 진로상담 사이트 및 활용방법 안내
- 지역별 고용안정센터 및 청소년상담실 적극 활용
- ㅇ 진로탐색과정 특별수련
 - 진로탐색 교육과정(I)
 - · 과정명칭 : 진로탐색 특별수련 과정
 - ·교육장소 : 늘 푸른 집(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
 - ・교육시기: 학기별 2회(2박 3일 과정)
 - ·교육대상 : 고등학교(남) 부적응 학생
 - 진로탐색 교육과정(Ⅱ)
 - 과정명칭 : 진로탐색 특별수련 과정
 - 교육장소 : 보람의 집(경화여자고등학교)
 - 교육시기 : 학기별 2회(2박 3일 과정)
 - 교육대상 : 고등학교(여) 부적응 학생
- ㅇ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 '알리고 싶은 나' 등 나의 가치 탐색하기
 - 나의 장래 설계
- o 직업적성·흥미검사 활용
 - 검사결과를 학생·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진로지도에 활용
- ㅇ 진로지도 관련 홍보활동 강화
 - 진로관련 기관 홈페이지 주소

기 관 명	홈페이지 주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http://www.careernet.re.kr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http://www.work.go.kr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진로정보센터	http://www.kerinet.re.kr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노동부	http://www.molab.go.kr
에듀넷	http://www.edunet4u.net
청소년진로진학상담실	http://www.myway.or.kr

13. 사이버중독 클리닉 운영 계획

● 관련근거

- 2002년 정보통신윤리 교육 추진방안
 (2002.02.25 교육인적자원부)
- 2007경기교육기본계획 113(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생활)

가. 목적

효과적인 사이버 중독 클리닉을 운영하여 교사·학부모의 정보통신 윤리교육 지도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네티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나. 기본 방침

- ㅇ 사이버 클리닉 운영의 활성화 및 체험적 교육활동 전개
- ㅇ 올바른 통신기기 사용 지도 강화
- 다양한 지도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및 교사·학부모의 지도능력 배양

다. 세부 추진 사항

1) 사이버 클리닉 운영의 활성화

- ㅇ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 조성
 -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 사용 지도
 - 사이버 상에서 지켜야 할 윤리 지도
- ㅇ 다양한 사이버 중독 피해 사례 제시를 통한 홍보 교육 강화
- ㅇ 사이버 중독 자가점검표를 활용한 건전한 컴퓨터 이용 지도
- ㅇ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 명확히 구분하기 지도
- ㅇ 자기 관리를 통한 사이버 중독 사전 예방 지도
 - 무분별한 인터넷 접속 안하기 지도
 - 사이버 중독 종류별 증상 홍보 및 경각심 환기
- o 사이버 공간의 장·단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강화
 - 정보윤리 교과와 연계한 사이버 공간의 장·단점 교육 실시

- ㅇ 학생 사이버 중독 실태 파악 및 상담 활동 강화
 - 학교에서 심하게 조는 학생에 대한 원인 파악
 - 사이버 중독 학생의 운동 및 다양한 취미 활동 권장 지도
 - 다양한 심성수련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실시
- ㅇ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 존중 및 보호 지도
 - 정보 매체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하지 않기
 - 건전한 정보 제공 및 올바른 사용
- 음란·폭력성 유해사이트 접속 금지
- ㅇ 불법유해매체물 교내 반입 및 배포 금지
- ㅇ 타인 정보 보호 및 자신의 정보 관리
- ㅇ 타인의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존중

2) 올바른 통신기기 사용 지도 강화

- ㅇ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지도 강화
- ㅇ 휴대전화 예절교육 실시
- ㅇ 정기고사 부정행위 예방대책 마련(디지털 시대에 맞는 고사관리)

3) 학교 정보통신윤리 교육 실천 강화

- o 교사·학부모의 학생 정보통신윤리 교육 지도능력 배양
 - 교사 및 학부모 정보통신윤리 교육 연수 실시
 - 모든 정보화연수 과정에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2시간 이상 필수 실시
- 정보통신윤리 교육 지도교재 제작·보급
- ㅇ 정보통신윤리 관련 학생 동아리, 교사, 학부모 단체 활동
 - 학교홈페이지 및 학예 행사를 통한 정보통신윤리 캠페인
- ㅇ 「정보사회와 컴퓨터」등 교과와 연계한 정보통신윤리 교육

14. 나눔 봉사활동 내실화 추진 계획

● 관련근거

- ∘ 학생봉사활동 운영 지침(교육부 장학자료 제112호, 1996.02.17)
- ∘ 국무총리 지시(제2000-21호, 2000.06.16)
- ∘ 초·중·고등학교 학생봉사활동 제도운영 개선 지침 (학교 81232-2082, 2000.11.21)
- ∘ 학생봉사활동 지도 편람(학교 81232-2083, 2000.11.21)

가. 목적

봉사활동을 통한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 기회 제공으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봉사활동을 생활화하여 삶의 보람을 체득할 수 있게 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의 기본적 자질을 함양한다.

나. 기본 방침

- ㅇ 자발적이고 계획적이며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 o 학생들 스스로 수립·실천하며 사후 반성과 평가 실시
- ㅇ 시간 수 확보보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지도
- 사제동행의 실천을 원칙으로 하고, 올바른 봉사활동을 위한 사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지도

다. 세부 추진 사항

1) 봉사활동 정착을 위한 행정 지원

- ㅇ 지역교육청에「학생봉사활동정보안내센터」설치 운영
 - 다양한 봉사활동 정보를 지속적으로 탑재
 - 봉사활동 희망 학생과 봉사활동 터전을 연결하는 역할 추진
- ㅇ 각급 학교와 지역별 자원봉사센터간의 봉사활동 지원체제 구축
- ㅇ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학생봉사활동 지원 네트워크 구축

ㅇ 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지원 추진으로 학교간, 지역교육청간 정보 교류 강화

2) 학생 봉사활동의 질적 향상

- ㅇ 봉사활동 의식교육 강화
- 체험학습으로서의 봉사활동 강화
- o 계획·실천·반성의 과정 중시
- ㅇ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는 자발성 제고
- ㅇ 봉사활동으로 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의식 고취
- ㅇ 지속적인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추진
- 봉사활동일지 기록 및 관리 철저
- ㅇ 봉사활동 시간 부여 및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의 적정성 강화
- ㅇ 봉사활동 시간수 확보보다 실질적인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지도
- ㅇ 봉사활동 관련 단체 운영 지원

3) 봉사활동 시범학교 운영 활성화

- 봉사활동 시범학교 운영(초 5개교, 중 15개교, 고 10개교, 계 30개교)
- 봉사활동 시범학교 운영 연수(2007년 3월)
- 학생봉사활동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학교관리자 연수(2007년 5월)
- 권역별 협의회 개최(2007년 5월, 9월)
- 권역별 봉사활동 사례발표회 개최(2007년 6월)
- 권역별 합동보고회 개최(2007년 11월)
- ㅇ 홈페이지를 통해 봉사활동교육 수요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
- ㅇ 다양한 봉사활동 터전 발굴 및 홍보
- ㅇ 봉사활동 관련 단체와의 협조 체제 구축
- ㅇ 학교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ㅇ 학부모지도봉사단 조직 및 운영
- 봉사활동 5대 공통과제 추진(파랑새 둥지,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행복 공동체 지 킴이, 111 되살림, 헌혈 및 헌혈 캠페인)

4) 각급 학교 참고사항

- 봉사활동을 초등학생은 연간 10시간, 중·고등학생은 연간 20시간 내외 실시 권장
- ㅇ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봉사활동은 최대 10시간까지 인정
 - 특별활동 중 봉사활동 영역을 7시간까지 편성하여 지도하고, 행사활동 중 봉사활동을 3시간까지 편성하여 지도
 - 개인별보다는 단체별(학년, 학급, 동아리, 가족)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 학교별 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장소, 시간 등 봉사활동 실적 인정이 애매한 경우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록에 기록하고 학교장 결재 후 비치)
- 하루 중 봉사활동 인정 시간은 원칙적으로 수업시간이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휴업일(공휴일)이면 8시간으로 함(단, 하루 중 봉사활동 인정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시간이나 내용이 봉사활동의 목적에 부합될 때는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할 수 있음)
- ㅇ 학교별 봉사활동 학부모지도봉사단 조직 운영
 -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하는 봉사활동으로 운영
 - 가족단위 봉사활동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으로 운영
- 교육인적자원부 학생봉사활동 지도편람(2000. 11) 참조
- 경기도학생봉사활동운영지침(2007.03) 준수

15. 학생자율동아리 활동 활성화 계획

●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8항
- 2007경기교육기본계획 141(소질과 적성 계발)

가. 목적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잠재적인 소질계발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기와 재능발표를 통하여 건전한 학생축제 문화를 정착한다.

나. 기본 방침

- ㅇ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된 동아리 운영
- o 학교 간·지역 간 동아리 연계 활동
- ㅇ 학교 시설 및 지역 사회 시설 활용의 극대화
- ㅇ 학생의 개성과 소질 계발 및 다양한 발표 기회 제공

다. 세부 추진 사항

1) 학생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방안

- ㅇ 동아리 활동의 적극 권장
- o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 마련
- ㅇ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의 특기·적성 신장 기회 활용
- ㅇ 학생 스스로 만들어 가는 주체적이고 독창적인 활동 전개
- ㅇ 향토 축제와 학생 동아리 활동의 연계방안 강구

2) 학생 동아리 활동의 운영 방안

- ㅇ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활동
- ㅇ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건전한 활동
- ㅇ 학교 및 지역사회 시설 이용

- 특별활동이나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 등과 연계
- ㅇ 학교 행사나 전시회, 공연, 발표회를 통한 평가 실시

3) 학생 동아리 활동의 발표

- ㅇ 학교의 각종 연례행사와 연계
- 활동 결과가 학교생활 속에서 표출될 수 있는 기회부여
- ㅇ 학교별 또는 지역교육청별로 발표
- ㅇ 지역 사회와 연계한 축제 개최

4) 유의사항

- ㅇ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운영
- ㅇ 교사의 적절한 지도를 통한 교육적 가치의 극대화
- ㅇ 교과 활동과의 유기적인 관련성 유지

16. 현장체험학습 계획

● 관련근거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의 방법 등)
-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76호 제14조(교외체험학습 상황)

가. 목적

자연과 문화가 숨 쉬는 다양한 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신 장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한다.

나. 기본 방침

- 교외체험학습은 학부모 동반 현장체험학습과 학교(도·농)간 교류학습으로 구분하여 실시
- ㅇ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학부모에게 홍보
- 체험학습의 절차와 방법 준수 및 사전·사후 지도 강화로 체험학습의 질 제고
- 학교(도·농)간 교류학습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안전계획 수립
- 학교(도·농)간 교류학습은 상호 교차 숙박을 하여 직접 체험의 기회 부여가 되도록 운영
- ㅇ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출결은 체험학습 출결규정에 따라 처리

다. 세부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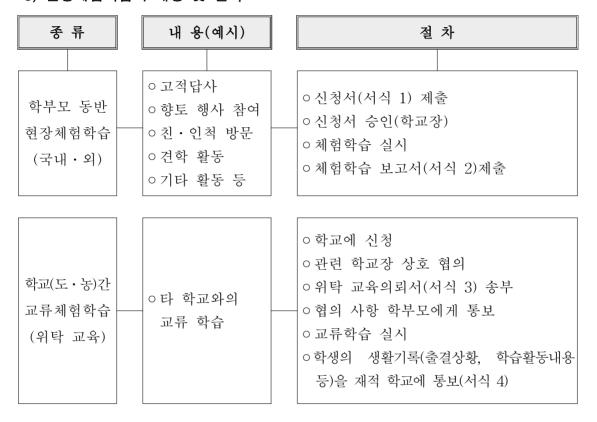
1) 교외체험학습의 방향

- ㅇ 학교의 교육활동을 통한 전인 교육
- 실천을 통한 기본생활습관 형성, 기본예절의 생활화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경로효친의 생활화(노인 단체 대표 강사 초빙 등 권장)
- ㅇ 스스로 터득하고 실천하는 현장체험학습 기회 마련
- ㅇ 지역사회,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인성교육 지도
- ㅇ 교육과정 관련 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 수립 추진
- ㅇ 현장체험학습의 여건 조성 및 규정 홍보 강화

2) 교외체험학습의 종류

- ㅇ 학부모 동반 현장체험학습 :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1주일 이내의 체험활동
- 학교 간 교류체험학습(위탁교육) : 타 학교에서의 1개월 이내의 체험학습

3) 현장체험학습의 내용 및 절차



4) 출결 및 인정 기간

- ㅇ 출결 처리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8호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 (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76호)
- 이 인정 기간
 - 학부모 동반 국내·외 체험학습은 1주일을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 통사정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경기도교육청 초등 81131-5648: '99. 7. 27)
 - 학교(도・농)간 교류체험학습(위탁 교육)은 1개월 이내 (경기도교육청 초등 81131-5648: '99. 7. 23)

- ㅇ 학교의 현장체험학습규정
 - 학칙에 반영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규정 심의

5) 참고사항

-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부여하며, 지역사회의 체험학습장을 적극 발굴·홍보 및 활용
- ㅇ 교과 활동 중에 창의적재량활동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현장 체험활동 강화
 - 활동 내용 : 실험, 관찰, 조사, 수집, 토론활동, 노작, 견학 등
 - 체험학습 방법 및 체험결과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한 사전 연수 실시
- ㅇ 가족 동반 체험학습 기회 확대
 - 가족의 관혼상제 행사에 가족 동반 참여
 - 가족 동행 국내 · 외 여행을 통한 체험학습
- o 소풍·수학여행 시 교육적 지도 철저
 - 코스의 다양화
 - 소규모 단위로 분산 실시
 - 관광중심 체험학습 활동 지양
 - 테마가 있는 활동(문화유산 답사, 첨단산업체 견학, 기념관 및 유적지 탐방 등) 실시 권장
- o 수학여행 국내·외 분리 실시 지양
 - 하계·동계 휴가기간을 활용한 교류활동으로 유도
- ㅇ 현장체험학습 관련 필요 경비 학교예산 반영
- ㅇ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합의 도출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강화
- ㅇ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투명한 회계처리
- ㅇ 불참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의 내실화
- o 현장체험학습 관련 출·결석 관리 철저

<서식 1>

						결	담 임	부 장	교 감	교 장
Ö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성 명				학년	반		제	학년	반	번
기 간		200	년 월	일 ~	~	월	일	()일간	
학습형태	친척집 '	방문(), 부모	와의 여	행 (), 기	타()
목적지	목적지									
및 동반자	동반자						관계			
사 유								'		
학습계획										
연락처	집				н	상문	e)			
면기시 	H.P					ዕ "	"			

위와 같이 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녆	월	일

학 생: (인)

보호자: (인)

학교장 귀하

<서식 2>

কৃ	딭	} 임	부장	교감	교장				
	- 0 1	P 1 H	보고서						
성 명				학년 반		7	제 학년	반	번
기 간		200	년 월	일 ~	월	일	()일간	
학습형태	친척집	방문(), 부모외	·의 여행 (,), 7	기타()
목적지 및	목적지								
동반자	동반자								
체험학	습 내용	☞ (사진	및 보고서	별지 부착)				
※ 체험 ※ 첨부			용이 많을 첨부	경우 별	<i>\(\)</i>		<i>촉 작성</i>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학 생: (인)

보호자 : (인)

학교장 귀하

<서식 3>

위탁 교육 의뢰서

수 신 : 학교장

참 조 : 교무부장

소속학교 명	학교전화번호	학생 명	담임 명	학년 반
				학년 반
목적 또는 사유				
학생 참고 사항				
위탁 교육 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일간

위 학생을 귀교에 위탁 교육을 의뢰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위탁 교육 결과 통지서

위탁학교명 (전화번호)	() -	학교	학생명		학	년반	학년	반
위탁학교 담임교사 명				원적학교 '임교사 명		ı		
위탁 교육기간	20	0 년 월	일 ~ 2	00 년 월	일 (()일간	
출결 사황	결석		지각			조토	1	
활동 상황								
특기 사항								

위 학생의 위탁 교육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서식 5>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표지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학교명:

학생수: 명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표지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17.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계획

●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가. 목적

학생들의 다양한 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자율성 신장과 사회적 책임감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한다.

나. 기본 방침

- ㅇ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 여건 마련
- o 학생회활동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운영 및 평가
- ㅇ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실질적 활동 방안 모색

다. 세부 추진 사항

1)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

- ㅇ 학생회실 설치 운영
- ㅇ 학생자치활동 예산 수립
- ㅇ 학생회 선거관련 규정 민주적 절차 확보
- ㅇ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커뮤니티 운영

2)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

- ㅇ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
 - 민주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교육
 - 유관기관 체험학습 기회 확대
- ㅇ 학생회 활동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 민주적인 학생회 선출방식 지향
 - 학생회 임원 선출 제한 규정 완화

- 리더십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ㅇ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 자치활동 시간 확보
 - 연간운영계획 수립 및 실질적 운영
 - 학급 내 토론 문화 활성화

3) 학생자치활동의 실제

- ㅇ 각종 캠페인 활동
 - 교통안전 캠페인
 - 학교폭력추방 캠페인
 - 깨끗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 ㅇ 학생 여론 수렴 및 홍보 활동
 - 학생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평가 및 반성
 - 학생회 홍보물 작성 및 홍보
 - 학교홈페이지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ㅇ 각종 행사 진행 및 도우미 활동
 - 학생회 주최의 학교축제 활성화
 - 학생자율실천봉사대 도우미 활동
 - 동아리 홍보 도우미 활동
 - 학생회 선거관리 활동
 - 대회 및 행사 도우미 활동
- ㅇ 학교 환경정화 도우미 활동
 - 향기 나는 화장실 만들기 활동
 - 학생회 게시판 꾸미기 활동
 - 환경정화의 날 운영 도우미 활동
 - 안전점검의 날 운영 도우미 활동
- ㅇ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봉사 활동
 - 사랑의 메신저(교내 우편제도) 활동
 - 학교홈페이지를 활용한 친구사랑운동 실천 활동
 - 또래 상담 활동
 - 선·후배 간 후견인 활동
 - 각종 모금 활동

18. 학생 표창 계획

● 관련근거

• 2007경기교육기본계획 113(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생활)

가. 목적

학교생활에서 각 분야별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범 학생을 발굴·표창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바른 인성함양과 소질·적성에 따른 자아실현의 욕구를 고취하 는데 기여한다.

나. 기본 방침

- 5월 '청소년의 달', 1학기 말,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에 모범학생 표창
- ㅇ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 및 실적을 고려하여 8개 분야별로 표창
- ㅇ 희망경기학생대상은 연 1회 학교 급별로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표창

다. 세부 추진 사항

- ㅇ 희망경기학생대상
 - 표창 일시 : 2007년 12월
 - 표창 대상 : 초·중·고등학생
 - 표창 인원 : 120명
 - 표창 분야 : ① 효행대상 ② 사은대상 ③ 봉사대상 ④ 선행대상
 - ⑤ 자립대상 ⑥ 체육대상 ⑦ 예능대상 ⑧ 기능대상
 - 시상 내용 : 표창장, 장학금, 부상
 - 대상자 선정 : 초·중·고등학생을 지역교육청에서 심사하여 추천
- ㅇ 모범학생
 - 표창 일시 : 5월, 8월, 11월
 - 표창 대상 : 고등학교 재학생
 - 표창 인원 : 학교규모에 따라 1~2명
 - (43 학급 미만 : 1명, 43 학급 이상 : 2명)
 - 표창 분야 : ① 학업상 ② 선행상 ③ 체육상 ④ 예능상
 - ⑤ 기능상 ⑥ 효행상 ⑦ 봉사상 ⑧ 자립상

19.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동 계획

● 관련근거

- 1985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청소년 문제 개선 종합대책 세부 계획 중 학교상담실 기능 활성화 방안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
- 2007경기교육기본계획 113(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생활 실천)

가. 목적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각종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나. 기본 방침

- ㅇ 학교 상담활동의 활성화
- ㅇ 상담자원봉사자의 효율적 운영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1인 1교 결연 도울학생 상담
- 상담활동 및 생활지도 강화
- ㅇ 학교폭력상담실 운영의 내실화
 - 학생의 곁에 항상 함께하는 담임교사 이미지 각인
 -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허용적 분위기 조성
 - 교실과 교정을 사제 대화의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

다. 세부 추진 사항

1) 모집 및 기초교육

- 매년 말 지역교육청 및 학교를 통해 모집한 후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다음해 1월 약 20일간의 기초교육 실시
- 1988년 기초교육시작으로 현재까지 19년간 3,200여명의 지원봉사자 배출
- ㅇ 2006년 현재 600여개 학교에서 2,000여명의 상담자원봉사자 활동

2) 활동내용

- ㅇ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활동 활성화
- 각급 학교 현장에서 지역교육청과 지역봉사자회의 계획에 의해 주 2~3회 상담활동 실시
- 학생들의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 가정, 학교, 사회에 정상적 적응지도
- 집단 상담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자아발견, 타인에 대한 인간관계 개선
- ㅇ 학교폭력, 성폭력, 괴롭힘 등을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ㅇ 길거리상담, 개별상담, 사이버상담, 진로상담 등 다양한 상담방법 개발
-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이 상담활동을 능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 및 학 교현장에 상담실 마련
- ㅇ 명예교사 증 발급
- ㅇ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사례발표회 등 개최
- 소식지 「아름다운 만남」을 발간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 상담활동 등에 관한 정보교환
- ㅇ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교육감 감사장 수여

3) 지역사회 상담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 ㅇ 지역별 청소년 상담센터 연계 활동
- ㅇ 부적응학생에 대한 청소년 상담센터 프로그램 안내
- ㅇ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4) 지역사회 관련기관 홈페이지

- 경기도교육청(http://www.ken.go.kr)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http://www.kerinet.re.k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http://www.careemet.re.kr)
- 중앙고용정보원(http://know.work.go.kr)
-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http://www.hi1318.or.kr)
- 청소년세계(http://www.youth.co.kr)

20. 전문상담순회교사 운영 계획

●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35조, 제40조제2항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가. 목적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 체제 구축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바르게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나. 기본 방침

- 사이버 상담망 구축 및 운영
- o 상담 관련 교사·학부모 대상 연수 지원
- 상담 및 진로지도 관련 정보 수집 및 지원
- ㅇ 학생상담 자원봉사단체와 운영에 대한 방안 협의
- ㅇ 지역실정에 맞는 상담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
- ㅇ 학교상담활동 지원 및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상담 모형 개발

다. 세부 추진 사항

1) 역할(직무)

- ㅇ 주요 역할
 - 학교 상담활동 지원
 - 사이버 상담망 구축 및 운영
 - 상담 관련 교사・학부모 대상 연수 지원
 - 학습 부적응·비행·폭력·진로·기타 생활 등 상담
 - 청소년상담원, 상담자원봉사자,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 활동
- ㅇ 보조 역할
 - 학생상담센터 관리
 - 상담 및 진로지도 관련 정보 수집

- 학생들의 각종 심리 · 적성검사 안내
-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상담 모형 개발
-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방법 연수 및 관련 자료 제공

2) 활용 방안

- 학교생활 부적응, 진로지도 등에 대한 상담 활동과 교원·학부모 교육 담당
- ㅇ 학생의 복지 증진과 학교부적응 지도를 통한 사회적 일탈 방지
-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상담·지도
 - 지역 청소년상담원, 복지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기적인 지도
 - On-line/Off-line 진로상담 및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 사이버 상담망 구축 및 운영
- ㅇ 부적응 학생 적응을 돕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적용

21. 학생예능경연대회 개최 계획

●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9조 제8항
- 2007경기교육기본계획 181(예능교육 기회 확대)

가. 목적

학교의 방과후학교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잠재적인 재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교원의 특기·적성 지도의 전문성을 신장한다.

나. 기본 방침

- ㅇ 각 지역교육청별 대회 실시
- ㅇ 단체종목 중심으로 발표
- ㅇ 지역교육청별 각 부문 최우수 팀을 대상으로 실시

다. 세부 추진 계획

1) 음악 분야

	비 고		
분야	분 과	부 문	H 7
	성악	독창	
	78 4	합창	※ 발표회 실시
		피아노 독주	
서양음악	기악	리코더 독주	
	독주	관악 독주	
10 11 1		현악 독주	
		리코더 합주	※ 발표회 실시
	기악	관악 합주	※ 발표회 실시
	합주	현악 합주	※ 발표회 실시
		관현악 합주	※ 발표회 실시

2) 미술 분야

	구 분						
분 야	분 과	부 문	비고				
		수채화	풍경				
		한국화	풍경				
미술	평면	소묘	정물				
	70 TL	고무 판화					
		색채 구성					
		만화 (칸만화)					
	۸۱ -۱۱	공예(도자기)					
	입체	점토 소조					
	서예	서예					

ㅇ 대회 시기

- 지역 교육청 대회 : 2007년 5월 ~ 7월(각 지역별 실시)

- 우수입상작 발표회 : 2007년 10월

ㅇ 우수 입상작 발표회

- 대상자 선정 : 각 지역 교육청별 추천

- 발표 종목 : 합창, 기악 합주, 리코더 합주 등

- 관람 대상 : 개별 및 단체 신청교

22. 경기도교원미술작품전시회 개최 계획

●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9조 8항
- 2007경기교육기본계획 181(예능교육 기회 확대)

가. 목적

교원들의 작품 전시를 통해 미적 안목을 높이고, 창작의욕을 고취하여 향토 미술 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작품 활동과 교과 활동과의 연계를 통해 교과교육의 질을 향상한다.

나. 기본 방침

- 초·중·고 교원 중 희망자의 작품으로 200여점의 작품을 전시
- 전시작품은 타 전시회나 공모전에 출품하지 않은 본인의 순수한 창작품으로 함
- 출품희망자가 많을 경우 작품선정위원 협의회를 통해 작품을 선정하되, 전년도에 출 품하지 않은 교사를 우대하며,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결정
- 출품작은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적인 작품으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교 원미전 관리위원협의회를 통해 전시를 배제하도록 함
- 전시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 공할 수 있도록 함
- 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장르별 전공교원 30명으로 교원미전 관리위원을 구성하여 추진

다. 세부 추진 계획

○ 전시 기간 : 2007. 7. 25(수) ~ 7. 31(화)

ㅇ 장 소 : 수원미술관

○ 대 상 : 초·중등 교원 (작품 200점)

ㅇ 전시작품

- 평면: 한국화, 서양화, 시각디자인, 서예

- 입체 : 조소, 공예, 설치미술

※ 장르 및 작품 경향에 따라 그룹별로 분류하여 전시

ㅇ 개관식 및 전시

- 작품 반입 : 2007. 7. 25(수) 13:00한

- 작품 게시 및 설치 : 2007. 7. 25(수) 14:00 ~

- 개관식 : 2007. 7. 26(목) 14:00

- 관람 기간 : 2007. 7. 26(목) ~ 7. 31(화)

- 작품 반출 : 2007. 7. 31(화) 14:00

ㅇ 출품작품 분야 및 규격

분 야	작 품 규 격	비고
한국화	2절 이내	
서양화	10호 이내	
 수채화	4절 이내	
 판화	4절 이내	
 조소	50×100×100cm 이내	출품자 전시대 준비
시각디자인	캔트지 2절 이내	
 공예	50×100×100cm 이내	출품자 전시대 준비
서예	화선지 2절 이내	★ 세로작품

ㅇ 지역별 작품 출품 수

지 역	출품 대상자 수	총출품수	비고
Д -	초·중등교원	6257	
수원, 성남	13점(13×2=26점)	26	
안양, 부천, 고양	10점(10×3=30점)	30	
안산, 시흥, 평택, 남양주, 화성, 용인	8점(8×6=48점)	48	
의정부, 군포, 파주, 이천, 여주, 광주, 안성, 광명	6점(6×8=48점)	48	
동두천, 포천, 양평, 김포	5점(5×4=20점)	20	
연천, 가평	4점(4×2=8점)	8	
★ 추천작품		20	원로, 퇴직교원
 Л		200	

23. 연합교외생활 지도 계획

● 관련근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법률제7421호)

가. 목적

청소년 및 학생의 비행과 탈선, 유해업소 출입, 불법 취업 등 일탈행위를 예방하며, 학생 생활지도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여 바람직한 학생 생활문화를 정착한다.

나. 기본 방침

- ㅇ 각 지역교육청별 특색에 맞는 연합교외생활지도 계획 수립
- ㅇ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학생생활지도 정보 공유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상황 확인·지도
- ㅇ 주말 및 공휴일에 취약지역 집중 순회지도 실시
- ㅇ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실천적 생활지도 의지 확산

다. 세부 추진 사항

1) 계절별 연합교외생활지도 시기

○ 봄 철:4월 중순 ~ 5월 중순

○ 여름철 : 7월 중순 ~ 8월 중순

○ 겨울철: 12월 중순 ~ 1월 중순

2) 순회지도 시간 및 장소, 방법

○ 지도 시간 : 토요일(14:00~18:00), 일요일(15:00~19:00)

○ 지도 장소 : 지역교육청별 지정 장소(청소년 밀집지역 등)

ㅇ 지도 방법 : 지역교육청과 생활지도간사교가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추진

3) 활동 내용

가) 지역교육청

- ㅇ 각 지역별 유해업소 밀집지역 및 청소년 비행 발생 우려 지역 선정
 - 경찰 지구대 및 읍·면·동사무소 협조
 - 각급 학교의 의견 수렴
 - 전년도 사안 및 비행 발생 지역
 - 안전사고 다발 지역
- ㅇ 주말 및 공휴일 집중순회지도 계획 수립
 - 집중순회지도 지역 선정(권역별 또는 지구별 장소 지정)
 - 집중순회지도 담당자 지정(1일 1~2명 참석)
- 권역(지구)별 활동상황 점검 및 확인
 - 순회지도 일지 및 등록부 작성
 - 지도·단속 실적 파악(통계 제출)
 - 교사·학생·학부모 등 참여자 격려
- ㅇ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 점검
 - 시·군청, 경찰서, 지역별 시민단체 등과 협력 활동
 - 유관기관 현장 활동 요원 격려
 - 학생 생활지도 관련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조 체제 강화
- ㅇ 학생 생활지도 우수사례 발굴 및 문제점 해결 방안 강구
 - 학생 생활지도 우수사례 발굴 보급
 - 지역별 학생 생활지도의 문제점 파악

나) 각급 학교

- ㅇ 연합교외생활지도에 대한 홍보활동 실시
 - 가정통신문 발송
 - 학교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 학교장 훈화 및 담임교사의 종·종례 시간의 훈화 시 전달
 - 학교별 다양한 홍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홍보활동 실시
- o 학교별 교내·외 생활지도 자체 계획 수립
 - 교내 및 학교주변 취약지역 선정 순회활동 실시
 - 교외생활지도 일정 및 담당자 지정(지역교육청 일정 참고)
 - 교내 생활지도 일정 및 담당자 지정
 - 학생회를 이용한 자체 정화활동 실시
 -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활동 실시

24. 학생생활관 운영 계획

● 관련근거

· 경기도교육감소속교육기관기숙사사감수당지급규칙 (경기도교육규칙 제385호)

가. 목적

학생의 일상생활규칙 준수 및 건강관리와 위생지도를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바람직한 공동생활문화를 정착한다.

나. 기본 방침

- ㅇ 학생생활관 운영규정 제정
- ㅇ 학생생활관 운영위원회 설치
- ㅇ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 ㅇ 학생생활관 사감 배치

다. 세부 추진 사항

1) 운영규정

- ㅇ 관리 및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 o 입·퇴사에 관한 사항
- ㅇ 학생생활수칙에 관한 사항
- ㅇ 기타 학생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2) 운영위원회 설치

- ㅇ 구성
 - 교직원과 학부모 대표 등으로 하여 10인 내외로 구성
 - 위원장 : 학교장
- ㅇ 기능
 - 학생생활관 운영규정, 시행세칙, 학생생활수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심의
 - 기숙사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
 - 기숙사 학생 납부금 책정에 관한 사항 심의
 - 기숙사 학생 선발 및 퇴사에 관한 사항 심의
 - 사감 임 · 면에 관한 사항 심의
 -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Ⅳ. 학생생활지도 관련 행사

- 1. 생활지도 연중 행사 / 96
- 2. 생활지도 각종 행사 개요 / 102
- 3. 생활지도 월별 중점 지도사항 / 105

04 학생생활지도 관련 행사

1. 생활지도 연중 행사

※ 각급 학교일정은 참고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운영

			도교육청	각급 학교
	1 - 6	••	⇒ 학교폭력 예방사례집 배부• 배부기관 :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배부 수 : 각 기관별 2부씩	
1	7 - 13	••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21기 기초교육 • 대상 : 학생상담자원봉자사 • 인원 : 240명	
•	14 - 20	••	⇒ 학생봉사활동 프로그램집 배부• 배부기관 :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시민단체• 배부 수 : 각 기관별 2부씩	
JAN	21 - 27	••	 → 생활지도 기본계획 수립 • 인원: 15명(장학관, 장학사, 교감, 학생부장) • 내용: "2007 경기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수립 → 방학 중 학생생활지도 및 학생생활관 실태 점검 • 대상: 중·고등학교 • 담당: 생활지도담당장학관(사) 	→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교규정 학교운영위심의
	28 – 31	••	⇒ 학생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대상 : 각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지정기관 수 : 12기관	

	1 - 3	••	→ 경기도호국교육원 교육활동 과정 홍보• 대상 : 중고등학교• 프로그램 : 지도성배양과정, 희망캠프 등	
2	4 - 10	••	→ 졸업식 전·후 학생생활 임장지도 • 대상 : 도내 중·고등학교 • 담당 : 생활지도담당장학관(사)	→ 졸업식 전·후 교외생활지도 → 교복 물려주기 운동
_	11 - 17	••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동 기록카드 정리• 대상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전원• 내용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동카드정리	→ 신입생 학교 생활 안내
FEB	18 - 24	••	 ◆ 학교 성교육(양성평등)·성희롱 예방교육 계획수립 ● 대상 : 초·중·고 및 각급기관 ● 내용 : 학교 성교육 및 성희롱 예방계획수립 	
	25 - 28	••	→ 경기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발간● 배부기관 : 각 학교 및 직속기관● 발행부수 : 5,000부	

	1 - 3	••	→ 학예행사 추진 협의회 • 대상 : 학예행사 추진 위원 (음악, 미술) • 내용 : 문화예술 갤러리21 운영 방안 협의	
	4 - 10	••	 → 경기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시달 협의회 • 대상 : 고등학교 교감. 학생부장. 지역교육청 장학사 • 내용 : 경기 학생생활지도 기본 계획 시달 	→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수립 및 교사연수
3	11 - 17	••	→ 맞춤형 학생 특별수련과정 계획수립 • 과정 : 진로탐색, 부적응 치료과정 • 내용 : 각 과정별 일정 및 대상자 선정 → 봉사활동 시범학교 담당자 협의회 • 대상 : 봉사활동 시범학교 교감 및 담당자 • 내용 : 시범학교 운영계획 협의 → 학교폭력예방 교육 자료 보급 • 대상 : 초·중·고등학교 • 내용 : 학교폭력예방 교육용 CD자료	 ⇒ 학교폭력추방의 날행사실시(3.12)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구성 ⇒ 학교생활규정 교육(교사,학생)
MAR	18 - 24	••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명예 교사증 발급・ • 대상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 내용 : 활동현황파악 및 명예 교사증 발급 → 예능담당자 협의회 • 대상 : 지역교육청 장학사, 학예행사 추진위원 • 내용 : 예능행사 운영방안 협의 	→ 학급학생회구성→ 학생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25 – 31	••	 → 전문상담 순회교사 협의회 • 대상 : 전문상담 순회교사 • 내용 : 운영계획 시달 → 학생봉사활동 담당자 연수 • 대상 : 봉사활동 담당교사 • 내용 : 학생봉사활동 운영 지침 	→ 학부모대상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학생생활 지도계획 홍보 (학부모 총회시)
	1 - 7	••	 → 전반기 생활지도 담당자 실무연수 • 대상 : 간사교 학생부장, 지역교육청 장학사 • 내용 : 학생생활지도 실무연수 → 「사랑의 대화」발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 • 내용 : 계획 수립 및 원고 모집 	 → '친구 사랑의 날'운영(4.2) → 학부모보람교사 조직 운영 → 교내환경미화
1	8 - 14	••	→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 대상 : 초·중·고 및 특수교 학생• 내용 : 양성평등의식 확산	→ 춘추복착용
4	15 - 21	••	 → 봉사활동 시범학교 학부모지도 봉사단 임원연수 ● 대상 : 학부모지도 봉사단 ● 내용 : 시범학교 운영지원 방안 	
APR	22 - 28	••	 → 전반기 생활지도 특별점검 • 대상 : 초·중·고등학교 • 담당 : 생활지도 담당장학관(사) 	⇒ 학교폭력설문조사 및 사후지도
	29 - 30			

	1 – 5	••	 → 봄철 연합교외 생활지도 ● 대상 : 25개 지역 교육청 ● 내용 : 간담회, 캠페인, 취약지역 순회 	→ 교내모범학생표창
5	6 - 12	••	⇒ 희망장학금 지급• 대상 : 생계곤란 고등학생• 인원 : 50여명	 ★ 춘추·하복혼용 ★ 학교생활규정 재정비 ★ "효 체험의 날" 운영(5.7)
	13 - 19	••	→ 진로탐색 특별수련과정 • 대상 : 진로설정을 고민하는 고등학생(남) • 장소 : 늘 푸른 집(발안농생명산업고) → 경기도학생선도위원 협의회 • 대상 : 50명(본위원회 25명, 지역위원 25명) • 내용 : 위촉장수여, 학생생활지도기본계획설명	→ 학교폭력예방 교육(교사,학생)
MAY	20 - 26	••	→ 청소년의 달 모범학생 표창• 대상 : 고등학생• 인원 : 각 학교별 1-2명	
	27 - 31	••		

	1 - 2	••	 → 전반기 전국 시 · 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자 협의회 • 대상 : 장학관, 장학사 • 내용 : 생활지도 관련 현안사항 협의 	→ 하복착용
	3 - 9	••	 →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실태파악 ● 대상 : 초·중·고 및 교육행정기관 ● 담당 :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사) 	→ 학교폭력설문조사 및 사후지도
6	10 - 16	••	→ 진로탐색 특별수련과정 • 대상 : 진로설정에 고민하는 고등학생(남,여) • 장소 : 늘푸른 집(발안동생명고), 보람의 집(경화여고) → 전반기 학교폭력예방활동 관련 추진사항 점검 • 대상 : 100개교(지역별 중·고 2개교씩) • 내용 : 학교폭력예방 관련 추진 실태 점검	→ 생활지도관련 상반기정기보고 (6.15)
JUN	17 - 23	••	→ 봉사활동 시범학교 권역별 사례발표회• 대상 : 시범학교 30교• 내용 : 학교별 운영사례 발표	
	24 - 30	••	→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 결과 우수 작품시상 • 대상 : 초·중·고등학생 • 시상 수 : 교육청 추천 75편	

		_		
	1 - 7	••	→ 학생생활지도 담당자 연수• 대상 : 고등학교 학생부장 전원, 지역교육청 장학사• 내용 : 생활지도 관련 실무 연수	
	8 - 14	••	 →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소식지 발간 • 제목 : '아름다운 만남' • 내용 : 각 지회소식, 정보교환 내용, 격려의 내용 	→ "친구사랑의 날" 운영(7.9)
7			→ 친구사랑의 날 운영● 대상 : 각급 학교별● 내용 : 학교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학생회장선거
	15 - 21	••	→ 희망캠프 실시• 대상 : 학업중단 후 복교생(고등학생)• 장소 : 경기도호국교육원	→ 하계 방학중 생활지도계획 수립→ 하계 방학중 안전생활교육
JUL	22 - 28	••	 → 성교육(양성평등) 장학자료 제작 ● 내용: 제작위원 조직 (20명), 계획수립 ● 발행부수: 2,000부 → 경기도 교원 미술작품 전시회 ● 대상: 초·중·고 교원 ● 장소: 수원미술관 	
	29 - 31	••	→ 여름철 교외생활지도• 대상 : 25개 지역 교육청• 내용 : 간담회, 취약지역 순회지도	

	1 - 4	••	⇒ 학생상담자원봉사제 담당자 연수• 인원 : 200명• 내용 :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방안 연수	
0	5 - 11	••	→ '선생님과 함께하는 캠프'운영● 장소 :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 대상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담임교사	
8 AUG	12 - 18	••	→ 「사랑의 대화」집 배부 • 배부기관 :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 배부 수 : 각 기관별 2부	→ 학생간부수련회
	19 - 25	••	→ 1학기말 모범학생 표창• 대상 : 고등학생• 인원 : 각 학교별 1~2명	
	26 - 31	••		

	1	••	 → 양성평등 글짓기 우수작품 모음집 제작 ・ 내용 : 초·중·고 학생 작품 (75편) ・ 발행부수 : 2,000부 	
9	2 - 8	••	 → 전문상담 순회교사 협의회 • 대상 : 전문상담 순회교사 • 담당 : 운영계획 시달 → 친구사랑의 날 운영 • 대상 : 각급 학교별 • 내용 : 학교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실시 	* "친구사랑의 날" 운영(9.4)→ 학교폭력예방 교육(교사,학생)
	9 – 15	••	→ 학교폭력추방의 날• 대상 : 각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내용 : 학교폭력예방 관련 각종 행사실시	→ 학교폭력추방의 날행사실시(9.10) → 학교폭력설문조사 및 사후지도
SEP	16 - 22	••	→ 학부모동반 지도성 배양과정◆ 장소 : 경기도호국교육원◆ 인원 : 160명(여학생 80명, 학부모 80명)	→ "효 체험의 날" 운영(9.22)
	23 – 29	••	→ 학생봉사활동 담당자 연수• 대상 : 봉사활동 담당교사• 내용 : 나눔 봉사활동 활성화	
	30	••		

		_		
	1 - 6	••	 → 후반기 생활지도 점검 ● 대상 : 초·중·고등학교 ● 담당 :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사) 	→ 춘추·하복혼용
	7 - 13	••	→ 학생회 임원 대표 간담회● 대상 : 학생회 임원 대표, 지역교육청 장학사● 내용 : 생활지도관련 학생의견 수렴	
10	14 - 20	••	 → 성교육 전문가(담당자) 연수 • 대상 : 고등학교 성교육 담당자 • 내용 : 학교 성교육, 양성평등, 성희롱예방교육관련 → 2007 생활지도 추진실적 평가 • 대상 : 중·고등학교 100개교 	
OCT	21 - 27	••	 방법 : 평가단의 학교방문 평가 → 제4회 경기도 학생 예능 발표회 대상 : 각 지역교육청별 추천 종목 : 독창, 합창, 합주 등 	
	28 - 31	••		

	1	-	3	••	⇒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모범학생 표창• 대상 : 고등학생• 인원 : 각 학교별 1~2명	→ 동복착용 → 교내모범학생표창 → "학생독립운동 기념일"행사(11.3)
44	4	_	10	••	→ 봉사활동 시범학교 권역별 보고회• 대상 : 봉사활동 시범학교• 방법 :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	
"	11	-	17	••	→ 생활지도 실적점검● 대상 : 점검 신청교(중·고)● 담당 : 평가단	→ '친구 사랑의 날'홍보(11.11)
NOV	18	_	24	••	 ⇒ 후반기 생활지도담당자 실무 연수 • 대상 : 간사교 학생부장, 지역교육청 장학사 • 장소 : 경기도교직원가평수덕원 → 생활지도 우수사례집 발간 • 내용 : 생활지도 우수사례 • 발행부수 : 2,000부 	
	25	_	30	••	 → 학교상담 담당교원 및 학부모 연수 • 대상 : 고등학교 상담 교원 및 학부모 • 인원 : 500명 → 학생봉사활동 우수프로그램집 발간 • 내용 : 봉사활동 실천 사례 • 발행부수 : 2,000부 	⇒ 학교폭력예방 교육(교사, 학생)⇒ 학교폭력설문조사 및 사후지도

12	1	••	 ⇒ 희망 2008 소년·소녀 가장 격려 • 대상 : 소년·소녀가장(중·고) • 내용 : 교육감 격려금 지급 → 희망 경기학생대상 표창 • 대상 : 초·중·고등학생 • 표창인원 : 120명 	
	2 - 8	••	→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 추천• 대상 :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추천인원(8명) : 남학생4명, 여학생4명	
	9 – 15	••	→ 생활지도 우수교 및 유공교원 표창• 대상 : 교원50명, 학교 25개교• 대상자 선정 : 평가단 및 지역교육청 추천	→ 생활지도관련 하반기정기보고 (12.15)
	16 - 22	••	→ 연말·연시 연합교외 생활지도 • 대상 : 25개 지역교육청 • 내용 : 간담회, 캠페인, 취약지역 순시	→ 체육복 물려주기 운동
	23 - 29	••	 → 유관순 횃불상 추천 • 대상 :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 제출기관 : 유관순상 위원회 →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도단위 심사 • 대상 : 각 지역교육청별 예선 통과 • 장소 : 중등교육과 지정장소 	→ 동계 방학 중 생활지도계획 수립
	30 - 31	••		

2. 생활지도 각종 행사 개요

가.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 대상 : 초·중·고등학교 교원

○ 훈격: 경기도교육감,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 장관

ㅇ 추진일정

- 계획 통보: 2007년 3월 ~ 4월

- 계획서 제출 및 심사 : 4월 (지역교육청)

대상자 통보 : 4월 (지역교육청)보고서 제출 : 12월 (지역교육청)

- 심사 및 결과 통보 : 2008년 1월

나. 경기문화·예술 갤러리21

○ 대상 :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원

이 내용: 학생예능발표회, 학생동아리발표회, 교원미술작품전시회

ㅇ 추진일정

- 계획 통보 : 2007년 3월

학생예능발표회(각 지역별) : 5월~10월

- 학생동아리발표회(각 학교별) : 5월~10월

- 교원미술작품전시회 : 7월 (수원미술관)

다. 생활지도 담당교사(학생부장) 연수

 대상: 고등학교 생활지도(학생)부장 전원, 지역별 중학교 생활지도간사교 학생부장, 지역교육청 생활지도담당장학사

0 시기:7월

ㅇ 내용 : 경기학생 생활지도 전반적인 연수 및 정보 공유

ㅇ 주요추진사항

- 경기학생 생활지도 정책 연수

- 학생생활지도 관련 특강

- 학생생활지도 우수사례 발표

- 각 지역별 학생생활지도 현안사항 협의

라. 생활지도 담당자 협의회

○ 대상 : 생활지도간사교 학생부장, 지역교육청 생활지도담당장학사

○ 시기 : 4월(상반기), 11월(하반기)

○ 내용 : 학생생활지도 업무처리 협의

ㅇ 주요추진사항

- 학생생활지도 각 업무별 처리방법 협의

- 학생생활지도 관련 지침 및 법령 해설

- 학생생활지도 사례 발표

- 학생생활지도 관련 정보 공유

마.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수(기초교육)

○ 대상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240명

○ 시기 : 1월

ㅇ 교육시간 : 61시간

ㅇ 교육내용

- 현대사회의 특징 (저출산, 고령화, 청소년의 성장속도, 결손가정 증가 등)

- 학교사회의 특징 (교사의 수업부담 가중, 학생의 학습량 증가 등)

- 자원봉사자의 필요성 (학생들의 생활지도 지원 등)

바. 학교상담 담당교원 및 학부모 연수

ㅇ 대상 : 고등학교 진로상담부장 및 학부모 500명

ㅇ 시기 : 11월

ㅇ 연수시간: 8시간

ㅇ 연수내용

- 청소년의 특성(발달단계에 따른 특성)

- 청소년의 진로지도 방법

- 학생생활지도의 방향

- 최신 상담이론 및 학생상담활동 방향

사. 연합교외생활지도

시기: 4월~5월(봄철), 7월~8월(여름철), 12월(겨울철)

ㅇ 방법 : 각 지역교육청별 계획 수립하여 실시

ㅇ 추진내용

- 사회공동체의 연합활동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학부모, 교원 등)

- 학생 계도활동 및 청소년의 보호활동
- 지역별 실정을 고려한 특색 있는 캠페인 활동 전개

아. 희망경기학생대상, 모범학생 표창

- 시기 : 5월, 8월, 11월(모범학생), 12월(희망경기학생대상)
- 대상 : 초·중·고등학생 (단, 모범학생은 고등학생만 해당)
- 인원 : 희망경기학생대상(초·중·고 전체 120명), 모범학생(학교별 1~2명)
- ㅇ 표창분야
- 희망경기학생대상 : 효행, 사은, 봉사, 선행, 자립, 체육, 예능, 기능 (8부문)
- 모범학생 : 학업, 선행, 체육, 예능, 기능, 효행, 봉사, 자립 (8부문)
- ㅇ 추천방법
- 희망경기학생대상 : 지역교육청에서 선발하여 도교육청에 추천
- 모범학생 : 단위학교에서 선발하여 도교육청에 추천

자.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담당교원 워크샵

- 대상 : 고등학교 성희롱·성폭력 담당교원 전원
- ㅇ 시기 : 10월
- 소요시간: 16시간
- ㅇ 주요내용
- 성(양성평등) 교육 정책
- 성교육 활성화 방안
-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과 시스템 활용 방안
-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방안

차. 선생님과 함께 하는 캠프

- ㅇ 대상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해당학생의 담임교사
- 인원 : 50명(학생 25명, 교사 25명)
- 시기 : 7월~8월
- ㅇ 장소 :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
- ㅇ 주요프로그램
- 심리 · 성격 진단 검사
- 공동체 훈련 및 인간관계 훈련
- 노작체험 및 문화체험활동
- 영상편지, 특별한 만남, 상담 등

3. 생활지도 월별 중점 지도사항

월별	생활지도 목표	중점 지도사항	비고
1	방학 중 비행 및안전사고 예방건전한 소비생활 실천	소집학급 등교 학생 지도전화 상담을 통한 건전 생활지도가정통신문을 통한 학부모 연계지도	- 방학 중 생활지도
2	졸업식 및 종업식 전후 건전한 학풍 조성신입생 적응교육 실시(오리엔테이션)	 학년도 마무리를 위한 정리 정돈지도 신학기 자기학습계획 수립 실천지도 학교연혁, 규칙, 교육과정 등 사전지도 학습방법 및 건전한 여가 선용 지도 교복 물려주기 운동 전개 	- 학교행사 특별지도
3	기본생활습관 형성학습 분위기 조성	 ○ 학생생활지도 연간 계획 수립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직 ○ 교내 생활 준수사항 지도 ○ 학년 초 결석예방 지도 강화 ○ 중도탈락 후 복교한 학생 관리 철저 ○ 가정에서의 지킬 일 생활지도 ○ 학급회, 학생회 구성 및 활동지도 ○ 상ㆍ하급생간의 우애 지도 	- 「생활지도 업무 편람」활용
4	가정교육 제고와 학교 교육의 연계 강화기출 및 자살 예방	 친구사랑의 날 운영 (4월 2일) 학부모보람교사 조직 운영 성폭력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방과 후 교육활동 학부모 참여 상담지도 강화 휴대전화 예절 및 사이버 윤리 교육 실시 체험학습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 	-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 협조
5	건전한 청소년 상 확립악물 오·남용 예방	효행 지도 청소년의 달 행사 지도 학교계획, 학부모 연계 등 적극적 지도방안 강구 사회단체 협조 체제 강구 봄철 연합교외 생활지도 및 청소년 보호 캠페인 활동	- 건전한 청소년의 달 행사 지도
6	호국 보훈의 정신 계승성에 대한 바른 가치관 형성	 현충일, 6·25의 날 계기 교육 국기에 대한 예절 지도 강화 교과 관련 성 교육 강화 가정교육과 연계교육 실시 아르바이트 학생 지도 	- 성교육 자료 활용

월별	생활지도 목표	중점 지도사항	비고
7	∘ 극기심 배양 ∘ 나눔 봉사활동 실천	 친구사랑의 날 운영 (7월 9일) 여름방학 계획 수립 및 활동지도 청소년 단체 활동지도 야영 · 수련 활동지도 나눔 봉사활동 지도 강화 학생 안전 지도 철저 여름철 연합교외생활지도 청소년 보호 캠페인 활동 	- 체험활동의 특별지도
8	건강생활 실천하절기 비행 및 안전사고 예방지도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지도 방학 중 소집 학급을 통한 정리정돈 교외생활지도 실시(학교별, 지역별, 유관기관 합동) 가정통신문을 통한 가정과의 연계지도 	- 봉사활동 체험
9	독서의 생활화진로상담 활동의 강화	 친구사랑의 날 운영 (9월 4일) 진로 정착을 위한 수시 상담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습 방법 개선에 대한 반복 지도 전체 교실의 독서실화 독서에 대한 다양한 시상제 운영 	– 지속적인 독서교육 지도
10	학습 분위기의 정착행사교육의 내실화	 특별 면학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재편성 및 평생교육 지도 행사 의식 규칙 준수 지도 각종 문화 행사 교육적인 절차 지도 	- 행사교육의 내실화 및 학습 분위기 정착지도
11		 학생회 주관 행사시 교육적인 절차 및 방법 지도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 지도 고입 · 대입 전후 면학 프로그램 운영 철저 화재, 가스사고, 빙상사고, 교통사고 예방지도 각종 행사를 통한 안전생활 계기 교육 실시 	- 대학수학능력 시험 이후 특별 면학프로그램 마련
12	불우이웃 돕기 실천동계방학 대비 안전교육 실시	 학교별, 지역별 불우이웃 돕기 추진 연합교외생활지도 및 청소년 보호 캠페인 활동 학생 봉사활동 실시 취미·특기 생활 실천 지도 사제동행의 동호인 활동 권장 체육복 물려주기 운동 전개 	- 고입 고사 후 교육과정 정상화

◇ 1월, 2월 중점추진사항

1. 1월, 2월 생활지도 목표 : 졸업식 및 종업식 전 · 후 건전한 학풍 조성

2. 주요 추진사항

가. 졸업식 및 종업식 전ㆍ후 생활지도 철저

- 졸업식 및 종업식 전·후 학교주변,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순회지도 강화
- 학생들의 비행ㆍ탈선행위 근절 및 각종 학생사안 예방교육 강화
- 바람직한 졸업식 문화 정착지도
 - 선 · 후배간의 교복 물려주기 운동 전개
 - 참고서, 교과서 등 각종 학습자료 물려주고 받기
- 졸업식 전 · 후 일탈행위 및 각종 퇴폐행위 근절지도
 - 밀가루 뿌리기, 교복 찢기, 계란 던지기 등
 - 흡연, 음주, 기물파괴, 상·하급생간 구타행위 등
 - 졸업식 전 · 후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등 불법 취업 금지
- 졸업식 전 · 후 표창관리 강화
 - 졸업식 관련 각종 외부기관 학생 표창 추천 시 자체 공적심사위 원회 등을 통한 적격자 엄정 선정

나. 겨울방학 건전하게 보내기

- 가족과 함께 친인척 방문 및 학부모동반 체험학습 실시
- 청소년 유해업소 및 퇴폐업소 등 출입하지 않기
- 건전한 여가선용 및 취미활동 생활화하기
- 주변의 불우한 이웃 및 어려운 친구 보살피기

다. 겨울방학 중 봉사활동의 질 관리 철저

- 학생 봉사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에 대한 봉사활동 의식교육 강화
-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체험학습 차원에서의 봉사활동 실시
- 학교별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봉사활동의 장소, 내용, 시간 등 관리

◇ 3월 중점추진사항

- 1. 3월 생활지도 목표 : 기본생활습관 형성 및 학습분위기 조성
- 2. 주요 추진사항
 - 가. 학교별 2007년도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수립
 - 학교별 학생 생활지도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도교육청 '2007 경기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반영)

나. 새 학년 학생 이해 철저

- 학생 생활지도 기본 자료 완비(담임교사의 학생 신상 파악)
- 학년초 복교생 및 결석생 관리 철저
 - 복교생 상담활동 실시 및 학교적응 프로그램 운영
 - 장기결석생 사유 파악 및 조치
- 학년초 학생상담 기초 자료 완비
 - 학급별 학생 상담 기초 자료 완비
 - 학생 교우관계 및 가정환경 파악

다.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친절·질서·청결·예절」의 생활화

- 「친절·질서·청결·예절」의 지속적 추진
- 학교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칭찬의 날, 청결의 날 등 운영)

라. 학교폭력예방 및 집단따돌림 예방 지도 활동 강화

- 학교폭력추방의 날(도교육청 지정)행사 실시 : 3월 12일(월요일)
- 학교별 자체계획 수립 및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홍보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직 및 학교폭력상담실 설치
- 학교폭력 책임교사 선임 및 보람교사 위촉
- 「피해학생 보호 3S운동」실천

마. 기타

- 신입생의 교복착용시기를 학생 및 학교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
- 등 · 하교시 교통사고 예방교육 철저
- 도울 학생 및 부적응 학생 지도 충실

◇ 4월 중점추진사항

- 1. 4월 생활지도 목표 : 가정에서의 생활지도 제고와 학교교육의 연계 강화
- 2. 주요 추진사항
 - 가.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가정교육의 중요성 인식 확산
 - 학부모 보람교사 조직 운영 (학교별 30명 내외)
 - 휴무 토요일을 이용한 가족단위 체험활동 활성화
 - 올바른 통신기기 사용 및 사이버중독 예방에 대한 가정교육 강화
 - 나. "친구사랑의 날" 운영 철저
 - 일자 : 4월 2일 (친구*사이*)
 - 방법 : 학교별 학급회 시간 또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행사실시
 - 행사내용
 - 토론회 실시 : 어려움이나 폭력으로부터 친구 보호 방안
 - 칭찬. 화해의 메시지 보내기 : 편지 쓰기. E-Mail보내기 등
 - 강연, 세미나 실시 : 친구와 진솔한 우정
 - 친구자랑발표회 : 공개발표회, '사이버발표회 등
 - 기타 : 마음의 선물교환, 친절한 친구왕 선발, 수호천사 등
 - 다. 학교폭력예방 및 집단따돌림 예방 지도 활동 강화
 - 학교폭력예방 자진신고기간 및 1,000만인 서명운동 지속적 실시
 - 학교폭력예방 설문조사 실시
 -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학생 및 교직원 대상)
 - 「피해학생 보호 3S운동」실천

- 학생들의 학교생활 불만요소 파악 및 개선 노력
- 체험학습에 따른 안전지도 철저
-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 참가 홍보
- 봄철 연합교외생활지도 내실 있는 실시

◇ 5월 중점추진사항

- 1. 5월 생활지도 목표 : 건강한 청소년상 확립
- 2. 주요 추진사항
 - 가. 봄철연합교외생활지도 및 청소년 보호 캠페인 활동 실시
 - 학교별 교외생활지도 계획 수립 실천
 - 청소년 일탈행동 및 비행 예방활동 철저
 -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청소년보호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 나. "효 체험의 날" 운영 철저
 - 일자 : 5월 7일 (어버이날 하루 전)
 - 방법 : 학교별 5월 7일에 "효 체험 관련 계기교육" 실시 후 "효 체험의 날(5월 8일)"에 가정에서 효행 관련 활동하도록 홍보
 - 행사내용
 - 효행 계획 세우기
 - 부모님께 편지 쓰기, E-Mail보내기 등
 - 효 관련 강연. 세미나. 간담회 등
 - 효 관련 역사인물 집중 탐구. 효행사례 발표 등
 - 기타 학교 별 독창적인 활동 실시

다. 사안 및 학교폭력 예방지도 활동 강화

- 사안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철저
- 도울 학생 및 부적응학생의 관찰, 상담활동 강화
-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학생 및 교직원 대상)
- 학교폭력예방 자진신고 유도

- 가출 및 무단결석 예방교육 실시
- 학생의 인권, 자율, 책임을 중시하는 학생생활지도 실천
-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철저
- 휴무토요일 학생생활지도 철저

◇ 6월 중점추진사항

- 1. 6월 생활지도 목표 : 호국 보훈의 정신계승
- 2. 주요 추진사항

가. 순국선열 및 호국보훈 정신 계승지도

- 현충일, 6·25 계기교육 등 내실화
- 국기에 대한 예절지도 및 관련교과 연계지도
- 체험학습 시 호국보훈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장소 및 일정 운영
-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가정의 역할 홍보

나. 학생 생명 중시교육 강화

- 체계적인 학생 생명 중시교육활동을 통한 생명존중 윤리의식 고취
- 생명 경시풍조 예방 활동을 통한 자살 예방
- 담임교사의 면밀한 관찰을 통한 우울증 및 자살징후가 있는 학생의 조기 발견·치료
- 가정 및 사회단체와 연계한 자살예방활동 강화

다. 학생봉사활동의 적정 운영

- 교육과정 및 학교계획에 의한 학생봉사활동이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의 질 관리 철저
- 학생봉사활동 참여 방법에 대한 체계적 사전교육 철저(허위 확인서, 편법운영 등에 대한 사전지도 강화)

- 학교폭력 및 가출·무단결석 예방교육 지속적 실시
- 학생의 인권, 자율, 책임을 중시하는 학생생활지도 실천
-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철저
- 휴무토요일 학생생활지도 철저

◇ 7월, 8월 중점추진사항

- 1. 7월, 8월 생활지도 목표 : '곧은 마음', '바른 행동'으로 '나눔 봉사활동' 실천
- 2. 주요 추진사항

가. 여름철 기본생활습관 지도 철저

- 바른 가치관. 기본 예절교육 실시
- 지나친 노출 자제 및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 강조
- 비위생적인 식품 섭취 자제
- 바른 언어사용 지도 및 청결한 생활환경 구성

나. 나눔 봉사활동 실천

- 봉사활동의 본질적인 취지에 맞도록 지도
- 학생봉사활동 참여 방법에 대한 체계적 사전교육 철저
- '나눔 봉사활동' 터전 안내
 - http://www.bongsanara.net/ > 봉사활동터전안내 > 시군별 >
 - http://www.bongsanara.net/ > 자료실
- 지속 가능한 봉사활동 지도

다. 여름방학 학생 생활지도 강화 및 가정과의 협력 체제 유지

- 보람 있는 여름방학 생활지도 계획 수립
- 가족이 함께 하는 체험활동 계획 수립
- 부적응 학생의 가정과 연계지도 실시

- 체계적인 학생 생명 중시교육활동 지속적 실시
- '친구사랑의 날(7월 9일)' 운영
- '야영', '체험학습'등 교외 활동 시 안전지도 강화
- 학생의 인권, 자율, 책임을 중시하는 학생생활지도 실천
-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철저
- 휴무토요일 학생생활지도 철저

◇ 9월 중점추진사항

- 1. 9월 생활지도 목표 : 2학기 학습분위기 정착 및 진로상담활동 강화
- 2. 주요 추진사항
 - 가. 2학기 학생생활지도 내실화
 - 학교폭력추방의 날(도교육청 지정)행사 실시 : 9월 10일(월요일)
 - 2학기 개학에 따른 기본생활습관 지도 철저
 - 여름방학 중 부적응 · 비행학생 파악 및 지도 강화
 - 장기결석생 사유 파악 및 조치
 - 안전사고 · 교통사고 등 각종 사안관련 학생 확인 지도
 - 2학기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나. 하반기 「친구사랑의 날」 운영

- 일자 : 9월 4일 (친*구사*랑)
- 방법 : 학교별 학급회 시간 또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행사실시
- 행사내용
 - 토론회 실시 : 어려움이나 폭력으로부터 친구 보호 방안
 - 칭찬, 화해의 메시지 보내기 : 편지 쓰기, E-Mail보내기 등
 - 강연. 세미나 실시 : 친구와 진솔한 우정
 - 친구자랑발표회 : 공개발표회. 사이버발표회 등
 - 기타 : 마음의 선물교환, 친절한 친구왕 선발, 수호천사 등

다. 하반기 「효 체험의 날」운영

- 일자 : 9월 22일 (추석연휴 전)
- 방법 : 학교별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행사실시
- 행사내용
 - 토론회 실시 : 추석에 즈음하여 효 실천 방안
 - 부모님께 마음전하기 : 편지 쓰기, E-Mail보내기 등
 - 강연, 세미나 실시 : 부모에 대한 예절, 학생시절의 효도 등
 - 기타 : 추석명절 효 실천 계획 세우기 등

- 야영. 체험학습 등 교외 활동 시 안전지도 강화
- 학생의 인권, 자율, 책임을 중시하는 학생생활지도 실천
-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철저
- 휴무토요일 학생생활지도 철저

◇ 10월 중점추진사항

- 1. 10월 생활지도 목표 : 학생인권존중 및 건전 학생 문화 활동 활성화
- 2. 주요 추진사항

가. 학생인권존중 풍토 조성

- 학생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간존중 생활지도 실천
-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지도활동 개선
 - 체벌 및 가혹행위 금지
 - 두발 및 용의 · 복장지도 시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활동
- 생활지도 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

나. 가을철 내실 있는 학교 행사 추진

- 테마학습 · 수학여행의 규정준수 및 학생, 학부모의 의견 적극 수렴
- 학교축제 등 각종 학교 행사 시 교육적 효과 고려
- 학내 행사에 학생자치회 적극 활용하며, 건전 문화 활동 안내
- 안전사고 예방교육 철저

다. 학습 분위기 정착

- 진로 탐색을 위한 집단상담 및 개별상담활동 실시
- 학교단위의 특별 면학프로그램 마련
- 내실 있는 독서활동 실시

- 체계적인 학생 생명 중시교육활동 지속적 실시
- 오토바이 탑승 금지 지도 및 교통질서 준수 교육 강화
- 전문상담교사의 효율적 활용
-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철저
- 휴무토요일 학생생활지도 철저

◇ 11월 중점추진사항

- 1. 11월 생활지도 목표 : 건전한 학생문화형성 및 수능이후 면학분위기 조성
- 2. 주요 추진사항

가. 건전 학생문화 활동 장려

- 학생회 주관 행사시 교육적인 절차 및 방법 지도
- "학생독립운동기념일"행사 지도 (관련 공문서 참조)
 - 일자 : 11월 3일
 - 내용 : 계기교육 및 기념식
- 각종 건전문화 활동 학생 참여 지도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생활지도 철저

- 학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지도 특별프로그램 마련
- 학급단위의 학 · 문예 체험활동 실시
- 학생자치회 주관의 건전놀이 활동 실시

다. 학교폭력 예방 및 각종 사안 예방 철저

- 학교 밖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교외생활지도 철저
- 불량서클 조직 사전 예방 활동 철저
- 학생 생명 중시교육 지속적으로 실시
- 오토바이 탑승 금지 지도 및 교통질서 준수 교육 강화

- 4/4분기 "친구사랑의 날" (11월 11일) 홍보
- 동절기 화재, 가스, 빙상사고 등 예방교육 실시
- 학생 개인별 진로상담활동 내실화
-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철저
- 각종 행사를 통한 안전생활 계기교육 실시

◇ 12월 중점추진사항

- 1. 12월 생활지도 목표 : 연말 · 연시는 가족과 함께 건전하고 보람 있게
- 2. 주요 추진사항
 - 가. 연말 · 연시 학생생활지도 철저
 - 학생의 일탈행위 예방지도 철저
 - 청소년 출입 제한구역 및 유흥업소 출입 금지 지도 강화
 - 폭력, 음주, 흡연, 약물복용 등 비행 예방활동 강화
 - 부모님과 대화하기 실천 및 가족과 함께 문화체험 활동 적극 권장
 - 위기가정 및 도울 학생에 대한 배려와 관심 갖기 실천
 - 선 · 후배간 체육복 물려주기 운동 전개
 -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생활지도 철저
 - 각종 교육·문화·예술행사의 교육적 지도 및 안전사고 예방 지도 철저
 - 학생 결석 사전 예방 지도 교육 및 결석생 사유 파악 지도
 - 각급 학교 교육과정 정상운영 및 건전 프로그램 마련 적용 ※ 견학 및 체험 활동 시 학생 안전 지도 철저
 - 불법 아르바이트 금지 지도 철저
 - 불법 아르바이트의 유형 제시 지도 교육
 - 불법 아르바이트 학생 발견시 가정과 연계한 학생지도 및 업주 고발 등 조치
 - 각급 학교 면학분위기 조성 및 진로 정착을 위한 상담 활동 충실
 - 오토바이 · 무면허 자동차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교육 철저
 - 학교폭력, 성폭력, 집단 따돌림 등 예방 지도 및 유해환경 정비
 - 봉사활동 권장 등 학생봉사활동의 교육적 실시
 -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장 책임 하에 면학프로그램 자율 운영
 - 다. 학생의 인권·자율·책임을 중시하는 생활지도 지속 전개
 -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한 인권 및 상호존중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비교육적 두발단속 및 폭언, 욕설 금지

♡. 경기학생생활지도 Only / Best

- 1. 소중한 만남 「선생님과 함께하는 캠프」/ 119
- 2. 부모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 120
- 3. 피해학생 보호 B-CARE / 121
- 4. 선도대상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 122

05 경기학생생활지도 Only / Best

1. 소증한 만남 「선생님과 함께하는 캠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담임교사가 2박3일 동안 취사와 숙 특 징 박을 함께하며 모든 프로그램에 동참함으로 교사와 학생 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치료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기 간 📮 🔹 2007년 7월, 8월

대 상

교육내용

효 과

<mark>장 소 ■</mark> •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

■ 2007년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교부적응학생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심리상담 치료, 심리극, 공동체 훈련, 봉사 훈련, 극기 훈련, 담임교사와 신뢰성 회복 및 행동장에 치료

■ 심성계발 훈련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 회복 및 학교적응 능력을 배양

■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수용하여 바람직한 삶의 자세 내면화

- 공동체생활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함양
-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성 증대

- 118 -

2. 부모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효 과

부모와 학생이 수련기간 중 공동으로 취사와 숙박을 하는 등 모든 프로그램에 동참함으로 부모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어 행동치료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기 간 🖨 ■ 학기 중 4박5일 과정으로 상설 운영

장 소 ■ 경기도교직원가평수덕원

대 상 ➡ ■ 학교폭력으로 인해 특별교육이수 징계를 받은 학생

교육내용 ➡ 심리상담 치료, 공동체 훈련, 자성예언, 하이킹, 봉사훈련 등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스스로 인정을 받는다는 자신감을 인식함
■ 바른 인성을 함양시켜 능동적인 자세로 즐거운

■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여 대화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3. 피해학생 보호 B-CARE

특 징

학교 폭력 관련 피해 학생에게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치료하는 프로그램

- B: Bullying (학교폭력 관련 학생)
- CARE : 상담과 조력을 통해 대상 학생을 순화시키 는 교육을 의미

C: Counsel(상담, 조언)

A: Aid(조력), Attendance(봉사, 서비스)

R: Refinement(순화), Recover(치료, 회복)

E: Education(교육)

- 기 간 연중 운영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생 대 상 ■ 학교장이 요청한 학생
 -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장 소 각급 학교
- 교육내용

 노작활동, 봉사활동, 체육활동, 문화활동 종교활동, 의료치료 등
- **효** 과 전문가의 진단 및 효율적 치료 피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행동치료 효과

4. 선도대상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특 징 ➡

각 학교별로 징계를 받은 학생들에게 주말, 혹은 방학을 이용하여 공동체 훈련 및 심성수련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각종 비행의 재발 방지에 목적이 있다.

기 간 🖨

■ 주말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학교 자체계획 운영

장 소

■ 각급 학교

대 상 与

- 교내선도 규정에 의거 교내 교육이 필요한 학생
- 교내 봉사활동 이상의 선도에 해당하는 학생
- 선도위원회에서 대안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교육내용

체험활동, 체력단련, 특기교육, 인성교육, 자아성찰, 촛불의식, 부모님과 함께하기 등

효과

- 학생들의 바른 생활습관 정착
- 민주정신과 공동체의식 함양
- 정의교육과 심신단련을 통해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

Ⅵ. 학생생활지도 관련 법률·규정·지침

- 1. 교육기본법 / 124
- 2. 초·중등교육법 / 125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126
- 4. 형법 / 127
- 5. 소년원법 / 128
-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130
- 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130
- 8.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 131
- 9.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131
- 10. 여성발전기본법 / 132
- 11. 체벌 관련 법규 및 지침 / 133
- 12. 경기도학생선도위원회규칙 / 136
- 13. 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 / 139
- 14. 경기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정 / 142
- 15. 경기도각급학교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 / 145
- 16.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 148
- 17. 학생특별교육이수규정 / 149
- 18. 학생교복의 선정(변경) 구입 안내 / 150
- 19.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152
- 20.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 160
- 21.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안 /168

06 학생생활지도 관련 법률·규정·지침

1. 교육기본법

□ 제12조(학습자)

-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 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5.11.8>

□ 제13조(보호자)

- ①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 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 ②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14조(교위)

-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 ④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 서는 아니 된다.

2. 초·중등교육법

□ 제8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사립학교인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18조(학생의 징계)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19조(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 ② 제1항의 순회교사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 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⑤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제40조의2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 행정기관마다 2인 이내의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개정 2005.9.29>

4. 형법

□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심신장애자)

-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소년원법

□ 제2조(임무)

- ① 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함을 임무로 한다.
- ②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04.1.20>
 - 1.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이하 "위탁소년"이라 한다)의 수용과 분류심사
 - 2. 소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년으로서 소년원장 또는 보호관찰소장 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

□ 제4조(소년원의 분류)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와 교정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제29조의2(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 ① 소년원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11조·제18조·제30조의2·제30조의3· 제31조·제31조의2·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제63조 내지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소년원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 내지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 원부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본다.
-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사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

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1조(학적관리)

- ① 보호소년의 소년원학교에의 입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으로 본다. <개정 2004.1.20>
-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동 조 제1호의 학교를 제외한다)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 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당해 학교의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신설 2004.1.20>
-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당해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 유지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 또는 가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 제33조(통학)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의 원활한 학업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호소년을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로 통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제34조(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 ① 소년원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 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개정 2004.1.20>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제3조의 2(국가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1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 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의5(신고의무)

① 18세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강간 등 상해·치상 등의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4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아동(아동 복지법상 18세 미만)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長)이 직무를 수 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 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8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長)(그 직에 있었던 자 포함)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제18조(비밀누설금지)

① 청소년의 성매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 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 성 매매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2005.3.24 법률 7413호

	∥4조(성매	매 예병	'교육) 초·충	중·고등학교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
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미	네 예병	방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	다.

□ 제19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여성발전기본법

- 일부개정 2005.3.24 법률 7413호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14조(여성주간)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주간으로 한다.
□ 제19조(가정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 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학교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남녀평등이념을 고취하고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 제25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 호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 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 자의 상담과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11. 체벌 관련 법규 및 지침

□ 교육기본법 제12조

-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다.
-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 ③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 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 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

※ 체벌의 정의

- 교사(상급생)가 물리적 도구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학생(하급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97. 6. 2. 교육개혁위원회『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Ⅳ)』>
-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지도(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 교육부의 정의

- 직접적 체벌 : 교사가 학생에게 물리적 도구나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직접 신체적 고 통을 가하는 지도 행위
- 간접적 체벌 : 교사가 학생에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지도 행위
- 체벌이라 함은 직접적 체벌과 간접적 체벌을 모두 포함함
 - ※ 상급생에 의한 하급생 체벌은 일종의 폭력행위로서 절대 불허함

※ 경기도교육청 기본 방침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별도의 절차와 방법을 정함 ○ 교사가 자의적으로 행하는 관행적 체벌은 금지

※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원칙적으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를 의미함

○ 행위 대상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을 근거로 학교에서 제정한 학교규칙에 명시된 학생징계에 해당되는 행위

【예시】

- 교사의 훈계 내용을 이유 없이 반복하여 어길 경우
- 학습태도의 불성실, 태만으로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 또는 물품 등에 손상·손해를 끼치는 경우
- 선도규정상 징계사항(훈계나 학교 내의 봉사)이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 회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 형식적 기준 : 학교규칙으로 제정한 절차와 형식에 의함
 - 사법적 기준 :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에 입각한 사법적 판단을 전제할 때, 사회통념상 행위자 귀책사유가 없는 수준
 - 방법 선택의 정당화 기준
- 훈계 등의 방법으로 교육적 지도를 반복하여도 효과가 없을 때
- 학교규칙으로 정한 수단(도구)의 사용

※ 체벌 사안 조사 사법부 관점

교사의 체벌 행위가 사회 통념상 비난받을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교사에 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체벌 동기 체벌 경위 체벌 방법(도구)
- 체벌 정도(상해 여부) 체벌 신체 부위
- 통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 태만 여부
- •개인의 감정 개입 여부(교사의 품위 유지 여부)
- 체벌 부위 · 정도 · 방법 등에 어떤 주의를 기울였는가?
- 후유장애에 의한 일반 노동능력 상실 정도, 치료 기간 등 체벌로 인한 결과를 예견· 예측하였는가?

※ 대법원에서 학생지도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폭행·모욕】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당시의 상황, 동기, 그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통 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지도행위이어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
-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卑下)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 가피한 때에만 허용
- 지도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 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인정
- 초·중등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
 -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 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
 -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
 -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 치게 된 지도행위

12. 경기도학생선도위원회규칙

- 제정 1981.03.28 교육규칙 제0122호 개정 1991.03.26 교육규칙 제0260호
- 개정 1991.11.19 교육규칙 제0292호 개정 1992.09.17 교육규칙 제0309호
- 개정 1999.01.15 교육규칙 제0409호 개정 1999.06.01 교육규칙 제0416호
- 개정 2005.04.21 교육규칙 제500호

제1조(설치목적) 학생의 의식을 순화하여 건전한 학생생활을 선도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자문기관으로 경기도교육감 관하에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조직)

- ① 위원회는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 관할 하에 각각 경기도제1학생선도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경기도제2학생선도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로 구분 한다.
- ② 제1위원회 및 제2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본도 관내 각급학교 학부모 중 학생선도에 조예가 깊은 인사 또는 학생선도 에 관한 사계의 권위자
 - 2. 청소년육성단체의 장 또는 간부
 - 3. 청소년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한자
 - 4. 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장

제3조(임기)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무)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 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연구
- 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대책 수립을 위한 자문

- 3. 산하 학생선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 4. 학생선도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 5. 기타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 ①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사 및 의결) 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일반사항에 대한 의결은 출석위원의 다수결로 하되, 교육감에게 건의할 중요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비용변상)

-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고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 ② <삭제 91.3.26. 규260>

제9조(주관) 각 위원회의 사무는 교육국 중등교육과에서 주관한다.

제10조(지역별 및 학교단위선도위원회의 설치 · 운영)

-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에는 지역별학생선도위원회를, 학교에는 학교단위학생선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② 지역별학생선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이, 부위원장은 고등학교 학생생활지도 간사교 장이 되고, 생활지도 간사교는 지역별 고등학교 교장단 협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1. 관내 중·고교 학부모 중 학생선도에 조예가 깊은 인사
 - 2. 관내 청소년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대표 또는 청소년육성단체의 간부
 - 3. 지역교육청소속 공무원 및 관내 중·고교 교장
- ③ 학교단위학생선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위원은 학생부장을 포함한 교원 약간인으로 하되, 특정학생에 대한 선도대책을 협의할 때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담임을 비상임위원으로 참석케 한다.
- ④ 지역별 및 학교단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도 위원회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지역별 임원회의 소집)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지역별 학생선도위원회임원회의(이 하 "임원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임원회의는 제5조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관하여 협의한다.

제12조 (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1981.03.28)

- ①(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경기도학생교외생활지도위원회규칙(교육규칙 제7호 1964. 7. 20. 공포)은 폐지한다.
- ②(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1991.0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최(1991.11.19)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91. 9. 1부터 적용한다.
- 부 칙(1992.09.17) 이 규칙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0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1999.06.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일부개정) "별첨"

13.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운영자)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학교법인
- 2. 공공단체외의 법인
- 3. 사인

제4조(설립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다.

제5조(설립인가)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위치
- 4. 학칙
- 5. 학교헌장
- 6. 경비와 유지방법
- 7. 설비
- 8.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 9.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 10. 개교연월일
- 11.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1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제6조(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①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대안학교설립운 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되 과반수는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로 한다.
-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학력인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 9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의 학력인정에 대하여 교육감은 당해 학교설립 인 가 기준 범위 안에서 그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학기운영 및 학년제) ①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②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있다.

제9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①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법 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②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법 제24조 및 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연간 180일 이상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과정) ①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따로 정한다. 다만, 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학력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교과 및 영역별 수업시간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안학교의 장은 제1항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통합 교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교과용 도서) ① 대안학교의 장은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대안학교의 장은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당해 도서를 교육감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 대안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 중 학생의 진학이나 전학에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감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학력 미인정 대안교육시설의 재학생에 대해 학생정원,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학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

14. 경기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정

- 제정 2003.11.15. 경기도교육규칙 제48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 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정규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 ② "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 ③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감이 정규교육기관이나 기타 다른 법에 의해 설치된 교육 기관 또는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 ④ "위탁교육대상자"라 함은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①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②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 ③ 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 의 대상자를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자퇴·휴학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 탁교육 신청 가능)
 - 2. 학교 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 시까지 유보)
 - 3.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 ②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기간) 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기간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 ① 위탁교육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의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대안학급(교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사관리)

- ① 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간에 대해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대상자가 소 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 시 학년·학기 수료자격을 인정하고, 원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학 사관리는 소속 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③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위탁학생 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 지원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 ① 교육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보조·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 2. 보조·지원 또는 징수된 경비가 당초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 권고
- ② 교육감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관계법령이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고시)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위탁교과), 운영주체, 교육시설 등 관련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 관은 이 규칙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5. 경기도각급학교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

- 경기도규칙 447호(2001.02.13 공포)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가 체험·수련활동 및 소풍·수학여행 등(이하 "현장교육"이라 한다)의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의 학생안전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침)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을 학교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실 시하되,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정 운영 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3조(계획수립)

- ① 현장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전에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에 부응하는 교육활동이 되도록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 현장교육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1. 가급적 주제별·학급별 등 소규모 단위 교육활동이 되도록 한다.
 - 2. 다수의 차량이 행렬을 지어 운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단독 또는 소수 차량 단위로 운행하도록 한다.
 - 3. 가능한 한 행락철 등 특정 시기나 일부 관광지·명승지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다
 - 4. 교육장소 및 시설, 차량 이동,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이 포함되도록 한다.
- ④ 현장교육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에서는 가능한 한 그에 준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⑤ 수익자 부담의 현장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불참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불참자가 소수일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사전답사)

①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장소 및 시설 등을 수차 이용하면서 참가 학생 및 교원들의 평가결과가 좋은 경우에는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사전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장교육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로 하여금 현장교육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과 관련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에 필요한 장소·시설 및 차량 등을 계약할 경우에는 장소·시설 및 차량 등의 법적인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와 계약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처리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 ①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시간 등 적절한 시간에 시설 및 차량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시 유관기관에 안전호송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솔자 등)

- ①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 학생수 및 차량 수 등에 따라 적정한 인원의 인솔책임자와 인솔 및 지도교사를 지정하고, 각자의 임무를 배정하여야 한다.
- ② 인솔책임자는 현장교육 기간 중 사전 계획에 따라 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인솔 및 지도교 사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③ 인솔 및 지도교사는 소정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인솔 담당학생의 동태를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학생 생활지도에 힘써야 한다.
- ④ 인솔 및 지도교사는 신체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 ⑤ 인솔 및 지도교사는 차량 운행 시 운전자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탑승하여 과속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탑승 학생이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 및 시설안전)

① 학교의 장은 차량 및 시설 사용 전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 구의 비치여부 및 위험요소의 유무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피계약자로 하 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인솔책임자는 현장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유사시 필요한 구급약품 등을 준비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생현장교육차량' 표지를 제작하여 이를 각 차량마다 부착하여야 한다.
- ③ 인솔 및 지도교사는 사용전에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수칙) 인솔 및 지도교사는 현장교육에 임하는 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심신 수련에 최선을 다한다.
- 2. 인솔 및 지도교사나 프로그램 진행자의 안전지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 3. 교육활동 중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
- 4. 차량 유행시에는 우전자의 안전 유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5. 각종 돌발사고 발생시에는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지시를 받는다.
- 6.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인솔 및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고처리)

- ① 인솔책임자와 인솔 및 지도교사는 돌발적인 재난 및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당해 학교의 장과 119구급대 및 인근 경찰관서 등에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사고 수습 대책을 강구하고, 지체없이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에게 안전사고 발생 상황과 수습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평가)

- ①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 종료 후에 참여교사 및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평 가회·보고서 작성 등을 하도록 하여 교육적 효과 증대를 도모한다.
- ② 평가회의 결과는 차기 현장교육계획 수립시에 개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이외의 방법에 의한 현장교육) 차량이외의 도보·기차·선박·비행기 및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현장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 규칙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6.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제5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수 있다."

※ 교육과정의 근거

- 1)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요구
- 2) 교육 목표
 -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경험 제공
 -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 육성
- 3) 재량활동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기본 방향
 - 개인의 다양성을 계발시키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지적 가치를 생산할 창의적인 인간 을 육성하는 교육 체제로의 전환 요청
- 4) 특별활동의 목표
 -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신장하여 자신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

17. 학생 특별교육 이수 규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제16729호, 2000.02.28)
- 경기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제5조 1항 제2호)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① 법 제18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 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경기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대상자를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2. 학교 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퇴학 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 시까지 유보)
-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과정 이수
-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 치료 학교의 교육 이수(이 경우 교육감은 자체 운영이 어려운 특수한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외부 교육 기 관과의 위탁 교육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 기관, 또는 의료 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상담 자원 봉사자,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 : 1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18. 학생 교복의 선정(변경)구입 안내

- 중등 81140-3726(2002.12.20) : 학생 교복선정(변경)·구입에 관한 안내

가, 학생 교복의 선정

- 교복을 선정할 때는「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내용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함
- 「교복선정위원회」
 - 학생·학부모·교사·동문 등으로 대표 구성
 - 민주적인 방법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충분한 협의
 - 착용 여부를 포함한 모양과 색깔 등을 선정
 - 모양과 색깔은 단정하고 학생다운 복장으로 선정
 - 사회적 조류에 편승한 학생들의 요구를 이유로 모양의 잦은 변경 지양
 - 민원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
- 「학교운영위원회」
 -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협의한 「교복선정 등」에 관하여 심의
- 「학교장」이 최종 결정
 - 「교복선정위원회」의 선정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로 학교장이 최종 결정
- 결정 사항 공고 및 통지
 - 학교장은 교복 선정(변경)내용, 착용대상, 시기 등에 대하여 학부모·학생에게 가정통 신문으로 통지하고 교복 착용 개시일 이전(충분한 기간 확보)에 학교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
- 견본 제작 및 전시·보관
 - 최종 결정 후에는 견본을 제작하여 일정 기간 전시
 - 견본제작 방법
 - 방법 1 : 컴퓨터그래픽 등으로 교복 모형(색상 포함)을 작성하여 전시 및 홍보
 - 방법 2 : 학생, 학부모, 교복제작 업체에 교복 전시 예정 공고 후 선정된 교복 의 견본을 제작하여 일정기간 전시(특정 업체 지정은 절대 금지)
 - 전시되었던 교복(또는 선정된 교복 모양) 1벌은 학교 보관 권장

나. 학생 교복의 구입

○ 교복은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교복을 자율적으로 공동구입(입찰 등)에 참여하여 구입할 수 있음

○ 공동구입(입찰 등)

- 실수요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교복을 구입코자 하는 경우
 - 교복을 공동으로 구입할 시 실수요자인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교복 공동 구입을 위한 자율적인 기구를 구성할 수 있음.
 -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관내 교복 업체에 공동구입(입찰 등)에 관한 안내 및 참여 요청
 -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
 -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부조리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적법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공동구입(입찰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소지 사전 제거
- 각 지역별로 다양하게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교복 선정과 구입 으로 인한 물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람
-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

○ 금지 사항

- 교복 업주가 일부 학부모에게 자기 업체가 선정되도록 청탁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다른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는 경우
- 일부 학부모가 교복 업주에게 정보를 주어 업체 선정에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 일부 학부모가 독단적으로 교복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 일부 교원이 특정 업체를 소개하거나, 수의계약 형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 유의 사항

- 교복의 구입과는 관련 없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미 구성된 각급 학교 학부모 단체 (어머니회, 학생선도협의회, 어머니교실 등)나 교직원은 본연의 목적이 아닌 교복 구매에 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 교복의 선정에 관하여 심의할 수는 있으나, 실수요자인 학생이 구매하는 과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다만 실수요자인 학부모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무방함
- 어떠한 경우에도 학부모나 교직원은 교복의 선정·구입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로부터 의 금품 수수 및 알선 등으로 인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홍보
- 교복 공동 구입과 관련한 학교 시설물 사용 등 편의제공 여부는 학교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 과정을 거친 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
- 공동 구매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음을 통지
- 이외의 상세한 사항은 학교별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

다. 행정사항

- 교복 교환·물려주기 실천 적극 권장
 - 학부모의 교복 공동구매 적극 지원
 - 교복 착용 시기 조정 적극 검토 권장
 - '교복 물려주기' 운동 적극 전개
- 여학생 치마, 바지 선택 착용 조치

(관련 근거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1조)

19.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2005.3.24 법률 7421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3. "가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 4. "피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 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본 법은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학교폭력 발생시 형법이나 남녀차별금지및구제 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법을 준용하여야 함
- 폭력을 제외한 학생의 제반 비행(非行)에 대한 징계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또 는 교칙에 따라야 함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 3. 학교폭력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조·지원
 - 4.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관련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5.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해 설

○ 교육인적자원부는 5년 주기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수정·보완할 수 있음

제7조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 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8조 (기획위원회의 구성)

- ① 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3.24>
 - 1. 청소년보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 2.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로서 학교폭력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 4.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5.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
- ⑥ 그 밖에 기획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교육감의 임무)

- ①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 및 관련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관할구역안의 학교폭력이 관할구역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교육감은 제14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1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⑧ 교육감은 기획위원회에 관할구역안의 학교폭력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관할구역 밖의 학교폭력관련 사항 중 관할구역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도 또한 같다.
- ⑨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 3. 피해학생의 보호
 -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5.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자치위원회의 구성·소집)

-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1.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 2.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 4.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
 - 5. 청소년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 ④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2조 (전문상담교사 및 책임교사의 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사 중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이하 "책임교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 국·공립학교의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책임교사에게 적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사립학교의 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책임교사에게 적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학교폭력예방교육)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피해학생의 보호)

-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 심리상담 및 조언
- 2. 일시보호
- 3. 치료를 위한 요양
- 4. 학급교체
- 5. 전학권고
-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해 설

-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는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원회에서 심의할 때만이 가능하며, 그 기간의 하한선과 상한선은 없음(영 제12조 참조)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5항에 의한 가정학습은 고등학생에 대한 퇴학조치 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출석정지와는 다름
- ※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과정에서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의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와는 다름(여기서는 학생 또는 학부모 중의 한쪽에게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도 가능함)

-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 재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교장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가해학생에 대한 재처분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또는 교칙에 따라 가능함

제15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 3. 학급교체
 - 4. 전학
 - 5. 학교에서의 봉사
 - 6. 사회봉사
 -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8. 출석정지
 - 9. 퇴학처분
-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분쟁조정)

-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시·도교육청 관할구역안의 소속학교가 다른 학생 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 ⑦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소속 학교의 학생 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 (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 치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 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해 설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사실 또는 예비음모를 알게 된 교직원 및 학생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함.

제20조 (벌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7119호,2004.1.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소년기본법) <제7421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⑥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제1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0.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령

- 제정 2004.7.30 대통령령 제1849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폭력 행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과 및 집단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 해 설

- 폭행 : 학생 간 발생하는 폭행으로 해당 사안을 교원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간 분쟁을 교육적 차원에서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소 구체성을 띄어야 하기에 형법상 협의의 개념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해석
 - ※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협의의 개념임(형법 제125조)
 - ※ 본 법령에서 말하는 학생이라 함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함
 - 따라서 대학생, 자퇴생, 퇴학생, 취학의무 유예자, 취학의무 면제자, 정원 외 학적관리 대 상자 등은 학생에서 제외됨
- 협박 :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도 상대방이 현실로 공 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경우
 - ※ 형법상의 협의의 개념임
- 공갈 :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상해 :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입히는 것
- 감금 :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그 성립 요건임
- 약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현재의 상태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
- 유인 :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거나 감언이설로 상대방을 현혹 시켜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내에 옮기는 행위

- 추행 :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 재물손괴: 민법상 재물은 유체물(동산, 부동산) 또는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말하며, 형법상으로는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하고, 손괴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함 ※ 손괴: 재물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이용 가능성을 침해하는 것
- 모욕 :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 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명예훼손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판,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는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 괴롭힘(따돌림): 특정인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심리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제3조 (기획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기획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기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수 있다.
-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보궐위원의 임기) 기획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해 설

-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 관련업무 담당과 과장으로 함
- 모든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 및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할 수 있음
- 기획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하고자 할 때는 서면이 아닌 전화, 이메일 등으로도 통보할 수 있음
-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문단체, 전문가, 교육청·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중 교육부장관이 기획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기획위원회에 회부함
- 회의에서 의결 등을 할 때는 위원장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 포함됨
-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관련 문서 보존기간

(공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에 의거)

- 운영규정(규칙) 제·개정 문서 보존연한 : 20년
- 위원 위촉·지명·임명: 5년
- 회의안건 및 회의록 : 3년
- 안건접수 및 처리부 : 5년
- 심의의결문서 원본: 10년
- 위원회 운영 일반: 3년

제5조 (전담부서의 구성 등)

-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 1. 장학관 1인
 - 2.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담당하는 장학사 1인 이상
 - 3. 중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담당하는 장학사 1인 이상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의 명칭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당해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이하'시·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 해 설

- 전담부서의 명칭은 시·도교육청 내의 업무분장, 담당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정하되,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부서임이 드러나도록 작명(作名)하여 출입문에 현찰(懸札) 또는 현판(懸板)해야 함
 - 전담부서의 명칭 예 : 학교폭력예방·근절전담반(팀), 학교폭력추방센터, 학교폭력전담 반, 학교폭력대책·근절반 등
 - ※ 지역교육청은 해당 없음
 - ※ 기존의 본청 또는 지역교육청 주관 관계 기관·단체간의 학교폭력관련 협의체(이름은 교육청별로 다를 수 있음)는 별도로 유지·운영해야 함

- 부득이한 경우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경우 전담부서 소속의 초등담당자 또는 중등담당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음
 - 예 : 초등학교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초등교육과,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담당 장학 사가 중등교육과에 근무하는 경우 등
-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근절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전문단체나 전문가를 발굴하여 학교에 안내하는 등의 노력을 함
- 청소년상담원, 지역사회복지관, 지역교육청의 전문상담교사, 자원봉사단체, 관내 청소년관련시 민단체·전문가와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함

제6조 (자치위원회의 운영 등)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되,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③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제척되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 2. 위원이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해 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분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설치함
 - 위원은 법 제11조에 명기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는 것이므로 구성 가능한자 중에서 위촉하면 됨
 - ※ 위원회 구성시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가 1명도 없는 경우에는 대신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2명 위촉하여 최소 5명을 만드는 것도 가능함
 - 법 제11조 제3항 제1호의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란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나, 모든 교사는 생활지도 경력자로 볼 수 있음
 - 법 제11조 제3항 제4호의 공무원은 해당학교 담당경찰관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중·고등학교는 해당지역 경찰서 형사관리계 또는 형사행정지원반, 초등학교는 생활안전과와 협의하여 경찰관을 위촉
 - 법 제11조 제3항 제5호의 "청소년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란 학교장이 판단할 사항이나, 해당 지역에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지소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전문상담원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보호관찰관 또는 심리전문가나 상담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함이 바람직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심의사항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국한되어 있으나, 이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자치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하며, 그 소집 요건은 법 제11 조 제4항, 즉 2가지 경우에 한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최소한 년 1회 이상은 해야 함
- 영 제6조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라고 할 때의 재적위원과 출석위원 속에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 라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됨
 - ※ 기존의 학교폭력추방위원회는 폐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문서 보존기간
 - 위원위촉·지명·임명: 5년 안건접수 및 처리부: 5년
 - 위원회 운영 일반 : 3년회의록 : 10년
 - ※ 회의록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관련 심의뿐 아니라 분쟁조정 관련한 심의내용을 기록한 것임

제10조 (상담실 설치)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실은 다음 각호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2. 피상담자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 해 설

- 법 제12조 및 영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수당은 교육감이나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줄 수 있는 것이 아님
 - 공무원의 모든 수당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지급할 수 있음
 - 따라서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해당 교사에 대한 선택 가산점 부여(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4항 제9호), 학교에서는 해당 교사의 보직부여 등 방안 검토 필요
 -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책임교사는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구축에 관한 사항을 수행함
-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규정한 조항으로 학교장은 학교폭력책임교사 선임 외에 상담실을 설치하며, 시·도교육감은 전 문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함.

제11조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 등)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1. 학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교육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 2.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 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 3.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의 방법에 의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해 설

-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데, 1회당 시간, 강사 선정, 강사 료, 강의 방식 등은 학교 실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 시·도교육감은 법 제9조제5항에 의거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및 실시 여부에 대해 확인·점검해야함.
- 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함.

제12조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기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정지기간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정지 된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 설

- 가해 학생에 대한 처리
 -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또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관련 심의는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함
 - ※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9가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면, 학교 장은 해당 학생에 대해 반드시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폭력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경우, 학교장은 해당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13조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당사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 2.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 3. 신청의 사유

제14조 (분쟁조정의 개시)

-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15조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2. 분쟁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 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 1.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 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분쟁조정의 결과처리)

-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의 경우에는 피해·가해학생소속 학교 자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 가. 분쟁의 경위
 -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 3. 조정의 결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해 설

- 법 제16조(분쟁조정)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전학 또는 징계 등을 원하거나 신고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음
- 교육감이 학교폭력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단위의 학교폭력분쟁조정위 원회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본 법령에 근거한 법적 기구는 아님(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분 쟁조정위원회 구성은 시·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선택)
- 분쟁조정 관련 통보는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가급적 문서로 하여야 함
 - 자치위원회·교육감이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 당사자에게의 분쟁조정 사실 통보
 - 자치위원회·교육감이 분쟁조정을 하다가 분쟁조정을 거부, 중지 또는 종료할 때 당사자 에게의 해당 사유 통보
 - 분쟁 당사자의 분쟁 조정의 연기 신청
 - ※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작성한 합의서 로 통보함
 - ※ 분쟁조정 관련서류(중지·종료 통보서 및 합의서) 보존 연한: 10년
 - ※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할 때는 문서로 함

21.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예방사업과 학교안전사고 보상보험(이하 "학교안 전보험"이라 한다)사업을 실시하여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을 포함한 학교생활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신속·적정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④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1.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거하여 학교 내·외에 서 행하는 수업, 특별활동, 과외활동, 수학여행, 수련활동, 체육대회 등의 활동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행사에의 참가활동
- 3.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체육대회, 예술대회 등 각종 대회에의 참가활동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 ⑤ "학교생활중"이라 함은 제4항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을 말하다.
- ⑥ "재해"라 함은 풍·수해, 설해, 화재, 폭발, 붕괴 및 이와 유사한 사고를 말한다.
- ⑦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재해를 제외한 학교생활 중에 의도적이 아닌 외부의 작용이나 우연하고 급격하게 발생하는 사태로 인하여 손해를 야기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만, 학교의 관리 하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 제6조(학교안전관리에 대한 책무)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유지와 학교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시·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재난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 재난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안전점검기관에 위탁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학교안전구역의 설정)**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안전구역을 설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학교 안전교육담당교사의 지정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안전교육 활동을 주로 담당하기 위하여 학교 안전교육담당교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나 지역인사 등을 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강사의 지원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9조(지원금) 지원금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법원공탁금, 화해에 의한 합의금, 협력비용 등을 말하며, 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형사처벌의 제한 등) ①이 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아니면 교직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교직원의 고의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Ⅵ. 부 록

- 1. 학생사안 처리 / 172
- 2. 생활지도 정기 보고 / 174
- 3. 봉사활동 관련 질의사항 / 179
- 4. 학생생활규정 재·개정시 참고사항 / 182
- 5. 생활지도 관련 용어 해설 / 184
- 6. 생활지도 우수 사례 / 187
- 7. ONE STOP 지원센터 안내 / 208
- 8. 생활지도 관련 홈페이지 안내 / 210

1. 학생 사안 처리

가. 절 차

1 사안 발생 ▼

2 사건의 내용과 경위 파악

3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교사, 학부모, 경찰서 등)

4 사건 내용 보고(교육청에 전언 보고)

5 사안 보고서 제출(교육청에 보고)

6 사건 종결(학교생활규정 적용)

8 추수 지도

나. 보고해야 할 사항

- 가) 사망 사건
- 나) 집단으로 발생한 사안
- 다) 사법 기관에 구속된 사안
- 라)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을 때
- 마)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 바) 보편적이지 않고 특이한 사안 발생시
- 사) 지역교육청이나 고등학교에서 판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다. 보고 방법

- 가) 발생 즉시 전언 보고(☎ 2490-210~214)
- 나) 담당 장학사의 의견에 따라 표지 공문 없이 직인 찍어 FAX(☎ 249-0394) 로 보고

라. 보고 시 유의사항

- 가) 사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
- 나)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경우 전언보고 후 '학생사안보고서' 양식에 의거 보고

학생 사안 보고서

보고자 : 교육장 • 교장 성명 : (직인) ()교육청・학교)교육청・학교 작성자 : 직 () 성명 : (직인) 사고발생일시 2007. . . 시 분 2007. . . 시 분 보고 일시 사 안 명 학교 전화 발생 장소 가해자 학교 학념반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생활태도 주소(전화번호) 관 및 련 당사자 자 피해자 (6하원칙 기재) 1. 언제 : 2. 어디서: 사안 내용 3. 누가 : 4. 무엇을 : 경 위 5. 어떻게 : 6. 왜 : - 글씨 크기는 11호 이상으로 하고 면이 모자라면 늘려서 기록함 학 교 사안 발생 후 조치한 사항을 순서대로 기록 조치 사항 교육청 사안 발생 후 교육청에서 조치한 사항을 순서대로 기록 직 성명 사안발생 당일 근무상황 교장 참고사항 교감 담임 (징계, 재판 관계, 부상자 치료, 보상금, 조의금, 징계 상황, 日 고 사망자 장례, 관련자 근황 등 기록)

2. 생활지도 정기 보고

- 학교폭력 실태 설문 조사, 비행 통계 등과 관련한 양식, 제출기한 등은 본 자료에 있는 내용, 방법,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양식 및 제출기한이 변경될 경우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임

가. 생활지도 관련 각종 통계 보고

1) 조사 및 보고기간

구 분	전 반 기	후 반 기
조사 기간	2007. 1. 1 ~ 6. 30	2007. 7. 1 ~ 12. 31
보고 기한	2007. 6. 30한	2007. 12. 15한

- 후반기 통계는 전반기와 합산하여 제출
- 2) 정기보고 사항 (뒷면 서식)

분 야 별	지정서식	보고 사항				
생활지도 관련 분야	엑셀파일로 추후 보냄	생활지도 관련 각종 통계(9개 항목)				

- 3) 보고 방법 : 통합전자문서시스템 이용(추후 공문 시행)
 - 초 · 중학교 : 지역교육청으로 보고
 - 고등학교 : 생활지도간사교로 보고
 - 지역교육청 및 생활지도간사교에서는 각 학교의 자료를 합산하여 제출

나. 생활지도 관련 각종 통계 서식 (보고양식)

1) 학교폭력 유형별 가해학생 현황

학교		н). л)	가	가해학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조치 학생수									
급별	유형	발생 건수	건수	남	여	계	1.서면 사과	2.접촉 금지	3.학급 교체	4.전학 조치	5.교내 봉사	6.사회 봉사	7.특별 교육	8.출석 정지	9.퇴학 처분
초	신체폭행														
	협박														
중	금품갈취														
3	집단괴롭힘														
•	기타														
고	계														

⁻ 가해 학생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조치된 학생 수를 의미함.

2)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조치한 학생수

	피해학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조치 학생수								
학교급별	남	여	계	1.심리상 담 및 조언	2.일시보호	3.치료를 위한 요양	4.학급교체	5.전학권고	6.기타조치				
초・중・고													

3) 폭력서클 지도 현황

학교급별	파악된 서클 수	가	금학생	수	학교 자체적으로 해체한 수	경찰 등과 협조하여 해체한 수	미해체수
	^八 己 丁	남	여	계	에세인 구	에세인 구	
초・중・ 고							

4)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 학생·교사·학부모 (단위: 명)

청그			اد اد	교육 시간						강사		방법	
학교 급별	대상	학교수	학교수	1	2	3	4	5 이상	자체	외부	강의	시청 각	혼용
	학생												
초・중・고	교사												
	학부모												

5)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현황

학교 급별	전체 학교수	청소년 상담센터	지역사회 복지관	상담지원 봉사센터	전문의료 기관	기타	계
초・중・고							

6) 지역별 상담 net-work 활동 실적

구분	청소년 ² 분 상담센터				상담자원 봉사센터			의료 관	기타	
급별	횟수	인원(명)	횟수	인원(명)	횟수	인원(명)	횟수	인원(명)	횟수	인원(명)
초·중·고										

7) 단위학교의 상담실시 현황

학교급별	거케하고스	상담실	상담 건수					
악꼬급별 	전체학교수	설치 학교수	학교폭력	성폭력	진로상담	기타	비고	
초・중・고								

8) 학생비행 조치 현황(징계현황)

윈그그버	미레스된	ㅂ]	행학생	수		j	조치사항		
학교급별	비행유형	남	여	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퇴학처분	계
	성폭행								
	절도								
	가출								
	약물오남용								
초・중・ 고	음주								
	흡연								
	유해업소 /매체물								
	기타								
	계								

9) 중도탈락생 및 복교생 현황

가) 중도탈락 및 복교생 현황

	2 2		중 5	티 생		복 교 생				
구분 전체 학교		200	6년	6년 2007년		7년 200		200	07년	
	,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중 학 교										
고등학교										
계										
전년대비 비교증감 (인원수)										

나) 2007년 중도탈락 사유별 현황

	구 분		가출,비행 장기결석	학급및학교 생활부적응	가정사정	검정고시	건강(질병)	유학,이민	기타	계
		남								
중	학 교	여								
		계								
		남								
	일반	여								
고등		계								
		남								
학교	실업	여								
		계								
	소	계								
	총 7									
	2006년									
비교	증감(인	[원수)								

다) 2007년도 복교 추진현황

구분			적응교육이수자수	복교학생수
중 학 교 명 계		남		
		여		
		계		
고등학교	일반계	남		
		여		
		계		
	실업계	남		
		여		
		계		
	소	계		
· 총 계				
2006년				
비교증감(인원수)				

【설문지 내용】

설 지

1 -	4.	학교폭력	발생	현황
-----	----	------	----	----

1.	학교폭력이	전년도에	비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① 늘었다 ② 비슷하다 ③ 줄었다
- 2.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신체적 폭력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3. 폭력을 행한 사람은?
 - ① 같은 학교 동급생 ② 같은 학교 선배 ③ 다른 학교 학생 ④ 기타(성인 등)
- 4. 폭력을 당한 장소는?
 - ① 교내 ② 놀이터나 공원 ③ 학원 또는 학원주변 ④ 오락실이나 PC방 ⑤ 기타

5 - 7. 금품피해 여부

- 5.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일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6.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사람은?

 - ① 같은 학교 동급생 ② 같은 학교 선배
 - ③ 다른 학교 학생 ④ 기타(성인 등)
- 7.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장소는?
 - ① 교내 ② 등교 또는 하교길 ③ 학원 또는 학원주변 ④ 오락실이나 PC방
 - ⑤ 놀이터나 공원 ⑥ 기타

8 - 10. 집단괴롭힘 피해 여부

- 8. 집단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 (한 두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3회 이상 계속 당한 경우)
 - ① 있다 ② 없다
- 9. 집단으로 괴롭힌 사람들은?
 - ① 같은 학교 동급생 ② 같은 학교 선배
 - ③ 다른 학교 학생 ④ 기타(성인 등)
- 10. 학교 내에 폭행이나 협박 또는 돈을 빼앗는 조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른다

- 178 -

- 있다면 폭력조직의 이름은? (

)

3. 봉사활동 관련 질의사항

가. 학생들은 1년 간 봉사활동을 몇 시간 해야 하나요?

- 초등학교는 연간 10시간 내외를 권장합니다.
- 중·고등학교는 3년 간 60시간, 매년 20시간 내외를 권장합니다.
- 교육과정 내에서의 봉사활동은 최대 10시간(특별활동 중 7시간, 행사활동일수 중 3 시간)까지 가능하고, 나머지 10시간은 개인봉사활동을 실시하되 협동심과 공동체의식을 배우고 바른 인성함양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인보다는 그룹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봉사활동 시간은 대학의 전공 영역에 따라서 봉사활동평가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대학 입시에 반영할 수 있으니, 개인별 진학 희망에 적합하게 지도해야 합니다.

나, 봉사활동 실적 인정이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봉사활동 실적 인정(봉사활동 장소 및 기관, 봉사활동 시간) 여부는 지침에 의거 판단하되,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실적 인정 여부를 판정합니다.
- 교육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은 반드시 협의록에 기록 하여 결재하고, 비치하여야 합니다.

다. 봄 방학(2월)이나 종업식ㆍ졸업식 이후의 봉사활동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다음 학년의 봉사활동이 아니라, 당해 학년의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여 추후에 기록 하여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끝난 후에 실시한 봉사활동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는 다음 학년도 초에 담임교사가 확인서를 수합하여 학교생활 기록부 정 정 대장에 기록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담임교사가 해당 학년에 입력하여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1, 2학년은 종업식 이후 봉사활동이 인정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학교 행사는 봉사활동으로 몇 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학교 내 행사와 관련하여 일부 학생에게 청소나 뒷정리를 시킨 후 봉사활동 인정이 가능합니다.(단,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 행사일 경우)

- 학교 행사(소풍,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가 있는 날은 행사 종료 후 일정시간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일의 양에 따라 학생 수를 감안하여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 진행 중인 수업을 결시하고 행사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었을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일반 수업시간 중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은 수업과 봉사활동시간을 동시에 인정하는 불합리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업 중인데도 부득이 시간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행사(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양로원의 경로잔치 행사 등 제한된 행사에 참여)에 참여하는 경우 등은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후 결재를 득한 후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수업에 참여해야 할 학생이 행사장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돕는 경우, 학교나 사회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일부학생이 수업시간 중에 행사에 관련되어 동원되는 경 우 등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바. 학교에서의 일상 활동을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실 청소 및 환경미화, 특별실 청소, 선도부 활동, 방송반 활동 등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단, 학교장이 특별히 봉사활동 계획을 세워 학교 내·외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 학교 내의 봉사활동 인정 내용과 허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학교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청소, 식사보조 등)이 아닌 행사나 특별한 내용일 경우 학교장의 학년초 결재와 활동기록부 비치로 인정가능하며, 봉사활동 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 아. 중학교 학생이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중 일부를 불참하여,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권장시간을 채운다면 고입 내신성적 산출 시 만점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학생 개인의 봉사활동 실적은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실적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자. 계발활동(클럽활동) 부서에서의 활동도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모든 계발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발활동반이 봉사활동 계획을 세워 계발활동반 활동과 별도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 선도교육프로그램 이수 과정에서 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징계 이수 기간을 출석으로는 인정하나, 학생봉사활동 실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카. 봉사활동 관련 후원금인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후원금은 횟수만 기록하여야 하며, 시간으로 환산해서는 안됩니다.

타. 사설기관에서의 봉사활동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활동이 교육적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학생을 단순 노동 대상으로 활용하거나,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봉사 활동 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파. 봉사활동 확인서는 실무 담당자의 실인으로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 득이한 경우 실무담당자의 실인도 인정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담임교사에 의해 학교에서 『봉사활동 추진위원장』의 실인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하. 봉사활동 시간에서 분 단위의 기록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분 단위는 절사하여 시간 단위로 기록합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는 학기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4.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시 참고사항

가. 학생 징계 시 퇴학 관련 조항 최소화

- 무단결석 관련 퇴학조치 지양
- 품행불량 등으로 퇴학조치 지양
- 시설물 파손 관련 퇴학조치 지양
- 흡연이나 비행 횟수에 따른 퇴학조치 지양
- 사법기관에서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학조치 금지
- 경미한 징계 ○회 이상 받았다는 이유로 퇴학조치 지양
 - 퇴학은 교육적 지도가 불가피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나. 선도위원회 징계조항 중 학교폭력관련 내용 모두 삭제

• 폭력에 따른 학생의 징계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함

다. 학생회 관련 선도부, 규율부 명칭 변경

• 선도부, 규율부 등의 명칭을 예절부, 질서실천부, 바른생활부 등으로 변경

라. 불합리한 학생회 임원의 자격 제한 제ㆍ개정

- 성적관련 자격 제한 삭제
 - 예시 : 학생회장은 1학기 성적이 3.0이상인자
- 출결관련 자격 제한 삭제
 - 예시 : 전학년도 무단결석이 3일 이내인 학생
- 기타 벌점이나 징계에 관한 지나친 규제 사항 삭제 또는 완화
 - 예시 :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벌점이 10 이하인자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

마. 용의 및 복장 관련 현실성 없는 규정 삭제 또는 수정

- 교사에 의한 소지품 검열 삭제 또는 수정
- 귀 뚫는 행위 금지 조항 삭제 또는 수정 (이미 귀를 뚫은 학생들이 많음)
- 가방, 스타킹, 운동화, 양말 등의 무조건적인 색상 통일 지양
 - 예시 : 반드시 검정색으로 한다 등을 청색, 흑색 등의 계통으로 한다로

바. 두발 관련 조항 수정

- 남학생의 경우
 - 앞, 뒤, 옆머리를 구체적으로 cm까지 제시한 경우
 - 스포츠형, 신사형, 상고머리 등 머리형을 지정한 경우
 - 기계나 클리퍼 등으로 깍으라는 구절이 있는 경우
- 여학생의 경우
 - 단발, 커트, 긴머리 등에서 단발, 커트만 규정한 경우
 - 단발 귀밑 3cm 등 짧게 규정한 경우
 - 두발 길이를 단위로 제시한 경우(예 : 3cm 이하)

사. 기타

- 학교생활규정은 반드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불만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개정
- 징계 조항에 인터넷 등 사이버 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 명문화
- 생활규정의 명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통일
- 학교생활규정이 인권침해 등 논란이나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실 정에 따라 개정 요망
- 학생선도위원회 위원장은 교장으로 수정

5. 생활지도 관련 용어 해설

1. 청소년 연령 (현행 법규상)

- 민법 : 20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9~24세 미만청소년보호법: 19세 미만

• 아동복지법 : 18세 미만(요보호 대상)

• 근로기준법 : 근로 소년을 18세 미만으로 규정

• 소년법 : 20세 미만을 소년범(범죄 소년)으로 규정

• 형사미성년자 : 형법 제9조에 의거 아직 14세가 되지 아니하여 형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 촉법소년 : 형벌법령을 위반한 12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형법으로 처벌 받지 않지 만 보호처분은 가능함

관 련 법 령	연 령	개 념
청소년기본법 제3조	9~24세	청소년(육성개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보호위원회)	19세 미만	청소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동시행령 제5조 (행정자치부)	19세 미만	시행령 개정('99.6.9): 19세 조정 -유흥주점, 증기탕, 무도학원, 무도장 출입 금지 -개별법(영화법, 음비법)의 연령규정 삭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보건복지부)	19세 미만	담배판매 금지
공중위생법 제12조	19세 미만	숙박 등 금지
근로기준법 제63조	18세 미만	도덕·보건상 유해업소 출입금지
	18세 미만	연소자(연소자유해공연물 관람 금지)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8조3호	18세 미만	연소자 (게임업소,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출입금지)
영화진흥법 제24조	18세 미만	연소자(연소자 관람등급)
미성년자보호법	_	폐지(청소년보호법 개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2조, 25조	19세 미만	미성년자(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보건복지부)	19세 미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출입금지 -주류제공 금지

2. 법률 용어

• **감호** : 보호하고 감독함으로 보호감호의 준말

■ 공소 : 검사가 형사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

■ 기소(起訴):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함

■ **기소유예** :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

검사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

- 기소중지 :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나 공범의 미검거,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피의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행해지는 것으로 수사중지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 보호관찰: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필요한 때는 원호를 함으로써 범죄인을 개선·갱생시키기 위한 처분이다. 즉 보호관찰은 ① 피보호 감호자가 가출소한 때, 또는 병과된 형의 집행중 가석방된 후 그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실효됨이 없이 잔여 형기를 경과한 때, ② 피치료 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하여 친족에게 위탁된 때에 개시된다(사회보호법 제10조 1항).
- 보호처분 :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가 소년에게 선고할 수 있는 처분, 또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대상자에 대해 행하는 처분.

현행법상의 보호처분은 소년법과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소년법상 인정되는 보호처분으로는 ①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 ② 소년보호단체·사원(寺院) 또는 교회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 ③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④ 감화원에 송치하는 것, ⑤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보호관찰에 붙이는 것 등이 있다(제30조).

한편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에는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의 3가지가 있다(제3조). 보호감호는 피보호감호자를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는 처분으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과할 수 있고 피보호감호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을 과할 수 있다(제7조 1항).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자, 마약 및 알코올 중독자 등의 피치료 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이들에게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 처분이다(제9조). 한편 보호관찰은 가출소한 피보호감호자와 피치료감호자를 보호시설 외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안처분이다.

■ 성희롱 :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적인 불쾌감과 피해를 주는 행위.

• 성추행: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모든 형태의 성적인 관심을 지칭한다. 예컨대, 상대 방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치근대는 행위나 성적인 농담 또는 음담 패설을 하는 행위, 성적인 야유를 하거나 빈정거리는 행위, 성적인 몸짓을 해보이거나, 노골적으로 상대방을 빤히 쳐다보는 행위, 성적으로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행위, 허락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등

• 아동학대 : 아동이 부모 혹은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로부터 받는 학대 행위

(1)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 (2) 부모가 고의나 태만으로 밥을 주지 않는 영양학적 학대, (3) 근친 상간 등 성폭행을 가하는 성적 학대, (4) 심리적으로 학대하는 감정적 학대, (5) 치료 가능한 질환을 방치하는 의료적 학대 등으로 분류한다

6. 생활지도 우수 사례

사례1 학교내 대안학급 프로그램 운영

- 00고등학교 -

I. 운영 목적

- 1. 기본생활 습관 형성 교육을 통하여 기본이 바로 선 학생상을 정립한다.
- 2. 정의교육(情意敎育) 및 심신단련을 통하여 부적응 학생들의 적응력을 기른다.
- 3. 안정적인 심성 훈련을 통하여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을 확립한다.

Ⅱ. 지도 방침

- 1. 대안학급은 매월 마지막 주에 4일간(월~목) 실시한다.
- 2. 입소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가. 학교선도규정 제○조 ○항에 의거 3회 이상 훈계 대상이 된 자.
 - 나. 교내 흡연규정에 의거 1회 이상 적발이 된자.(1, 2, 3차 대상자 모두 포함)
 - 다. 기타 학교생활에 잘 적응치 못하거나 부모나 담임교사가 의뢰한 자.
- 3. 벌점제와 연계하여 운영하며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한다.

Ⅲ. 프로그램 운영 계획

1. 프로그램의 개요

순서	주요 프로그램	활동 내용 및 의의	비고
1	체력단련 프로그램	교사와 학생이 스포츠 활동을 하며 함께 몸을 풀 제력단련 프로그램 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친밀감을 형성 하여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산을 등반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함께 이겨내며면 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내면에 있는 감정을 공감 하는 상호 이해의 장을 마련한다.		
3	자아정체감 형성 (생활규칙 정하기)	자아정체감이 결여된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활규칙을 정하게 하고 미래의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 새로운 결의의 시간을 갖게 한다.	
4	특성화 과목 (요가, 스포츠 종목 등)	끈기와 인내심을 길러주고 신체적으로도 온 몸의 근육을 발달하게 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보다 활기 차고 생동감 있는 생활이 되도록 한다.	특기 교사 활용
5	인성교육(음악학습 등)	학생들의 닫힌 마음을 여는 시간으로 음악을 통하여 내 자신이 가치 있는 한 존재이고,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6	자아성찰 프로그램 (일기 및 편지쓰기)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시간에 일기나 편지를 쓰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활을 뒤돌아보고 반성하게 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해준다.	
7	촛불의식 및 학부모와 간담회	촛불의식과 학부모님과의 간담회로 운영되며, 프로그램 진행동안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활동한 내용을 비디오로 보여주어 반성의 시간이 되게 한다.	반성의 시간

2. 대안학급 프로그램 운영 일정표

일차	시간	주제	프로그램	비고
	16:30~17:20	체력단련	체력단련(운동장)	
	18:00~18:50	체험활동	등산교실(모락산, 암벽 등반)	2,3교시-
1일차	19:00~19:50	/개 급 된 O		모락산 등반 단, 우천시
1 교기	20:00 ~ 20:50	자아정체감형성	 나의 생활규칙 정하기 앞으로의 나의 모습 설계 	실내활동으로 대체운영
	21:00~21:50	자아성찰	하루의 반성과 생활일기쓰기	, , , 2 0
	16:30~17:20	체력단련	체력단련(운동장)	
	18:00~18:50	특성화 과목	도자기 공예 또는 요가	2,3교시
2일차	19:00~19:50	극성와 파측	도사기 중에 또는 표가 	○○실습실
2 2 7	20:00 ~ 20:50	인성교육	특강 - '미래사회의 변화'	4교시
	21:00~21:50	자아성찰	하루의 반성과 마음다지기	초청강의
	16:30~17:20	체력단련	체력단련(운동장)	
	18:00~18:50	트셔치 코모	나의 색깔 찾기	
3일차	19:00~19:50	특성화 과목	- 침염을 통한 자기표현	2,3교시
0 2/1	20:00 ~ 20:50	적응활동	음악학습(합창)	○○실습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21:00~21:50	자아성찰	부모님께 편지쓰기	
	16:30~17:20	체력단련	체력단련(운동장)	2,3교시 캠프
	18:00~18:50	특성화 과목	스포츠 클라이밍	^= (○○동위치)
4일차	19:00~19:50	7 0 4 7 7	-그= 코디키 ö	4,5교시
	20:00~20:50	A) 2] = 0	촛불의식	학부모와의
	21:00~21:50	인성교육	간담회(학부모, 교사, 학생)	간담회시 다과회 준비

Ⅳ. 운영의 결과

- 1. 대안학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의 믿음과 유대가 강화되었으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됨.
- 2. 학교 내 부적응 학생들의 부적응 행동이 교정되었으며, 생활지도 방법에 대한 전문적, 과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생활지도 교육력이 제고됨.
- 3.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활동과정에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여서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임.

<참고자료> 벌점제 운영 세부 기준표

	점수	세 부 사 항
바른	5점	1) 희생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학생(친절) 2) 만원 이상 고가의 분실물 및 금품을 습득하여 이를 신고한 학생(친절) 3)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친절) 4) 자발적으로 차례를 잘 지키고 좌측통행을 잘하는 학생(질서) 5) 횡단보도 바르게 건너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한 학생(질서) 6) 학교 시설물 파손 상태 발견 시 신고 또는 자발적으로 수리한 학생(청결) 7) 웃어른께 존댓말, 바른말 잘 사용한 학생(예절) 8) 금연에 성공하는 학생
학 생 상	3점	1) 학급활동이나 특별활동에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한 학생(친절) 2) 만원 이하 중·저가의 분실물 및 금품을 습득하여 신고한 학생(친절) 3) 웃음 띤 얼굴로 인사를 예의바르게 잘 하는 학생(친절) 4) 학급 내 자기 책걸상과 주변을 항상 깨끗이 한 학생(청결) 5) 주번활동을 열심히 하는 학생(청결) 6) 자발적으로 휴지 줍기, 청소를 잘하는 학생(청결) 7) 수업태도가 좋은 학생(질서) 8) 선생님을 도와드리는 학생(예절) 9) 학급회의, 학생회 대의원회의에서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 10) 불온문서를 수거 및 신고한 학생 11) 기타 기본이 바로선 행동이라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학생
	10점	1)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과 반발행위를 한 학생(예절) 2) 출입 금지구역을 담당교사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질서) 3) 수업 중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학생(예절) 4) 은어 및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학생(예절) 5) 무단결석을 한 학생 - 하루에 10점씩 부여 6) 음주행위 및 오토바이탑승
벌점	5점	1) 건물이나 시설물에 낙서를 한 행위(질서) 2) 월담 및 지정된 출입구 외로 진출입하는 학생(질서) 3) 규정에 현격히 어긋나는 머리염색이나 화장 및 액세서리를 부착한 학생(청결) 4) 방뇨, 방변 행위(청결) 5) 타인의 물건을 강제 또는 임의로 점유하는 행위 6) 타인 희롱행위(꼬리표 붙이기, 용모 비난 등) 7) 음란물 소지 8) 껌, 침, 오물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청결) 8)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폭행 행위 9) 무단 결과 및 조퇴, 무단 지각 10) 담배와 라이터 소지행위(흡연사실과 상관없이 소지하고 다니는 경우) 10) 도박행위
	3점	1) 주번 임무 태만 2) 명찰을 달지 않은 학생 3) 규정에 어긋난 두발과 복장위반을 한 학생 4) 도로에서 무단횡단(질서) 5) 실내 소란(질서) 6)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학생(예절)

사례2 따돌림 예방을 위한 심성프로그램 운영

- 00중학교 -

I. 목표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여 긴장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생활을 즐겁게 시작하게 함으로써, 친구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심성을 길러 따돌림 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Ⅱ. 방침 및 유의점

담임교사와의 첫 만남이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첫 만남부터 담임교사와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학생 개인적인 의견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거나 낙인찍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개인의 의견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으며, 다르다는 것은 개성이고 특성이지 판단의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특히 상담 주제가 집단 따돌림 예방이므로, 우호적인 친구관계를 맺는 데에 촛점을 두며, '싫어, 하지마!'라고 표현했을 때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자세를 강조한다.

Ⅲ. 만남 프로그램

가. 대상 학생 : 각 학급별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나. 돕는 이 : 학급 담임

다. 장 소: 상담실

라. 시 간: 자치활동 시간

마. 프로그램의 실제

번호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준비물
1	별칭짓기	직업 별칭짓기	별칭 선물하기	
2	새롭게 시작해 봐요	새롭게 시작해 봐요	새롭게 시작해 봐요	유인물2
3	'싫어, 하지 마!'	'싫어, 하지 마!'	'싫어, 하지 마!'	필기구
4	신뢰의 원	신뢰의 원	신뢰의 원	크레파스
5	반성(부모님께 편지)	반성(선생님께 편지)	반성(자신에게 편지)	

Ⅳ. 기대 효과

새로운 각오와 밝은 기대감으로 즐겁고 살맛나는 학교생활이 될 것이라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됨으로써,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활동자료 1.]

따돌림 예방 '현명한 거절방법' 프로그램 운영안

프로그	램명	'싫어! 하지마!'				
목표		· 요구를 통해 강요하는 또래집단에서의 거절 방법을 익힌다. 주장훈련을 통해 부당한 요청에 거절할 권리가 있음을 안다.				
준비물		자료 2, 3 • 필기도구				
지도상		활에서 자연스럽게 거절하는 방법을 익히게 한다.				
유의점	○ 난폭한	· 친구의 경우에는 분노를 자극하지 않으며 말하는 것도 필요함을 안다				
활동 과정		활 동 내 용				
도입	들어주 히 거 요? 우	"마음이 약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다 보면 부당한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어야 하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기분은 어떠하셨나요? 또, 과감 절하였을 때는 기분이 좋았나요? 그랬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어떠했나 우리는 거절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지요? 오 연습을 통하여 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 개	• 학생들을 두 명씩 짝지어 앉아, 한 편이 먼저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괴롭히고, 다른 한 편은 단호하게 '싫어!', '하지 마!' 등으로 거절한다.					
	- '화장실에 가서 담배 피우자. 너 피울 줄 모르지? 바보.' 부당한 - '너 숙제 했니? 나좀 보여줘.' 요구 예 - '백원만 빌려 줘. 없어? 치사해. - '너, 점심 안 먹지? 그거 내가 먹자.'					
	난폭 행동 - 볼펜 끝으로 찌르기, 툭툭 치기, 목 조르기, 팔 비틀기, 침 뱉기 등					
	· 간단히· 간단이· 느디록한· 활동기· 활동기· 한 중· 한동기· 한 중	는 바꾸어 해 본다. 라게 느낌을 교환한다. 발표 후 [활동자료 2]를 나누어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한 내용을 순서없이 자유롭게 발표한다. 이는 거절 못하는 이유로는 어떤 경우가 많은지 구성원들의 발표 내용을 한 다음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라료를 기록하고 발표하면서, 다른 친구의 발표를 듣고 느낀 점이나, 새롭 견한 것 등에 대하여 발표한다. 라지 못했을 때의 아픔도 있지만, 무심히 행한 자신의 행동이 남을 힘들게 지도 모른다고 느끼는 사람은 지금의 감정의 변화나 심정을 이야기한다. 자료 3]를 나누어 받고, 그 내용을 읽고 거절하기 연습을 한다. 라고 기록한 내용을 순서없이 자유롭게 발표한다. 라료를 기록하고 발표하면서, 다른 친구의 발표를 듣고 느낀 점이나, 새롭 견한 것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정리 및 평가	면하게 • 상대빙	· 요구를 들어 줄 때의 불편했던 마음, 거절하지 못하는 나의 현실을 직 기 되어 변화의 의지를 가질 수 있다. 하이 기분이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나도 자신감을 얻 인관계도 원만하게 풀어 나갈 수 있다.				

[활동자료 2.]

거절의 의미이해 및 나의 거절 패턴 인식하기

친구들이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 내키지 않는 일을 부탁하거나 또는 장난삼아 귀찮게 굴거나 해서 자신을 따돌리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친구관계가 원만히 유지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잘못하여 정말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1	친구관계에서	거적이	픽 Q 하	때는?

• 친구의 표정이 나의 자존심을 침해할 때

■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을 때의 심정은?

- 자신의 감정을 배려해 주지 않을 때
- 비도덕적인 요구를 할 때
- •나의 시간을 침해하거나 학용품, 소지품 등을 마음대로 할 때

2. 나의 경우는?

• 친구에게 부당한 일을 부탁 받았던 때에 심정은?

3.	친구관계에서 적절한 거절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의 경우에	V표 한디	
	▪마음에 없는데 청을 억지로 들어주면 스트레스가 쌓인다	()
	• 내 사정에 관계없이 친구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나의 생활이 무질서해진다	()
	•나 자신을 억누르고 친구의 요구를 들어줄 때 심리적, 신체적으로 힘겨워진다.	()
4.	내가 '거절하기'를 못하는 요인은?		
	■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 인정받고 싶어서()	
	▪ 거절 방법을 몰라서()	
	▪ 친구들이 욕하거나 따돌리는 것이 무서워서()	
	■ 거절해 본 적이 없어서()	

5. 거절 방식

- 회피적 거절 ⇒ 상대방의 말을 못들은 척 피하고 묵살하여 거절한다.
- 공격적 거절 ⇒ 상대방이 모욕감을 갖게 큰소리와 욕을 하며 거절한다.

■ 습관적으로.....(

- 일방적 거절 ⇒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밝힌다.
- 핑계대는 거절 ⇒ 어쩔 수 없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핑계를 댄다.
- 배려하는 거절 ⇒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나의 사정을 말하며 거절한다.
- ※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활동자료 3]에서는 거절하기 연습을 실천해 봅시다.

[활동자료 3.]

현명하게 거절하는 행동 연습하기

♥ 나의 행동에서 고쳐야 할 점	
♥ 바람직한 거절하기	•
☆ 배려하는 거절 ⇒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나의 느낌, 사정을 말하며 거절한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시선-노려보거나 곁눈질 않기
	·다른 곳을 보거나 딴 짓을 하지 않기
·듣는 자세	·아무렇지도 않은 듯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세
	·겁을 먹지 않은 진지한 태도
	·말을 중간에 자르지 않기
. 모스킈	·크고 또렷하게 말하기
・목소리	· 우물거리지 않기
· 상대방의 말 이해하기	가 떡볶이 먹으러 가자구?
- 상대의 말을 따라	나 내 도시작은 네가 먹겠다구?
하거나 요약하기	다. 지금 내 옆구리른 찌르고 있는 거니?
	가,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마음 알아주기	나 ·내 도시락이 맛있어 보이는 모양이지?
	다. 너, 지금 장난치고 싶구나?
・나 전달법으로 거절	가 싫어, 나는 배 고프지 않아.
	나 안돼, 이건 내 젊싰도시락이야. 내가 먹어야 돼.
하며 내 의견 전하기	다.이 손 치위! 난 지금 장난칠 기분이 아냐.
. 계소 ᄎ그대 때	·강한 눈빛과 거부의 몸짓으로 단호하게 나 전달법으로 내 의견
ㆍ계속 추근댈 때	을 반복한다.

♥ 거절하기 연습

	(아래 상황을 가상하여 거절하는 말을 생각해 두자.)	
1.	. 너, 돈 있지? 오백 원만 빌려 줘! ()
2.	. 나하고 오락실 가자. ()
3.	. 그 운동화 나랑 바꿔 신자. ()
4.	. 내 필통 네가 잃어 버렸지? 그 대신 돈으로 줘! ()
5.	. (머리를 툭툭 치며) 너 사오정이지? ()

☞ 효과적으로 거절하는 말과 행동을 생각해내서 글로 써놓고 평소에 연습을 해 둔다.

- 00고등학교 -

1. 친구사랑의 날 운영

가, 목 적

친구의 장점 및 선행 등을 찾아서 칭찬하여 주는 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 간에 배려할 줄 아는 인간애적 관계 형성을 도모하는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있다.

나. 기본 방침

- 친구 사랑의 날(칭찬의 날)을 지정하여 실시한다.
- ㅇ 홈페이지를 이용한 칭찬코너를 개설한다.
- ㅇ 친구사랑 우체국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편지를 배달한다.
- ㅇ 학생자치회를 통하여 친구사랑운동이 전개되도록 한다.

다. 세부 추진 계획

1) 친구 사랑의 날 지정 운영

가) 친구 사랑의 날

- 지정 실시일(년4회) : 4월 2일, 7월 9일, 9월 4일, 11월11일
- 매주 수요일 : 친구사랑의 요일 (친구사랑 우체국 편지배달)

나) 주요행사

- 칭찬 화해 메시지 보내기(편지, E-mail, 문자 메시지 등)
- •친구 사랑하기 캠페인 전개
- 칭찬 릴레이 칭찬보드 작성하기 (학급당 B4 1매에 릴레이 작성)

2) 학교 홈페이지 칭찬코너 개설

- 가)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를 개설 운영
- 나) 게시판을 통한 칭찬릴레이 활성화 유도
- 다) 우수 칭찬 활동학생 학교장 표창
- 라) 칭찬받는 학생의 칭찬내용을 심사하여 모범상 등 시상



[홈페이지 칭찬릴레이 게시판]

3) 친구사랑 우체국 개설 운영

가) 목 적 : 친구사랑 및 칭찬, 화해의 편지를 전달하는 창구를 확보하여

실천위주의 생활지도를 실현하기 위함

나) 설치장소 : 상담실 이용 (친구사랑우체국 표찰부착)

다) 운 영: 학생자치회

라) 편지배달 : 매주 화요일까지 모아진 편

지를 학생자치회를 통하여 수

요일 1교시 전에 배달한다.

마) 편지의 분류 : 편지 작성시 봉투에 머리

말을 표시하도록 한다.

(칭찬, 화해, 우정, 기타 등)



[친구사랑 우체국 개설]

배달번호	배달일	발신자	수신자	머리말	비고
06 - 0000	3. 30	이도령	성춘향	우정	

- 바) '친구사랑 편지왕' 선발하여 학교장 표창
 - 편지수발 기록부를 작성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하여 우수학생을 친구 사랑 편지왕으로 선정한다.
 - 전반기 '친구사랑 편지왕' 학교장 표창실시 : 3명
- 사) 기대효과 : 친구사랑 편지 수발을 통하여 학생들 상호간의 "칭찬 붐"을 조성토록 하고 상담실과 담임교사는 교우관계 파악을 통하여 보다 다가서는 학생상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2. 온라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신고센터 운영

- 가. 폭력예방 S/W 홈페이지 탑재 운영
- 나. 홈페이지 학교폭력 신고/상담 센터 설치운영



[학교폭력예방 S/W 탑재]



[온라인 학교폭력신고센터/상담센터]

사례4 '다정다감♡끈끈 행복한 학급만들기' 학교폭력 예방활동

- 00초등학교 -

1. 프로그램 명

학령기 아동을 위한 학교 폭력예방 프로그램 '다정다감 ♡ 끈끈 행복한 학급 만들기'

2. 목적

'다정다감♡끈끈 행복한 학급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비판의식을 높이고 또래와의 건강한 상호작용 속에서 원활한 교우관계를 도 모하도록 하고자 한다.

3. 방침

- 1) 학교 폭력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다.
- 2)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발견하여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낮은 자아 효능감을 보다 향상시킨다.
- 3) 분노와 같은 폭발적인 감정을 유능하게 다스릴 수 있는 대처기술을 획득한다.
- 4)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불쾌하게 만들지 않고도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을 배운다.
- 5) 또래집단과의 유쾌한 경험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계성을 증진시켜 학급 구성원의 응집력을 높인다.

4. 추진 개요

구 분	내 용			
대 상	OO초등학교 6학년 O개반 (프로그램 단위: 1개 학급)			
기 간 00년 0월 0일~0월 0일				
단 위 1개반 총 6회기 진행(주 1회)				
소요시간	매회 60분			
장 소	OO초등학교 지정된 교실			
주 진 행	OOO 사회복지사			
보조진행	OO대 사회복지학과 봉사단 사랑지기(OOO 외 4인)			
실 인 원	총 000명(남학생 00명, 여학생 00명)			

5.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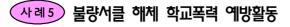
목표	회기	프로그램명	내 용
목표1	1	학교폭력 바로알기 OX퀴즈대회	학교폭력 OX퀴즈, 학교폭력예방 영상 자료 시청
	나를 알고 너를 알면 2 백전백승! 바로 내가! Superstar		신체에 따른 자신의 장점 발견하기, 강점을 활용한 절친한 친구되기 비법 탐구하기
목표2	_ = = = = = = = = = = = = = = = = = = =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명상의 글 감상, 고민해결 돕기 5단계 과정, 브레인스토밍 토의 방법을 활용한 친구 고민 해결 돕기 전략 세우기
목표3	4	감정!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다양한 생각과 사고를 존중하기 위한 명상의 글 감상, 엘리 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 이론을 응용한 합리적 사고 훈련
그표0	5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문제해결 방식 win-Win Game 전략"	집단의 협동심을 강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이익을 최대로 게 임 Win-Win Game 전략을 활용한 문제해결 방식 배우기
목표4	6	대화하는 친구되기- 공감각적 대화의 이해	만화복사기,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의 경청 방식에 대한 역할극, 공감각적 대화의 이해 강의, 연습 문제 풀이
	7	싸움의 기술? 대화의 기술!	의사소통의 수준에 대한 이해, 반영적 대화, 나 메시지 활 용법에 대한 이해, 연습문제 풀이와 역할극
목표5	1~7	lce-Breaking 프로그램 모둠별 진행 프로그램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입 프로그램, 모둠의 협동을 강조하는 다양한 활동, 상호간의 배려심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활동

6. 운영상의 유의점

- 1. 매회기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 2. 모둠별 지도자를 세우고 매회기 집단 활동 일지를 작성하여, 집단 역동 및 변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3. 매주 E-mail을 통해 각반 담임선생님께 활동보고서를 보내 학교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7. 평가

	목 표 1 목 표 2		목 표 3	목 표 4	목 표 5		
성과 평가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자아효능감 향상	감정조절을 통한 갈등의 유연한 대처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술 습득	또래관계 증진 학급 응집력 강화		
평가 지표	적극적 참여도 과업 수행 정도			적극적 참여도 과업 수행 정도	대인관계변화도		
성공 기준	응답자의 80%만족일 경우 긍정적인 평가 응답자의 80%참여일 경우 긍정적인 평가 세부 목표 달성율 80%이상일 경우 긍정적인 평가						
측정 도구 및	자기효능감 척도 공격성 척도 - 사전사후검사 사전사후검사 - 사전 사후검사 분석						
평가 방법	· 목표대비 달성율 · 프로그램 활동지 분석 토론 및 Comments 분석 · 회차별 진행보고서 분석 · 만족도 조사지 분석						



- 00중학교 -

학교명	00중학교	담당교원	000
우수사례 분야	해체과정 및 해체 후 적	응 프로그램 적	용
	내 용		

I. 목 적

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하여 의지력, 자제력, 자율성 등 자기 통제력을 기르고,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

Ⅱ. 방 취

- 1. 학교가 주체가 되어 불량서클 해체 및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앞장선다.
- 2.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해체 의지를 가지도록 지도한다.
- 3. 결속력 있는 불량서클을 해체하기 위한 가정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 4.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또래 상담, 동아리활동)
- 5. 학부모, 지역사회, 사회단체, 유관기관과의 연계지도를 강화한다.

Ⅲ. 세부 추진 사항

- 1. 학교 불량서클의 실태 조사 확인 : 2006.10.06 ~ 2006.10.13
- 가. 담임교사의 교우관계 파악 및 학부모와의 상담 실시
- 나. 학생자치회를 통한 설문조사 실시
- 다. 학교상담자원봉사자와의 상담활동 실시(매주 월, 화, 목)
- 라. 진로상담부에서 운영하는 "우리들의 소리함"을 통한 쪽지 상담 실시
- 마. 위 활동을 실시하여 1학년 7명, 2학년 6명이 친구형 불량서클로 파악됨

2. 불량서클 해체 : 2006.10.14 ~ 2006.10.20)

- 가. 친구형 불량서클로 파악되어 가입 경위 조사 실시
- 나. 상담을 통해 친구형 불량서클이 다른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피해를 주는지 파악
- 다. 교내 순찰 및 학생 상담자원 봉사자와 매주 3일 정기적인 상담 실시
- 라.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로 친구형 불량서클의 탈퇴를 조건으로 학교 그룹사운드 에 회위 가입
- 마. 친한 친구되기, 대화하는 친구되기, 도움주는 친구되기를 위한 또래상담 실시

- 3. 해체 후 적응 프로그램 적용 사례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특활 프로그램)
 - 가. 그룹사운드 가입 활동을 통한 친구형 불량서클와의 연계 단절지도
 - 친구형 불량서클에서 활동했던 학생이 학교 그룹사운드에 가입 적극 활동
 - 그룹사운드 이름짓기, 활동방법 결정 등에 자발적인 참여 유도
 - 그룹사운드 팀 내 별도 연주팀으로 구성 활동
 - 나. 또래 상담을 통한 친구형 불량서클과의 단절 : 친한, 대화하는, 도움주는 친구되기
 - 나의 친구관계는? 좋은 친구란? 좋은 친구가 되려면? 등 의미를 생각하게 하여 동료들로부터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또래 상담자의 역할을 연습하여 자신들이 처한 입장을 바꿔 생각하게 하여 행동함으로써 진정한 우정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 대화하는 기본자세, 대화하는 방법 등을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며,
 -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또래 상담자의 역할 연습, 문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게 하고,
 - 다. 가정과의 연계 지도 강화를 통한 친구형 불량서클과의 지속적인 단절 지도
 - 학부모와의 상담활동 강화를 통한 가정의 교육 기능 강화 (학부모와의 상담 3회 정도 실시)
 - 학생 상담 자원 봉사자 참여 적극 유도 -교내 순찰 및 학부모 상담자원봉사 자와의 적극적인 활동(상담활동 4회)

Ⅳ. 기대 효과

- 1.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는데 기여했음.
- 2. 학교주변 유해환경이 정화되어 비행과 탈선이 예방되었음.
- 3. 학생들의 안전지대를 수시로 순회하여 청소년 비행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즐거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었음.
- 4.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들의 학교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높아졌음.
- 5. 각종 학생비행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및 홍보 활동이 강화되었음.
- 6.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면 투명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됨.

사례6 학부모 상주실 운영

-00중학교-

I. 목 표

- 1. 깨끗한 학교화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정착시킨다.
- 2. 학생 개개인의 잠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3. 학생 교육활동의 보조적 기능을 통하여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Ⅱ. 방 침

- 1.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 지도로 깨끗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드는데 힘쓴다.
- 2. 급식지도, 교내 순찰활동 등 상담, 선도 위주의 생활지도로 교육공동체 간에 신뢰를 형성하고 비행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신장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 3. 학부모 보람교사를 통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도로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개 성과 잠재 능력을 계발시켜 자아실현의 기틀을 마련한다.

Ⅲ. 세부 추진활동내용

- 1. 학생상담자원봉사 활동
 - 가. 활동기간 : 2006. 03. 19~2006. 10. 29
 - 나. 대 상 : 본교 1학년 211명
 - 다. 운영시간 : 매주 토요일 1교시(자치,적응활동시간), 학급별 3시간 운영
 - 라. 활동내용 : 본교 학부모 보람교사를 대상으로 학생 상담자원봉사 교육을 이수케 하여 학생상담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본교 학생들의 심성을 수련한다.
- 2. 생활지도활동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발달 도모.
 - 가. 학생 생활 제 규정 개정
 - 1) 학생 생활 제 규정 개정 추진위원회 협의회 구성
 - 추진위원 9명(학생대표 3명, 학부모 보람교사 3명, 교사대표 3명)
 - 2) 협의내용 : 학생생활 제 규정 개정안 토의(5회)
 - 교복 및 체육복 규정 개정, 두발·복장규정 개정, 학생회 대의원회 규정 개정.
 - 나. 교내 순찰 활동 (학부모 보람교사 48명, 16개조 편성 운영)
 - 1) 활동기간 : 연중 매일 10:00~16:00
 - 2) 활동시간 : 오전(10:00~13:20), 오후(12:20~16:00)
 - 3) 활동내용: 보람교사 3명을 본관건물 1명, 후관 건물 1명, 체육관·사격장· 급식실 주변 1명을 배정하여 순찰하며, 시설점검이나 안전사고 예방관리, 기타 위험요소 사항을 발견하고 조치함.

- 다. 도서대출 업무보조 활동
 - 1) 도서 대출시간: 3교시 후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13:20까지)
 - 2) 대출요령; 도서실에 대출요령 비치함
- 라. 급식지도 업무보조 활동

점심시간(12:20~13:20) 급식실 질서유지 세수상태 점검

마. 응급화자 후송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해당 담임 및 학부모 에 통보 후 인수인계

- 3. 학부모와 교사의 연합교외 생활지도
 - 가. 활동기간 : 연중(학기별 연합교외생활지도 계획에 의거)
 - 나. 생활지도시간: 16:30~18:30
 - 다. 생활지도지역: ○○읍내 전지역 취약지역 순찰
 - 라. 생활지도 내용: 학생 등·하교길 지도 읍내 전지역 순회생활지도
- 4. 정기고사 시험감독 보조
 - 가. 활동기간: 매학기 정기고사(중간, 기말고사)
 - 나. 대 상: 학부모 보람교사
 - 다. 활동내용: 정기고사 감독보조(연간 4회)
 - 라. 교육적 효과: 공정한 정기고사 관리와 고사업무 보조에 따른 학부모와 교사 간 이해증진
- 5.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도
 - 가. 활동기간 : 연 중
 - 나. 동아리활동 대상 : 본교 재학생
 - 다. 지도교사: 특기적성을 가진 학부모 보람교사(5명)
 - 라. 활동부서 : 소리사랑반, 탁구반, 트래킹 반, 종이접기반,

동아리명	활동목적,방향	활동인원	활동일시	보람교사	비고
종이공예반	종이접기, 한지부조	9 명	매월 1,3주 토요일	이)))	
탁 구 반	기능습득, 체력단련	23 명	매월 1,3주 토요일	송○○	
소리사랑반	아름다운 소리내기	15 명	매월 1,3주 토요일	채○○	
트래킹반	견문습득 및 견문넓히기	5 명	매월 1,3주 토요일	박○○	

Ⅳ. 교육 효과

- 1. 특기적성을 가진 학부모 보람교사 활동을 통하여 학생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잠 재 능력을 계발시켜 자아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게 함.
- 2. 학부모 보람교사 활동으로 교과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며 실천위주의 배움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조화로운 인격의 소유자로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함.

I. 목적

기본생활 습관이 불량하거나 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사고와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습관을 형성하게 하고, 나아가 KOCE 덕목의 생활화를 바탕 으로 명랑하고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있다.

Ⅱ. 방침

- 1. 체벌 등 물리적 교육활동이 아닌 능동적, 자발적인 행동수정 활동
- 2. 교내외 봉사활동과 명상, 참선, 노작, 정신훈화 등으로 성찰 기회 부여
- 3.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는 교육(매월 1. 3주 토요일)
- 4.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Ⅲ. 지도계획

1. 대상자 선정

- 가. 교내 · 외 생활지도시 지적된 학생(비행학생)
- 나. 자신의 인성 함양을 위하여 자발적 참여자
- 다. 학생 생활규정 위반자
- 라. 학급담임 및 교과담임의 인성교육 요구시

2. 지도교사 임명

- 가. 학년 초 학교 생활지도 계획시 수립
- 나. 심성교육 내용에 따른 교사 배정
- 다. 학생 생활지도부 교사의 기본적 관리
- 라.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배정 : 정신교육 지도, 학생 파악

3. 인성지도 내용

노작교육 (1교시)	1) 주변정화 활동 2) 교내 공원화 참여 3) 교내 캠퍼스 순례
정신교육 (2교시)	1) 참선교육(단학, 참선, 복식호흡) 2) 정신교육(교장, 교감, 부장교사, 동문, 기타) 3) 미래 탐구 교육 (장래희망 정리 및 로드 맵 논술)

4. 지도방법

연번	절차	활동 내용			
1	대상학생 선정	o 교내 · 외 생활지도 일지 수합 대상자 선정o 대상자에 대한 담임교사 의견 참조o 명단 작성 및 교육계획 결재 (3일전)			
2	대상학생 통보	o 학년부 통보(담임교사 포함) o 메신저 활용 교육계획 홍보			
3	장소·시간 알림	o 게시판에 게시 o 메신저 활용 담임교사에 전달			
4	대상학생 확인	o 명단 확인 o 출결여부 파악			
5	활동내용 안내	o 교시별 교육내용 주지 o 활동방법, 주의사항 전달			
6	불참자 처리	 불참 확인 불참자 처리절차 고지 (1차, 2차 불참 처리 규정)			
7	인성교육 진행	 선정된 지도교사의 교육 각종 자료 준비물 사전 점검 부적응 행동의 개선에 중점을 둔 교육 실시			
8	종료	자 선정시 처리규정 알림귀가 지도			

Ⅳ. 기대효과

- 1. 토요일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시간적·정신적 부담감을 갖게 되어 각종 규정을 준수하려는 경향이 나타남.
- 2. 노작교육을 통하여 애교심이 고양되고 호연지기를 기르게 됨.
- 3. 참선 또는 정신교육 훈화나 각자 인생의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자신을 되돌아보고 학교생활에 적극적 성향을 갖게 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됨.
- 4. 노작 및 정신훈화를 통한 인성교육 중심의 생활지도로 자율적인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게 됨.
- 5. 경직된 생활지도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의 참여로 생동감 있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에게는 꿈을 주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됨.

사례8 상담동아리 '누리아늘' 상담활동

- 00고등학교 -

I. 상담 동아리 활동 목적

상담 동아리 '누리아늘'은 선정된 학생들에게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시도해 보았던 종이접기를 지도하며 단원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또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종이접기 지도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활동을 통하여 부적응 행동을 되돌아 보게 하고, 남을 돕는 봉사 체험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여 상담 동아리 활동을 극대화하는데 최종 목적이 있다.

Ⅱ. 상담 동아리 주(主) 활동 내용

1. 종이접기 자격증 취득 교육

주 2회 이상 방과 후에 종이접기 교육을 실시하며 이 시간을 통해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이나 고민 등의 상담활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또한, 종이접기 자격증 취득 과정은 단원들의 고등학교나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며, 개개인의 삶의 목표설정을 구체화 시킨다.

- 2. 봉사 체험을 통한 상담 동아리 활동의 승화
 - ① 신망애, 재활원, 양로원, 특수학급 등의 방문
 - ② 불우 어린이들의 학습 도우미 역할
 - ③ 작품 공모전이나 전시회 참가

Ⅲ. 상담 동아리 활동 추진방법

- 1. 활동목적의 설정방법
 - ① 단원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활동 방법과 내용을 정한다.
 - ② 학교나 지역 단체와의 상호 협조를 통해 목적을 구체화시킨다.
- 2.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담 활용기법
 - ① 학교에서 빈번히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 대다수는 일시적 지도나 상담으로 그들의 태도 변화에 큰 기대를 할 수 있다.
 - ②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이접기 배우기'라는 정기적 만남의 시간을 통해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상담을 할 수 있다.
 - ③ 지속적 상담 과정과 함께 봉사활동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생 스스로의 정체성 자각과 나눔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획득하도록 한다.

Ⅳ. 시기별 세부추진계획

시기	주요 내용	세부 추진 활동	비고
3월 - 4월	상담 동아리 단원가입, 봉사할 단체 선정	신망애 재활원에 의뢰하여 대상자나 단체를 선정	
3월 - 8월	단원의 개별 상담 및 종이접기 교육	선도대상 학생이 단원인 만큼 서로 의 마음 나누기로 단원간의 관계를 결속시키고, 종이접기 자격증 코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여 추후 봉사 활동에 무리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함	
4월 - 11월	봉사단체 방문 및 봉사활동 개시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환우들의 손맛사지와 간단한 종이접기로 손 근육 강화하기 -같은 것 반복 접기로 기억력 훈련 -간단한 작품을 환성하여 성취감 느끼게 하기 -완성작품을 이용하여 환경란 꾸미기	
4월 - 11월	토요휴업일에 학교 등교하는 아동들 종이접기 교육 도우미	-한 가지씩 작은 작품 만들어 성취감 느끼게 하기 -교과과정 '종이접기 작품 만들기' 수 업시간에 활용하게 하기	
5월 카네이션꽃 만들기		동아리 단원들이 어버이날 꽃을 직접 만들어 노인요양원 등에 계신 어르신 꽃 달아드리기	
7월 - 12월	체험학습	경기도 내 체험 학습장을 방문하여 단원들이 여러 분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함	
9월 - 12월	공부방, 고아원 학습 도우미 활동	시설공부방이나 고아원에서 방학을 이용해 학교과제물 함께 만들기	



사례 9 학교폭력에방 지도 월별 일정표

- 00중학교 -

월	주	장소	활동내용	매체	대상	비고
	1	각 교실	학생용 예방프로그램 상영	VTR 유인물	전교생	자율학습시간 이용 반복상영
	1,2	3층 시청각실	학교폭력예방교육 교사연수	유인물	전교사	직원회의시 일제연수
3 월	3	3층 시청각실	학교폭력예방교육 학부모연수	유인물	학부모 회의 참석자	학부모회의,
· 철	3	각 교실	'학교폭력 추방의날'행사	VTR 서명지	전교생	학교폭력추방 서명운동 및 폭력예방 VTR상영
	3,4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조직 및 위촉		학부모 경찰관 교사	
4	2	각 교실	교내 학교폭력 실태 설문조사	설문지	전교생	가해학생, 피해학생 대책마련
월	3	지정장소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활동	현수막	전교생	윤리사회부, 학년부와 협조
6 월	지속	각 교실	학생용 예방프로그램 상영	VTR 유인물	전교생	자율학습시간 이용 반복상영
7 월	2	지정장소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활동	현수막	전교생	윤리사회부, 학년부와 협조
8 월	4	각 교실	교내 학교폭력 실태 설문조사	설문지	전교생	가해학생, 피해학생 대책마련
9 월	2	각 교실	'학교폭력추방의 날'행사 (학교폭력예방관련 표어·포스터그리기)	표어 포스터	전교생	학년정원의 5%범위내 시상
10 월	3	각 교실	교내 학교폭력 실태 설문조사	설문지	전교생	가해학생, 피해학생 대책마련
11 월	지속	각 교실	학생용 예방프로그램 상영	VTR 유인물	전교생	자율학습시간 이용 반복상영
12 월	2	각 교실	교내 학교폭력 실태 설문조사	설문지	전교생	가해학생, 피해학생 대책마련
1 ~ 2 월	지속	•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연중 운영 및 1000만인 서명운동 실시	•	학부모 교사 학생	매주 금요일 교육청에보고
연 중	지속	상담실 각층	학교폭력 상담실 및 신고함 운영	상담 신고함	전교생	•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 00중학교 -

기관명	00 중학교	연월일	2006.00.00
담당자	직: 생활지도부 성명: 000, 000		
관련자	000외 5명		
과제명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추 진 계 획

계획 추진 실적

□ 추진배경 및 목적

학생의 인권존중 및 정과 사랑이 넘치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 정착

□ 추진방향

-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 즐겁고 사랑 넘치는 학교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 세부 추진계획

-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 2.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강연 실시
- 3.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배치
- 4. 학생맞춤형 상담 실시
- 5. 칭찬릴레이운동 및 칭찬일지 기록
- 6. 친구에게 편지 쓰기
- 7.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 기대효과 및 일반화 가능성

- 1. 폭력의 정의와 위험성 인식
- 2.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과 즐거운 학교생활

- 1. 법무부범죄예방위원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를 실시하고 폭력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반성문 제출-학교봉사- 전문상담사의 상담지도 등의 과정을 거쳐학생들의 행동을 변화 시켰다.
- 2.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전문가와 경찰관을 초청하 여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수를 실 시하였다.





- 3. 칭찬릴레이 운동을 펼치고 학급 구성원끼리 칭찬을 한 후 학급별 칭찬 일지를 기록하여 돌려 읽음으로써 상 대방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4. 2명의 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쉬는 시간과 점 심시간에 교내외를 순시하고 취약지역을 순찰하는 등 학생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상담활동을 하였다.
- 5.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글짓기, 표어 제작 등을 통해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 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6. 학생자치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두발·복장 규정에 대한 결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욕구 불만을 최소화하고 명당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비고

7. ONE-STOP 지원센터 안내

- 가. 목적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치료 지원을 통한 피해자 보호
- 나. 대상자 :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불분명하여 치료비를 받을 수 없는 자
- 다. 서비스센터 : 아주대병원 (031-219-4170)
- 라. 서비스 신청 방법

피해발생 ⇒ 학교장 확인서 발급 ⇒ 지원센터 접수 ⇒ 처리

마. ONE-STOP지원센터 체계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지원을 위한 확인서

성명		학교명			학년	반	()학년 ()반
주민등	록번호			Δ 1	=1.=1		집		
주:	소			- 언	연락처		드폰		
사건 ¹ (간략 기ई	하게								
	Ċ		- 학교폭력 료 및 보호 2007.	지	원을 ·)		합니다.	

8. 생활지도 관련 홈페이지 안내

가. 진로교육 관련 홈페이지

 기 관 명	홈페이지 주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http://www.careernet.re.kr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http://www.work.go.kr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진로정보센터	http://www.kerinet.re.kr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노동부	http://www.molab.go.kr
에듀넷	http://www.edunet4u.net
청소년진로진학상담실	http://www.myway.or.kr

나. 약물 오ㆍ남용 예방 홈페이지

 기 관	홈페이지
마약퇴치본부	www.drug.go.kr
한국금연교육협의회	www.quitsmoking.co.kr
- 금연길라잡이	www.nosmokeguide.or.kr
한국금연운동협의회	www.kash.or.kr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위원회	www.youth.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국제절제협회	www.ita.or.kr

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지역사회 관련기관 홈페이지

홈페이지
http://www.ken.go.kr
http://www.kerinet.re.kr
http://www.careemet.re.kr
http://know.work.go.kr
http://www.hi1318.or.kr
http://www.youth.co.kr